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 성 | 안태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선정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관
김성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2026.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1. 1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1

Ⅰ. 평가 개요 / 1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 1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 5

Ⅱ. ODA 사업 추진현황 / 8

1. 법적·제도적 추진기반 ····· 8
   가. 관련 법률 ····· 8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10
      (1) 제3차 기본계획(2021~2025)과 이행 평가 ····· 10
      (2) 제4차 기본계획(2026~2030) 주요 내용 ····· 11
      (3) 추진체계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 11
2. ODA 지원사업 현황 ····· 12
   가. ODA 예산 총괄 ····· 12
   나. 무상원조(외교부·KOICA) ····· 18
      (1) KOICA 예산 규모 ····· 18
      (2) 세부사업 구조와 4대 프로그램 ····· 19
      (3) 집행 현황 ····· 20
   다. 유상원조(EDCF) ····· 20
      (1) 운용체계와 지원조건 ····· 20
      (2) 기금 수입·지출과 승인·집행 ····· 20
      (3) EDCF 중기운용방향의 변화 ····· 21



CONTENTS

라. 다자·민간재원 개관 ····· 23
마. 부처별 ODA 세부사업 현황 ····· 25

Ⅲ. 주요 쟁점 분석 / 28

1. ODA 추진체계의 책임성·투명성과 국제환경 대응력 점검 ····· 28
가. 현황 ····· 28
나. 분석의견 ····· 32
(1) 정세변화 조정 개시 계기 보완 필요 ····· 32
(2) ODA 정보공개 이행 점검 필요 ····· 36
2. ODA 사업 프로그램화·대형화 추진의 실효성 검토 ····· 41
가. 현황 ····· 41
나. 분석의견 ····· 44
(1) 착수준비도 연계 편성 필요 ····· 44
(2) 프로그램 성과지표 확정 필요 ····· 46
(3) 대표사업 선정·관리기준 필요 ····· 48
3. ODA 사업 추진 지연 실태와 개선조치의 예산 반영 점검 ····· 52
가. 현황 ····· 52
(1) 무상원조(KOICA) 사업의 지연 실태 ····· 52
(2) 무상원조 세부사업의 집행 지표 ····· 53
(3) 유상원조(EDCF) 사업의 지연 실태 ····· 54
나. 분석의견 ····· 56
(1) 실집행률 기준 집행관리 필요 ····· 56
(2) 감사 지적 이행 예산반영 필요 ····· 60
(3) EDCF 장기지연사업 정비 필요 ····· 62



CONTENTS

4. EDCF 미수납 원리금 추이와 재정건전성 영향 점검 ····· 66
가. 현황 ····· 66
나. 분석의견 ····· 69
(1) 미수납액 관리·공시 강화 필요 ····· 69
(2) 채무재조정 손실 측정 필요 ····· 72
(3) 재정 전이경로 관리 필요 ····· 75
(4) 금리조건·이자수지 점검 필요 ····· 77
5. 원조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 정책의 정합성 제고 ····· 81
가. 현황 ····· 81
나. 분석의견 ····· 84
(1) 비구속화 실적·영향 점검 필요 ····· 84
(2) 민간재원 산정기준 통일 필요 ····· 88
(3) 민관협력 성과지표 개선 필요 ····· 91
6. ODA 사업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점검 ····· 94
가. 현황 ····· 94
(1)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판정과 2027년도 정부안 ····· 94
(2) 성과지표 실태 ····· 95
(3)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 96
나. 분석의견 ····· 98
(1) 성과평가 판정 반영 점검 필요 ····· 98
(2) 판정 변경 사유 공개 필요 ····· 107
(3) 성과지표 ODA 정합화 필요 ····· 112
(4) 부처 간 유사사업 정비 필요 ····· 115
(5) 분담금 편성 현실화 필요 ····· 120
(6) ODA 특수성 반영 평가기준 필요 ····· 128



CONTENTS

7. 법령 개정 분석 ····· 130
가. 현황 ····· 130
나. 분석의견 ····· 133
(1) 사업 선정기준 법적근거 마련 필요 ····· 133
(2) 국개위 조정권한 조문 정비 필요 ····· 135
(3) 통합 플랫폼 근거규정 마련 필요 ····· 136
(4) EIPP 운영근거 정비 필요 ····· 138

Ⅳ. 결론 및 시사점 / 143

1. 주요 평가 결과 ····· 143
가. 추진체계의 책임성·투명성과 국제환경 대응력(SQ1) ····· 143
나. 프로그램화·대형화의 설계 정합성(SQ2) ····· 144
다. 사업 추진 지연과 개선조치의 예산 반영(SQ3) ····· 144
라. EDCF 미수납 원리금과 재정건전성(SQ4) ····· 145
마.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의 정합성(SQ5) ····· 146
바. ODA 사업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SQ6) ····· 147
사. 관련 법률의 정합성(SQ7) ····· 148
2. 종합 판정 ····· 150

부 록 / 153

요 약

Ⅰ. 평가 개요

❑ 본 평가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1] 사업이 법령과 기본계획의 목표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집행 가능하고 재정에 무리가 없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수행함

- ODA 예산(총ODA 확정액)은 2021년 3조 7,543억원에서 2025년 6조 5,01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16.4% 줄었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ODA 세부사업은 159개, 5조 2,438억원으로 2026년 ODA 예산(5조 4,372억원)보다 3.6% 적음(집계 범위가 같은 159개 사업의 2026년 예산 5조 3,441억원 대비로는 1.9% 감소). 이처럼 예산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한정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제대로 배분되었는지가 중요함
- 특히 범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ODA 예산 감축은 ① 정부 간 합의(협의의사록·차관계약)로 다년도 지원이 약정된 계속사업의 연차별 집행 차질과 대외 공여 신뢰도 저하, ② 성과평가 정상추진·사업개선 사업까지 감액되는 성과-예산 연계 왜곡, ③ 신규사업 사전 준비 위축 및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과소 편성에 따른 미납 누적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대외 여건도 달라졌는데, 자국 이익 중심의 원조 재평가 속에 미국이 국제개발처(USAID)[2]를 폐지하는 등 주요 공여국이 원조를 줄였고, 우리나라의 2025년 ODA도 38.7억달러로 3.9% 줄어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ODA/GNI)[3]이 0.20%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4] 회원국 중 22위에 머물렀음

---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물자·기술 지원임.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원조'와 낮은 이자로 오래 빌려주는 '유상원조(차관)'로 나뉨.

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정부의 대외 개발원조를 집행하던 기관임.

3) ODA/GNI: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가운데 ODA로 쓰는 금액의 비율로, 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를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UN은 0.7%를 권고함.

❑ 2026년을 전후하여 ODA 제도도 변경되었음

○ 정부는 향후 5년의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5](2026~2030년)에서 ODA 사업의 '대형화'와 여러 부처에 흩어진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6] 중심으로 모으는 '통합'을 핵심 과제로 내세움

○ 정부조직 개편(2026.1.)으로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나누어 맡게 되었고, 기획예산처는 처음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7]를 실시하면서 감액 판정 사업은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예산보다 15% 이상 줄여 요구하도록 함

❑ 본 평가는 "우리나라 양자 ODA[8]가 법과 계획의 목표대로 운영되고, 2027년 예산안은 집행 가능하고 재정에 무리가 없게 편성되었는가"라는 질문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봄

○ 7개 분야는 ① 추진체계, ② 사업 대형화, ③ 사업 지연, ④ 유상원조 기금의 재정건전성, ⑤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 ⑥ 성과평가 반영·성과지표·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⑦ 법령 정비임

○ 외교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30개 부처·청으로부터 예산안 산출근거·성과지표·집행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음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주요 원조 공여국의 모임으로, 원조 통계 기준과 원칙을 정함.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은 2025년 기준 32개국(유럽연합(EU) 포함 시 33개 회원)임.

5) 종합기본계획: 5년마다 세우는 ODA 최상위 계획임.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정하는 연간 계획을 '종합시행계획'이라고 함.

6)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 무상원조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대표 기관임.

7)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정부 재정사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 '감액'·'폐지'·'통합' 등을 판정하고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2026년 처음 실시됨.

8) 양자 ODA: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원조임. 국제기구를 거쳐 지원하는 '다자 ODA'와 구분됨.

Ⅱ. ODA 사업 추진현황

❑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9]가 계획을 정하면,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10]으로,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해 집행함

- ◦ 총ODA는 지원 경로와 상환 의무에 따라 유상원조(재정경제부 주관), 무상원조(외교부 주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ODA로 구분되며, 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OECD DAC 통계 기준에 따른 것임
- ◦ 사업 정비로 ODA 시행기관은 2024년 46개에서 2027년(요구액[11] 기준) 33개로, 사업은 1,976개에서 1,227개로 줄고 있음
- ◦ 유상원조(EDCF) 예산(총ODA 내 확정액)은 2021년 1조 2,582억원에서 2025년 2조 1,500억원으로 70.9% 늘었다가 2026년 1조 9,006억원으로 11.6% 줄었음(2027년 요구액은 2조 2,051억원)
- ◦ KOICA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안은 2027년 1조 1,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줄었으나, 중동·중앙아시아 협력(+80.5%), 공공협력사업(+90.3%), 분쟁·취약국 지원(+63.6%)은 증가하였음

❑ ODA 세부사업 159개 중 101개(63.5%)는 한 해 예산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이고, 이 가운데 85개는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28개 부처·청의 사업이며, 유상원조(EDCF)의 집행 실적은 낮아지고 있음

- ◦ EDCF 집행률은 2022년 98.2%에서 2025년 89.8%로 낮아졌고, 2025년 승인액·집행액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목표의 71.3%, 85.0%(사업비 결산 기준 87.0%)에 그쳤음

---

9)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개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ODA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부처 간 사업을 조정함.

1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발도상국의 도로·발전소 등 건설에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987년 만든 정부 기금임. 한국수출입은행이 실무를 맡음.

11) 요구액은 「(제58-1호)'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6)에 제시된 금액임.

Ⅲ. 주요 쟁점 분석

1. ODA 추진체계의 책임성·투명성과 국제환경 대응력 점검

❑ (현황) 2022~2024년도 KOICA 신규 국별협력사업은 183건 중 12건이 외교부 단계에서 빠졌으나 국개위가 의결한 171건 중 170건(99.4%)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개위 의결 이후 조정된 사업은 1건이었고, 여러 기관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지정한 연계사업은 감사원이 점검한 29개 중 19개(65.5%)가 실제로 연계되지 않았음

- ○ 지원 대상인 협력국은 OECD DAC 적격국 기준(EDCF는 그중 80개국)을 따르고, 그중 핵심인 중점협력대상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개위가 종합기본계획과 유엔 최저개발국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해 선정함(2026.5. 제4기 재지정, 명단 비공개)
- ○ 개별 사업은 외교부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KOICA 「국별협력사업 규정」과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한국수출입은행 업무세칙에 따라 협력국의 공식 사업요청서(PCP)[12]·차관신청서 접수, 사전타당성·예비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주관기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선정함
- ○ 연계사업은 여러 부처·기관이 소규모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ODA 분절화[13]를 줄이기 위해, 시행계획을 만들 때 비용 절감과 효과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끼리 유상·무상 간(국무조정실 총괄) 또는 무상 사업 간(외교부 담당)에 함께 추진하거나 서로의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지정하는 제도임
- ○ 감사원(2025)은 ① 외교부가 매년 시행기관에 내려보내는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의 연계사업 선정기준이 '수원국·지역·분야·추진시기 등을 고려해 검토하라'는 원론에 그쳐 시기·지역이 맞지 않아 연계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 지정되었고, ②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가 2021~2024년 100회의 회의에서 연계 이행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으며, ③ 연계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

12)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 협력국 기관이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의 기본 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관리·추진 방안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임.

13) ODA 분절화: 여러 정부부처와 원조기관이 여러 개의 소규모 ODA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운영·집행하는 것임.

하는 양식이 없어 제도 개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외교부는 이를 수용하여 2026년 초 연계 목록을 정비하고 작성지침 양식에 연계 판단기준과 미추진 사유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분석의견) 협력국[14] 정세 급변 시 ODA 사업 변경 절차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해당국 진행 사업을 점검하는 계기는 없으므로, 외교부·재정경제부는 여행경보[15] 상향 등 사건을 변경 검토 개시 계기로 삼되 분쟁·취약국 사업은 따로 판단하는 기준을 주관기관 검토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침은 비상사태·내전·정권교체 등을 시행기관이 변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어 검토는 시행기관이 요청해야 시작되며, △△△△ KOICA 3개 사업 철회처럼 상황이 생긴 뒤 의결된 사업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방식(2025년 변경 261건, 철회 32건)으로 처리되고 있음. 외교부는 정세 변화를 유형화하면 사업 조정의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무조정실은 지침이 정세 변화를 세분화한 변경 검토 사유를 이미 두고 있다고 설명함

❑ (분석의견) 정보공개 계획별 이행률과 주관기관 단계의 사업 선정 기준·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계획별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2026년 12월부터 공개하기로 한 국개위 회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외교부는 신규사업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 유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ODA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2024.4.), 「ODA 통합정보포털 구축계획」(2025.4.), 「사업 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2026.5.)을 수립하였고, 국제 정보공개 기준(IATI)[16]의 42개 항목 중 31개(73.8%)를 분기마다 공개하는 등 공개 항목 수는 DAC 주요 공여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함

---

14) 협력국: 원조를 받는 나라로, 개발협력 상대국을 동등한 협력 주체로 보아 '수원국' 대신 쓰는 용어임. 원조를 주는 나라는 '공여국'이라고 함.

15) 여행경보: 외교부가 국가·지역별 위험 수준에 따라 내리는 1~4단계 경보로, 3단계는 출국권고, 4단계는 여행금지임.

16)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원조 사업의 예산·집행·성과 정보를 공통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국제 기준과 이를 운영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임.

2. ODA 사업 프로그램화·대형화 추진의 실효성 검토

❑ (현황) 제4차 기본계획은 시행기관 정비, KOICA 중심의 통합 플랫폼, 사업 대형화를 사업구조 개편 과제로 제시하였고, KOICA 사업 1건당 평균 규모는 2026년 15.4억원에서 2027년 32.2억원(요구액 기준)으로 두 배 넘게 커졌으나, 이는 주로 연수 통합과 소규모 사업 정비로 사업 수가 줄어든 결과임

- ◦ 2027년 KOICA 사업 수가 789개(2026년)에서 444개(요구 기준)로 345개 줄어든 것은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2026.3.)에 따라 각 부처·KOICA의 소규모 단기 초청연수를 글로벌연수(부처연수지원) 플랫폼으로 통합·축소하고 행사성·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정비하며 신규 발굴을 축소(국별·다자 신규 11건)한 결과임
- ◦ 진행 중인 기존 국별협력 개별 프로젝트들은 예산 설명자료상 4대 프로그램으로 묶여 표시되더라도 종합시행계획과 내역사업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로 그대로 유지됨. KOICA는 국별협력 신규사업 총사업비로 보면 1건당 2026년 165.3억원에서 2027년 214.9억원(요구 기준)으로 약 1.3배 커졌다고 설명함
- ◦ 반면 '사업관리지원' 세부사업 내 사업을 발굴·설계하는 '형성기획' 예산은 2026년 146억원(200건)에서 2027년 정부안 43.8억원(60건)으로 70.0% 감액 편성되었음

❑ (분석의견) 신규 사업의 2년차 예산은 착수 준비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크게 늘고 있으므로, 외교부와 KOICA는 협력국과의 협의의사록(R/D)[17] 체결과 수행자 선정 일정을 예산안에 함께 적고 본사업비는 그 일정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 2026년 시작한 국별협력사업[18] 48건의 첫해 예산 중앙값은 착수 비용 위주로 편성되어 8,250만원이었으나 2027년 편성액 중앙값은 10억 5,000만원으로 증가함

17)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 원조를 주고받는 양측이 사업 목표·내용·분담 사항을 합의하여 서명하는 문서로, 이를 체결해야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함.
18) 국별협력사업: KOICA가 특정 협력국 정부와 협의하여 그 나라에서 수행하는 무상원조 사업임.

❑ (분석의견) 사업을 큰 묶음(프로그램)[19]으로 재편했지만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외교부와 KOICA는 프로그램별로 협력국의 실제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성과지표[20]는 2026년에 삭제되었고, 새 지표의 2027년 목표는 아직 '검토' 중임

❑ (분석의견) 대표사업은 분야별 전략의 플래그십 사업과 예산안 전략형 프로젝트 등으로 나뉘어 제시되나, 대표사업으로 볼 공통 기준이 없고 시행계획·예산안 설명자료에서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국무조정실은 대표사업·성과 목표의 구분 표시 기준을 정하고 외교부·재정경제부는 이를 시행계획·예산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대표 성공사례 창출을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결핵·말라리아 시그니처 사업, 문화·예술·교육 패키지, AI[21] 활용 유·무상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대표사업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AI·문화·테크 분야 사업 198건(8,781억원)을 '전략형 프로젝트'로 묶어 제시하였음. 그러나 시행계획과 예산안 설명자료에서는 대표사업이 따로 구분되지 않음

3. ODA 사업 추진 지연 실태와 개선조치의 예산 반영 점검

❑ (현황) 무상원조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문제는 국회와 감사원이 거듭 지적해 왔고, 감사원(2025)은 KOICA 종료사업 24개 중 20개가 사업기간을 1~6년 연장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유상원조(EDCF) 사업도 승인부터 본구매 계약까지 평균 4년이 걸림

○ 진행 중인 KOICA 80개 사업은 예비조사부터 수행자 선정까지 단계별 평균을 합하면 824일(약 2년 3개월)이었음

---

19) 프로그램화: 비슷한 목적의 개별 사업들을 하나의 큰 묶음으로 기획·관리하는 방식임. KOICA는 기술·디지털, 보건, 기후·에너지, 지역개발의 '4대 프로그램'으로 재편함.

20) 성과지표: 사업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측정하는 기준임. 사업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측정하는 '산출지표'와, 그 결과 협력국에 생긴 실제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나뉨.

2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임.

◦ KOICA는 지연 원인으로 협력국 사정(합의 지연, 정세 불안), 국제 환경(감염병, 환율), 그리고 집행 2년 전에 사업을 발굴하는 예산 구조(N-2년 구조)[22]를 들고 있음

❑ (분석의견) 결산 집행률만으로는 실제 집행 수준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외교부와 KOICA는 실집행률과 월별 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소관 부처는 사업설명자료에 실집행률 산정 기준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음

◦ 2025년 KOICA 국별협력사업의 결산 집행률은 모두 100.0%였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쓴 비율(실집행률)은 교부현액 대비 93.0~98.3%, 추경예산 대비 79.8~90.1%였음. 다른 부처의 출연·보조 사업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실집행률은 시행기관이 교부받은 금액 중 실제로 쓴 비율이나, 분모를 당해 연도 교부액으로 할지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교부현액으로 할지, 분자에 전년도 이월액 집행분을 넣을지가 부처·자료마다 달라 같은 사업도 자료에 따라 실집행률이 크게 다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의 2023년 실집행률은 성과평가 최종평가서에 6.2%, 사업설명자료에 222.8%로 적혀 있으나, 교부현액을 분모로 하면 68.7%임

❑ (분석의견) 감사원이 통보한 신규사업 착수 지연 개선사항의 이행 내용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으므로, KOICA는 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 실적과 신규사업별 수행자 선정 예정 시기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KOICA는 2027년 신규사업 예산안을 착수에 필요한 비용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 실적 등 감사원 통보 3건의 이행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음(외교부와 KOICA는 통보 3건에 대한 조치를 2026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설명)

❑ (분석의견) EDCF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여부를 적극 검

22) N-2년 구조: 사업을 집행하는 해(N년)보다 2년 앞서 사업을 발굴하고 1년 앞서 예산을 편성하는 무상원조 기획 일정임. 그사이 현지 사정이 바뀌어도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토하고 협력국 협의 절차와 경과기간·진척률·예외 사유 등을 고려한 승인 취소 기준과 확보 재원의 재배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EDCF 사업은 승인 후 5년 누적 집행률이 23.4%이나,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를 검토한다는 방침만 두고 있음
- ◦ 2021년 2월~2025년 4월에 승인된 92개 사업의 2025년 말 미집행 잔액 14.2조원 중 55.0%는 아직 첫 집행이 없는 사업의 몫이고, 승인 후 1년 이상 차관계약을 맺지 못한 사업은 8개(13.3억달러)임

4. EDCF 미수납 원리금 추이와 재정건전성 영향 점검

❑ (현황) EDCF는 2026년 6월 말까지 60개국 539개 사업에 41.1조원을 승인한 유상원조 재원이며,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금액 중 제때 돌려받지 못한 원리금(미수납 원리금)은 2021~2025년 발생 누계 1,368.1억원임[23)]

- ◦ 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23.3억원에서 2022년 250.2억원, 2023년 357.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343.6억원으로 다소 줄어 2021~2024년 합계가 974.7억원이며, 이 기간 발생액은 3개국에 집중됨(이 중 2개국은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상환 유예)
- ◦ 2025년에도 6개국 43개 사업에서 393.4억원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2021~2025년 누계(1,368.1억원)의 96.8%를 상위 3개 채무위기국이 차지함

❑ (분석의견) 결산상 미수납액은 공시되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따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연체분과 재조정 유예분을 구분한 미수납 원리금 합계를 충당금 반영액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음

- ◦ 기금 결산보고서에는 최근 5개년 미수납액이 공개되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된 금액은 미수납액에서 빠져 유예분의 규모는 드러나지 않으며, 한국수

23) 미수납 원리금: 빌려준 금액의 원금과 이자 중 갚기로 한 날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임. 연체분과, 채무재조정(상환 일정 연기 등)으로 미뤄진 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재조정에 따른 상환유예분은 계약 변경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된 정상채권이어서 결산상 미수납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출입은행은 1987년 EDCF 설립 이후 채무를 면제하여 채권을 상각한 사례가 없어 과거 대손율에 근거한 대손충당금[24]을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분석의견) 채무재조정은 원금을 깎지 않더라도 상환을 늦추고 금리를 낮춰 돌려받을 돈의 현재가치를 줄이므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조정 채권의 현재가치 변동과 수납 실적을 합계 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파리클럽[25]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26]으로 결산에 반영한다고 설명하나, 재조정 채권의 현재가치 변동은 합계로도 공개되지 않고 재조정된 채권은 연체 통계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

❑ (분석의견) 미수납은 회수재원 감소와 차입 증가를 거쳐 정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영향을 측정할 지표가 없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채무재조정·연체에 따른 연도별 회수 계획 변경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27] 차입 계획이 담긴 기금운용계획안에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회수재원이 줄면 정부출연이나 차입이 늘거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상 결손 보전 규정에 따라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나, 경로별 영향을 측정할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음

○ 채무재조정을 한 2개국은 2022~2025년 회수 계획 1,113.4억원의 2.8%만 회수되었고, 채무재조정을 반영한 2026·2027년 회수 계획도 2025년 당초 계획의 절반에 못 미침

---

24) 대손충당금: 빌려준 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해 쌓아두는 금액임.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손충당금은 과거 대손율을 근거로 설정해야 하나 1987년 EDCF 설립 이후 협력국의 지급능력 약화로 채무재조정을 하면서 채무를 면제하여 채권을 상각한 사례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설명함. 대신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 융자금에 대해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 현재가치의 차이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하며, 채무재조정으로 상환 조건이 바뀌면 이를 충당금 산정에 반영한다고 설명함.

25) 파리클럽: 주요 채권국 정부들이 빚을 갚기 어려운 나라의 공적 채무 상환 조건을 함께 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6년 가입함.

26)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은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및 「융자 회계처리지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대신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계상함.

27)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 발행 자금 등을 모아 다른 기금에 빌려주는 기금으로, 빌려 쓴 쪽은 이자를 내야 함.

❑ (분석의견) 공자기금에서 빌린 재원에 내는 이자가 대출 이자수입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금리 인상 등 금리체계 개편이 기금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EDCF는 0.1~2.5%(2026년 8월 개정 전 0.01~2.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데 재원 일부는 공자기금에서 이자를 내고 빌려 오므로, 대출 이자수입 대비 차입이자 비율이 2024년 77.4%에서 2027년 정부안 127.3%로 높아짐

5. 원조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 정책의 정합성 제고

❑ (현황)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만 수주하도록 묶지 않는 '비구속성 원조'[28] 확대와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2027년도 예산안은 전략형 프로젝트로 뒷받침)를 함께 정책목표로 두고 있고, 정부 원조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민간재원 유치[29]도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유치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음

◦ 비구속 EDCF 승인액의 77.9%는 본구매 계약이 없는 프로그램차관[30] 등이고, KOICA는 기업과 함께하는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31]을 통해 민간재원 유치를 추진함

❑ (분석의견) 실제 구매계약이 있는 비구속 사업에서 국내기업 수주가 줄어두 정책목표가 부딪칠 수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계약금액 기준 수주 국적 통계를 공개하고 비구속 경쟁입찰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수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6~2024년 승인분 중 본구매 계약이 있는 비구속 유상사업 14건[32]의 국

28) 비구속성 원조: 원조 사업 계약에 다른 나라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원조임. 공여국 기업만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구속성 원조'이며, OECD는 비구속화를 권고함.
29) 민간재원 유치: 정부 원조를 마중물로 삼아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 자금을 개발협력 사업에 끌어들이는 것임. OECD DAC는 이를 '민간부문 동원(mobilised private finance)'으로 집계함.
30) 프로그램차관: 특정 시설을 짓는 대신 개발도상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EDCF 차관으로, 기자재·공사를 사들이는 본구매 계약이 따로 없음.
31) 외교부는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ODA)'의 사업 목적을 "우리 기업 기술·제품 개도국 진출 지원 및 민간재원 활용"으로 제시함.

내기업 수주 비중은 승인액 기준 18.0%였고 2020년 이후 승인분 중 본구매 업체가 정해진 사업에서는 국내 수주가 없었으며, 구속성 원조 제한국이 늘면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 구속성 사업의 국내기업 수주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2025년 95.8%[33]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은 2023~2025년 비구속 사업 가운데 국내기업이 계약한 사업은 없다고 설명하였고, 2023·2024년 승인분 3건은 국외기업이 수주함

❑ (분석의견) 민간재원 유치 실적은 기관마다 단위와 집계 범위가 달라 합산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국무조정실은 DAC의 민간재원 유치 측정 방식을 참고해 시행기관 공통의 산정기준(집계 범위, 인정 시점, 적용 환율)을 마련하고 기관별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KOICA IPS[34]의 민간재원 유치액은 2025년분이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19,591만달러, 국회 제출 답변자료에는 1,555.8억원으로 제시되었는데, 전자는 민간 파트너가 타 공여기관[35]에서 유치한 재원을 포함하고 후자는 제외한 값임
-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ODA)'의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36]는 민간재원 유치를 측정하는 정량 지표가 없음

❑ (분석의견) KOIC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업의 투자·매출 위주 지표와 위험 관리 미흡으로 '감액' 판정을 받았으므로, KOICA는 4대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협력국의 고용·서비스 개선 같은 개발 성과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32) 비구속 유상사업 14건: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비구속 EDCF 사업 가운데 기자재·공사를 사들이는 본구매 계약이 있는 사업임. 본구매 계약이 따로 없는 프로그램차관 등은 제외하였으며, 14건 중 국내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3건(건수 기준 21.4%)임.

33) 구속성 사업은 본구매 입찰에 우리나라 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에는 협력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현지화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현지 기업 등이 수주하므로 국내기업 수주 비중이 100%가 되지 않음(한국수출입은행 답변 기준 2023~2025년 93.3~95.8%).

34) KOICA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개발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KOICA의 혼합금융 기반 민관협력 프로그램임.

35) 타 공여기관은 다른 나라 정부의 원조기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임.

36)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재정경제부가 협력국과 3~5년 단위로 경제발전 경험 공유와 정책 자문 등을 하는 정부 간 협력사업임.

○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2026년 505.8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412.8억원으로 18.4% 줄었고, 약정해지·분담 미이행 등의 사례도 나타났음(KOICA는 해지·정산·반납 절차 적용과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6. ODA 사업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점검

❑ (현황) 2026년 처음 실시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감액 판정을 받은 ODA 사업은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예산보다 15% 이상 줄여 요구하게 되었음

○ 2027년도 예산안의 ODA 세부사업 159개는 외교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30개 부처·청의 사업으로, 분담금·기여금 등 72개, 출연·보조 48개, 직접 수행 32개, 융자(차관) 5개, 대외경제협력기금 인건비·관리비 2개로 구성됨

❑ (분석의견) 감액·폐지·통합 판정을 받은 12개 평가단위[37]는 모두 예산이 15% 이상 줄거나 통합되었으나 외교부 '국제기구협력(ODA)'은 통합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늘어 예산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는 과목 재편으로 통합된 단위의 편성액을 대응표·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요구 기준 미반영 사유서는 열린재정에 공개(2026.8.10.)되었으며 정부안 기준 환류계획과 판정-편성 대응표도 열린재정에 공개(2026.11.2.)됨

○ 외교부의 2026년 세부사업 '국제기구협력(ODA)'은 2027년 '다자협력(ODA)'으로 통합되어, 환류계획상 과목 재편 전 기준으로는 23.0% 감액되었으나 통합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분쟁·취약국 지원 증액으로 5.0% 늘어 예산안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움

37) 외교부의 지역별 국가원조 4개는 기초조사보고서 제목부터 "아시아및태평양지역국가원조(ODA)(단위사업)"처럼 단위사업으로 묶여 평가되었음. 따라서 외교부는 2027년 세부사업이 31개인데 성과평가는 11개 단위로 받았음.

❑ (분석의견) 서면평가보다 최종 판정이 완화된 사업 중 변경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획예산처는 평가단이 판정이 바뀐 사유를 최종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판정이 완화된 18개 평가단위(외교부 6개, 타 부처 12개) 중 14개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19.6%)처럼 완화 뒤 증액된 사업도 있음

❑ (분석의견) 부처·국내기관이 시행하는 직접·출연·보조 사업 상당수가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두지 않으므로, 소관 부처는 국내지표를 차용한 사업부터 협력국 결과지표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외교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직접 수행·출연·보조 사업 80개(직접 32개, 출연·보조 48개)를 살펴보면,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둔 사업은 7개(8.8%)뿐이고, 지표가 없는 사업이 13개, 사업과 관계없는 국내 정책·기관 지표를 차용한 사업이 8개였음

○ 국내지표를 차용한 사업은 협력국에서 달라진 점이 아니라 국내 행정·기술 실적을 성과로 측정하는 경우임. 예컨대 고용노동부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은 국내 근로감독 지표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피해해결률'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은 최고기술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인 '재난안전 기술수준'을, 경찰청 '국제치안활동강화'는 협력국과 관계없이 전체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도피사범 종합송환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은 산식의 절반이 국내 참가기업 만족도인 'ICT 국제협력 활동 수혜자 만족도'를 쓰고 있음

❑ (분석의견) 같은 분야의 사업이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으므로, 외교부는 유사 유형 부처 사업의 중복방지 검토를 강화해 부처별 역할을 정리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내역을 종합시행계획에 담으며 같은 명칭으로 나뉜 사업의 소관 부처는 역할 구분이 지켜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기상청 세부사업에 각각 들어 있는 재난 조기경보 내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부사업·내역으로 나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기여, 두 부처에 같은 이름의 세부사업으로 나뉜 '기후변화협약 대응 한-개도국협력'(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이 그 예이며, 부처들은 소관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였으나 역할분담을 정한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음

❑ (분석의견) 8개 부처 국제기구 의무분담금[38]에서 편성환율 괴리와 과소 편성으로 미납(외교부는 이·전용)이 반복되므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는 청구액과 실세환율[39] 변동을 고려해 편성하고 미납 청산분을 따로 표시하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달러 외 통화에도 예산 편성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상청·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처·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의 의무분담금이며,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은 미화에만 예산 편성환율을 적용하고 달러 외 통화에는 지출결의 당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스위스프랑·유로 청구 분담금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함

○ 사업설명자료에 미납 청산분이 원화로 제시된 6개 사업(WHO·ILO·WMO 등, 미납 청산분이 스위스프랑으로만 제시된 WIPO[40] 제외)의 2027년 정부안에는 전년도 미납 청산분 98.0억원이 들어 있고, 두 해의 청산분이 모두 확인되는 3개 사업(ILO·아시아생산성기구·우정사업해외활동)에서는 증액분 40.9억원 중 21.7억원(53.1%)이 청산분 증가였음

○ 외교부는 미납 없이 납부한다고 답하였으나 2023년에 환차손을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집행잔액의 이·전용으로 메운 사례가 있고, 기상청·지식재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납액을 예비비나 이·전용 대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청산해 왔음

---

38) 의무분담금: 국제기구 회원국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성격의 금액으로, 밀리면 투표권을 잃을 수 있음.

39) 실세환율: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정한 환율(편성환율)이 아니라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점의 시장 환율임.

40)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분야별 유엔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서 의무분담금을 냄.

❑ (분석의견)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국내 재정사업과 동일한 단년도 집행률·단기 산출 기준으로 ODA 사업을 평가하고 감액 판정 시 15% 이상 일률 감액을 요구하므로,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은 협력국 합의·인허가 등 외부 요인과 다년도 개발성과 특성을 반영한 ODA 맞춤형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간 약정(협의의사록·차관계약)과 정상외교 공약에 기반한 계속사업에 일률적 감액을 적용하면 외교적 약속 불이행이 우려된다는 부처 소명이 많았고 대면·최종 단계에서 판정도 대거 완화(서면·최종 판정이 모두 확인되는 25개 중 18개)되었으나, 완화 사유는 대부분 기재되지 않았음

7. 법령 개정 분석

❑ (현황) 2026년 3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으로 주관기관의 점검·시정 요청 권한과 재외공관의 사업현황 파악 의무가 법제화되었고, 정부조직 개편(2026.1.)으로 유상원조 주관·국개위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맡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되었음

○ 외교부는 2026년 86개 공관에서 1,148건(무상 958건, 유상 190건)을 점검할 계획임

❑ (분석의견) 현행 법률에는 개별 ODA 사업의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내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재정경제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사업 선정의 핵심 기준과 심사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정 기준은 외교부 시행계획 작성지침, KOICA 국별협력사업 규정, 한국수출입은행 업무세칙 등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2022~2024년 KOICA 신규 사업 183건 중 외교부 단계에서 빠진 12건의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음(외교부는 탈락 사유를 시행기관에 개별 공유한다고 설명)

○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과 융자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져 개별 ODA 사업의 선정 심사를 대신하기 어려움

❑ (분석의견) 의결사업 변경 절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 2025.12.)와 연계사업 이행점검은 법률이 아닌 지침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법령에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 전문기관 법제화 시 독립성과 국회 보고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이 점검한 연계사업 29개 중 19개(65.5%)가 실제로 연계되지 않았으나 이행점검과 미이행 사유 보고는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평가 전문기관 법제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분석의견) KOICA 중심의 통합 플랫폼[41], 부처 연수사업 이관, 시행기관 정비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 없이 예산으로 먼저 추진되고 있으므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은 통합 수행 원칙과 역할 분담, 시행기관 정비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7년 예산안에서 KOICA 공공협력 예산은 90.3% 늘고, 부처연수지원은 30억원에서 143.5억원으로 늘었음

❑ (분석의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ODA)'의 EIPP는 근거가 2027년 1월 31일 효력이 끝나는 훈령[42]에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운영 근거를 법령 수준으로 정비하고 ODA 적격국이 아닌 헝가리 과제는 '경제협력기획(ODA)'에서 제외하고 그 집행 과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EIPP 사업목록에서 ODA 대상국이 아닌 고소득국 헝가리 과제가 20.4%(98건 중 20건)를 차지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ODA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ODA 전용 예산 과목인 '경제협력기획(ODA)'의 편성 취지와 맞지 않음(재정경제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연내 훈령을 정비할 예정이며, 비ODA 과제를 분리하면 비효율이 생긴다고 설명)

---

41) 통합 플랫폼: 여러 부처가 각자 하던 무상원조를, 부처는 제안하고 KOICA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모으는 체계임.

42) 훈령: 상급 행정기관이 내리는 내부 지침 성격의 규칙으로, 법률·시행령보다 근거로서의 힘이 약함.

Ⅳ. 결론 및 시사점

❑ 평가질문에 대한 종합 판정은 '부분 적정, 개선 필요'로, 계획 수립·국개위 의결 존중·법 개정 등 제도의 틀은 대체로 갖추었으나 그 이행과 집행, 재정 위험을 외부에서 확인할 정보는 함께 갖추어지지 않았음

○ (사업 형성·착수 준비) 사업 대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형성기획 예산은 줄었고, 신규사업의 협의의사록 체결·수행자 선정 일정이 예산안에 나타나지 않아 2년차 증액분의 집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집행·재정) 교부 기준 집행률만으로는 실제 집행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EDCF는 장기지연사업의 정리 기준이 없고 채무재조정 유예분과 재조정 채권의 가치 변동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차입이자 부담이 대출 이자수입보다 빠르게 늘고 있음

○ (성과·투명성)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감액·폐지·통합 판정 12개는 모두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국제기구협력은 외교부 환류계획 기준) 사업개선·정상추진 판정 단위 29개 중 11개도 15% 이상 감액되었고, 직접·출연·보조 사업의 결과지표는 8.8%에 그치며, 비구속 비율·수주 실적은 집계 기준이 달라 이행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재원 유치 실적은 기관 간 비교가 어렵고, 정세 변화 시 사업 점검 계기와 정보공개 이행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착수 준비 정보와 실집행률을 예산안·결산에 함께 제시하고, 과목 재편으로 통합된 평가단위의 판정 반영액을 밝히며, EDCF 미수납·채무재조정 정보를 공개하고, 정세 변화 시 점검 계기를 마련하고 통합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EIPP의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ODA 사업의 이행과 재정 위험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Ⅰ 평가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여 유상원조를,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1]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와 종합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2]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ODA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여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24년 40.3억달러에 이르렀다.[3] 그러나 제4차 기본계획은 상위 전략과 개별 사업의 연계 부족, 여러 시행기관에 사업이 잘게 나뉜 분절화, 정보공개 미흡을 제3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들었으며, OECD DAC도 2012년 이후 동료검토마다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지적해 왔다.[4]

공적개발원조(ODA) 재정은 최근 5년간 빠르게 늘었다가 2026년부터 범정부 지출구조조정 기조 속에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섰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ODA 예산은 2020년 3.4조원에서 2025년 6.5조원으로 늘어 제3차 기본계획의 규모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였다. 같은 기간 순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DAC 회원국 평균(6.9%)을 크게 웃돌았고, 규모 순위도 16위(2020년)에서 13위(2024년)로 올라섰다.[5]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의 확정액 기준으로 총ODA는 2025년 6조 5,010억원에

---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DCF는 1987년 설치되었고 KOICA는 1991년 4월 설립되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9938호, 2010.1.25. 제정).

3)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Ⅰ. 개요 및 경과, p.29 각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3(OECD 잠정 통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은 2024~2025년 기준 32개국(유럽연합(EU)을 포함하면 33개 회원)이다.

4)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8~9;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1-나 p.38(OECD DAC 동료검토 2012·2018·2024 요약).

5)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6~7.

서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16.4% 감소하였다.[6] 2027년도에 33개 기관이 종합시행계획에 요구한 금액은 1,227개 사업, 6조 3,084억원으로 2026년 확정액보다 16% 많았으나,[7] 기획예산처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편성해 제출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ODA 세부사업(30개 부처·청, 159개) 합계는 5조 2,438억원으로 2026년 ODA 예산(5조 4,372억원)보다 1,934억원(3.6%) 적다.[8]

이처럼 지출구조조정으로 ODA 예산이 연속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협력국과의 정부 간 다년도 약정인 협의의사록(R/D)[9]·차관계약(L/A)[10] 이행 차질과 외교적 신뢰 저하, 성과평가에서 감액 대상이 아닌 판정(정상추진·사업개선)을 받은 사업까지 일괄 감축되는 성과-예산 연계 왜곡, 사전 기획(형성기획) 예산 축소 및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과소 편성에 따른 미납 누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축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ODA의 제도 기반도 2026년을 전후해 크게 바뀌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는 2026년 2월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을 의결하면서 사업 대형화, KOICA 공공협력사업 중심의 통합 플랫폼,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11] 외교부는 2026년 1월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

---

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Ⅳ.1 총괄표. 감소율(16.4%)은 같은 문서에 적힌 확정액 기준 값(1조 655억원 감소)이며,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본문은 조원 단위 반올림 값(6.5조원→5.43조원)으로 '△16.5%'로 적고 있다. 같은 문서 총괄표의 금액(6조 5,010억원→5조 4,372억원)으로 계산하면 감소액은 1조 638억원이다(국회예산정책처 계산).

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p.7~9, Ⅳ.1 총괄표.

8)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부처별·지역별 합계, 증감률, 비중, 사업 수 분포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026년 ODA 예산(5조 4,372억원)은 종합시행계획 확정액 기준이며, 같은 159개 세부사업의 2026년 예산(5조 3,441억원) 대비로는 1.9% 감소임.

9) R/D(Record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 KOICA 등 시행기관과 협력국 정부(사업 실시기관)가 개별 사업의 목표·범위·내용과 양측 분담 사항을 합의하여 서명하는 문서로, 이를 체결해야 본격적인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1번).

10) L/A(Loan Agreement, 차관계약): EDCF 지원이 결정된 뒤 한국수출입은행이 협력국 정부와 차관 금액·상환기간·금리 등 대출 조건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협력국의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구매계약을 맺는다(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1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10~11, pp.22~26, pp.29~30.

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무상원조 사업 수요를 KOICA 사업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12] 2026년 4월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하면서 AI·디지털, 문화, 공급망, 그린 등을 중점분야로 명시하였다.[1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유상협력 주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은 재정경제부가, 국개위가 의결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기획예산처가 맡게 되었다.[14] 2026년 3월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국회 보고와 시정요청 권한(제22조), 재외공관의 사업현황 파악·보고(제23조)를 새로 규정하였다.[15]

대외 여건도 달라졌다. OECD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ODA는 2024년 실질 기준 7.1% 줄어든 데 이어 2025년에는 1,743억달러로 23.1% 감소하여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고, 독일·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상위 5개 공여국의 감소분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차지하였으며, OECD는 2026년에도 5.8% 추가 감소를 전망하였다.[16] 제4차 기본계획은 그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방비 증액을 들었다. 영국은 국방비를 2027년까지 GDP 대비 2.5%로 늘리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ODA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17] 대비 0.5%에서 0.3%로 줄이기로 하였고,[18] 미국은 대외원조가 자국 이익에 맞지 않는다며 신규 원조의 약정·집행을 90일간 중단하고 재검토하였으며, 이후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였다.[19] 독일이 개발협력을 안보정책에 통합하고 영국이 개발협력을 불법이민의 원인

12) 외교부, 보도자료 [26-031]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적, 효과적, 체계적 ODA 추진」, 2026.1.21.
13)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Ⅱ.3 (1) 중점 분야(p.5).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7조제3항·제12조·제14조제6항 및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부칙 제7조.
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22조·제23조; 외교부, 「2025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제58-4호), 2026.7.23., p.4.
16)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24 figures」(보도자료), 2025.4.16.; OECD, 「International aid fell sharply in 2025, says OECD」(보도자료), 2026.4.9. 감소율은 물가와 환율 변동을 반영한 실질 기준이다. 2024년 감소율(7.1%)은 2025년 4월 잠정치 기준이며, OECD는 2026년 4월 2024년 실적을 2,146억달러로 수정하였다.
17)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이다. ODA를 GNI로 나눈 비율(ODA/GNI)은 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를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며, UN은 0.7%를 권고하고 있다(OECD, 「The 0.7% ODA/GNI target – a history」).
18) UK Prime Minister's Office, 「PM statement on defence spending: 25 February 2025」, 2025.2.25.
19) The White House,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Executive

해결에 활용하는 등, 원조를 자국의 국익·안보와 연결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났다.[20]

우리나라의 2025년 ODA(OECD 잠정 통계)도 38.7억달러로 전년보다 3.9% 감소하였으나 주요 공여국보다 감소 폭이 작았고,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0.20%로 DAC 회원국 중 22위에 머물렀다.[21] 집행 측면에서는 감사원이 2025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기감사에서 종료사업 24개 중 20개의 사업기간이 1~6년 연장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사업 지연을 해소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22]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도 변화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던 자율평가(1,855개 사업)를 대신하여, 2026년에 외부 전문가 15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487개 세부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2027년도 예산을 2026년 예산보다 15% 이상 줄여 요구하도록 하였다.[23] 분담금과 30억원 미만 사업 등을 제외한 ODA 세부사업도 이 평가를 받았으므로, 평가 판정이 2027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새로운 점검 과제가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전환기에 ODA 사업의 추진체계와 집행·성과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는 "제3차에서 제4차 기본계획으로 넘어가는 전환기(2021~2027년)에 우리나라의 양자 ODA는 거버넌스·사업구조·집행·재정(EDCF)·민간참여 측면에서 법정·계획상 목표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집행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평가질문(EQ)으로 설정하였다.

Order 14169), 2025.1.20., Sec.1·Sec.3; USAID 폐지는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

20)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 원조 축소의 배경(글로벌 경기침체, 국방비 증액)도 같은 쪽.

2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3(OECD 잠정 통계, 2026.4.). 감소율(△3.9%)은 같은 문서의 백만달러 단위 금액(4,031백만달러→3,875백만달러) 기준이다.

2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4] p.12, p.37.

23)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보도자료), 2026.5.18., 본문 및 참고 2.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인건비·기본경비·R&D평가 대상·소액사업 등)도 같은 자료 참조.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본 평가는 평가질문을 일곱 개의 하위질문(SQ1~SQ7)으로 나누어 Ⅲ장의 각 절에 배치하였다. 각 SQ의 번호는 Ⅲ장의 절 번호와 같다. SQ1~SQ5는 평가질문을 거버넌스, 사업구조, 집행, 재정, 민간참여의 다섯 영역으로 나눈 것이고, SQ6은 "부처별 ODA 사업은 성과관리(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성과지표)와 예산이 연계되고, 부처 간 분절·중복 없이 편성되며, 국제기구 분담금은 청구액과 환율을 반영해 편성되는가"를 묻는다. SQ7(법령 개정 분석)은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Ⅳ장에서는 SQ별 답을 먼저 제시한 뒤 이를 종합하여 평가질문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평가질문 체계와 분석의 구성]

절	하위질문(SQ)	주요 분석 내용	주요 자료
Ⅲ.1 추진체계 책임성·투명성	SQ1 국개위 심의·조정의 실질성, 정보공개 수준, 국제환경 변화의 계획 반영 절차	국개위 개최·안건 추이(2026년 대면 전환 포함), 연계사업 이행, 정세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철회, 정보공개 계획 대비 이행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감사원 정기감사, 국개위 안건(제56-4호·제58-3호)
Ⅲ.2 프로그램화·대형화	SQ2 형성 기능·착수 준비도·성과지표와 설계의 정합성	사업수·평균규모, 사업효과성제고비 총액, 신규사업 초년도 편성, 성과지표 변동	종합시행계획, 예산안 설명자료, KOICA 업무보고
Ⅲ.3 사업 추진 지연	SQ3 무상(KOICA, 타 부처 출연·보조 사업 포함)·유상 사업 지연 단계와 감사 지적 이행·예산 반영	결산 집행률과 실집행률 비교(타 부처 출연·보조 사업 포함), 단계별 소요기간, 통보사항 이행	감사원 정기감사, 예산안 설명자료, 부처 제출자료, 수은 제출자료
Ⅲ.4 EDCF 미수납 원리금	SQ4 미수납 규모·추이와 재정 전이경로	미수납(연체)·채무재조정 상환유예 현황, 정부출연·공자기금 차입·이자수지	수은 제출자료(미수납 원리금·회수 실적, 기금 수입·지출)
Ⅲ.5 비구속화·민간재원	SQ5 비구속 사업의 국내기업 참여, 민간재원 산정의 비교가능성	비구속 사업 내 수주 추이, DAC 벤치마크, 기관별 산정기준	OECD DAC 비구속 보고서, 수은·KOICA 제출자료

절	하위질문(SQ)	주요 분석 내용	주요 자료
Ⅲ.6 ODA 사업 성과 관리 · 분담금 편성	SQ6 부처별 ODA 사업의 성과관리(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 부처 간 분절·중복,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성과평가 판정과 2027년 정부안 대조(지출구조조정 영향·ODA 특수성 반영 포함), 성과지표 유형 분류, 부처 간 유사사업군, 8개 부처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사유	30개 부처·청 제출 세부사업 목록·사업설명자료·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 기획예산처 ODA 세부사업 목록
Ⅲ.7 법령 개정 분석	SQ7 관련 4개 법률의 정합성과 입법 대안	개정 연혁·정부조직 개편 현황, ODA 사업 선정기준 법적 근거, 조정권한·통합 플랫폼 근거, EIPP 운영근거·비ODA 과제(헝가리) 제외	법령 원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EIPP 운영지침·사업목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평가 범위는 양자 ODA(무상: 외교부·KOICA와 타 부처·청의 ODA 사업, 유상: EDCF)와 민간재원 유치, 추진체계와 관련 법률이다.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의 ODA 사업은 성과관리와 예산 연계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집행 실적도 함께 다룬다. 다자 ODA는 현황 개관, 국제환경 변화,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점검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룬다. 무상원조의 분야별(보건·교육 등) 성과평가와 인도적 지원·해외긴급구호의 세부 운용은 평가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유상원조는 EDCF를 중심으로 하되, 경제협력기획(ODA)의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은 민간재원 유치와 운영 근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부처 간 유사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1~2026년의 결산·예산과 2027년도 예산안이며, 계획 문서로는 제3차·제4차 기본계획과 각 연도의 EDCF 중기운용방향을 활용한다.

평가방법은 행정자료와 문헌을 연도별로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과 제도 변화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다. 연도별 종합시행계획(2021~2027), 기본계획, 국개위 평가결과(2024·2025년),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ODA 세부사업 목록, 2027년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무조정실·외교부·KOICA·한국수출입은행의 제출자료를 대조하였다. 여기에 30개 부처·청이 제출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를 더하였다. 이를

통해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이하 "타 부처")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 결산, 실집행 실적과 2026년 7월 말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사업마다 성과평가의 서면평가 단계 판정과 최종 판정, 2027년 정부안의 증감을 대조하였다. 국외 비교는 OECD DAC의 비구속 이행보고서와 동료검토(Peer Review) 요약 등 공식 문서에 한정하였다.

II ODA 사업 추진현황

1 법적·제도적 추진기반

가. 관련 법률

ODA 관련 법률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 4개이다.[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개위의 심의·조정, 종합기본계획, 유상(재정경제부장관)·무상(외교부장관) 주관기관 체계,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한 예산 편성(제14조제6항), 평가결과의 국회 보고 등을 규정하여 ODA 추진체계의 골격을 이룬다.[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제9조),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수금을 포함한 재원(제4조), 결손이 생기면 적립금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제14조제2항)을 정하고 있다.[26]

「한국국제협력단법」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의 설립 근거로, 협력단의 사업 범위(제7조), 외교부장관의 예산 승인(제20조), 사업 공모·협약(제22조의2), 지도·감독과 시정명령(제23조)을 정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분쟁·감염병을 포함한 해외재난을 정의하고(제2조), 2년마다 기본대책을 세워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제6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제11조)을 규정한다.[2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26년 3월 일부개정으로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국회 보고와 시정요청 권한(제22조), 재외공관의 사업현황 파악·보고(제23조)를 새로 규정하였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기금 소관이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

---

24)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1번 표.
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7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p.1~7).
26)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4조·제9조·제10조·제14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p.1~3).
27)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7161호, 2020.10.1. 시행) 제7조·제20조·제22조의2·제23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44호, 2024.7.10. 시행) 제2조·제6조·제1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DA 관련 4개 법률 개요]

법률(현행 기준)	소관	주요 조문	최근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국무조정실·외교부 (유상 주관 재정경제부)	제7조 국개위(국무총리 소속, 30명 이내), 제11조 종합기본계획(5년), 제12조 주관기관, 제14조 종합시행계획(⑥ 기획예산처장관 예산 편성 시 존중), 제16조 평가·국회보고, 제18조 공개·종합정보제공체계, 제22조 점검·국회 보고·시정요청, 제23조 재외공관 사업현황 파악·보고	2025.10.1. 타법개정(부처 명칭) 2026.3.10. 일부개정(제22조·제23조, 2026.9.11. 시행)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7161호, 2020.10.1. 시행)	외교부	제7조 사업(12개 호, 정부 위탁사업 포함), 제20조 예산 외교부장관 승인, 제22조의2 공모·협약, 제23조 지도·감독·시정명령	2020.3.31. 일부개정 이후 개정 없음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재정경제부	제4조 재원(정부출연금, 공자기금 예수금 등), 제9조 운용·관리(수은 위탁),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 제14조 결손 보전	2025.10.1. 타법개정(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44호, 2024.7.10. 시행)	외교부	제2조 해외재난 정의(분쟁·감염병 포함), 제6조 기본대책(2년)·정기국회 보고, 제11조 긴급구호대 편성	2024.1.9. 일부개정(제2조·제11조)

주: 법률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2026.8.27.) 1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1) 제3차 기본계획(2021~2025)과 이행 평가

제3차 기본계획(2021~2025)은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 비구속 비율을 유상 60%, 무상 9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8] 제4차 기본계획은 그 성과로 ODA 예산이 2020년 3.4조원에서 2025년 6.5조원으로 늘어 규모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중점협력국 지원 예산 비중이 72%(2021년)에서 84%(2025년)로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29] 반면 한계로는 상위 전략과 개별 사업의 연계 부족, 무상원조가 41개 시행기관의 1,585개 사업으로 잘게 나뉜 분절화, 집행 2년 전에 사업을 기획하는 구조(N-2년 구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정보공개 미흡을 들었다. 국민의 ODA 인지도도 64.3%(2021년)에서 50.0%(2024년)로 낮아졌다.[30]

[제3차·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3차(2021~2025)	제4차(2026~2030)
비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
재원 규모 목표	2030년까지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2030년 ODA 규모 현 순위권(DAC 13위) 이상
유상:무상	40:60 원칙, 37~43:63~57 탄력	40:60 원칙, 35~45:65~55 탄력
비구속 목표	2025년까지 유상 60%, 무상 95% 이상	2030년까지 유상 60%, 무상 95% 이상(목표 유지)
대형화	패키지 사업 기획(정성 과제)	'사업 대형화' 중점과제, 무상 시행기관 절반 이상 정비(정량 목표 없음)
통합 플랫폼	개발협력 전략회의 운영, KOICA 플랫폼 기능 강화	KOICA 공공협력사업 중심 통합 플랫폼 체계 강화
투명성·책무성	IATI 항목 확대, 정보공개 지침, 통합정보포털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사업 신설 원칙적 금지, 변경 분기 보고, 전 과정 공개
법 개정 과제	(명시 없음)	평가 전문기관 법제화, 주관기관 시정조치 요청 권한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2021.1.20.) pp.8~27;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2026.2.26., 제56-1호) pp.4~3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8)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1.20., pp.23~25.
2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6~7.
30)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3, pp.8~9.

(2) 제4차 기본계획(2026~2030) 주요 내용

2026년 2월 의결된 제4차 기본계획은 재원 목표를 '2배 확대'에서 '2030년 ODA 규모 현 순위권(DAC 13위) 이상 유지'로 바꾸고, 유상과 무상의 비율 범위(탄력 범위)를 35~45 대 65~55로 넓혔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무상원조 시행기관(41개)의 절반 이상 정비, KOICA 공공협력사업 중심의 통합 플랫폼, 패키지형(여러 사업을 묶는 방식) 사업 대형화를 제시하였으나, 대형화의 정량 목표는 두지 않았다.[31] 통합 플랫폼은 제3차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었던 과제를 이어받은 것이다.[32] 책무성·투명성 측면에서는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신설의 원칙적 금지, 보고 주기의 분기 단위 단축, 사업 전 과정 공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평가 전문기관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33]

(3) 추진체계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ODA는 국무총리 소속 국개위가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유상은 재정경제부, 무상은 외교부가 주관하며, 수은(EDCF)과 KOICA 등 시행기관(2026년 37개)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이다.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편성한다.[34] 2026년 1월 1일까지는 유상 주관과 예산 편성 기능이 모두 기획재정부에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35] 국개위는 2020년 이후 24회 개최되어 81건을 심의·조정하였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 3회가 모두 대면으로 열렸다.[36]

---

3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Ⅴ '사업 대형화'·Ⅵ 재원배분.
32)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1.20., pp.23~25.
33)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10~11, pp.22~26, pp.29~30.
34)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7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6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p.1~7).
35)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7조제3항·제12조·제14조제6항 및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부칙 제7조.
36)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4번 표 및 심의·조정 목록.

2 ODA 지원사업 현황

가. ODA 예산 총괄

확정액 기준 총ODA는 2021년 3조 7,543억원에서 2025년 6조 5,010억원으로 73.2% 늘어난 뒤, 2026년 5조 4,372억원으로 16.4% 줄었으며, 2026년 감소는 무상원조(△7,819억원)에 집중되었다.[37] 2027년도 요구액은 6조 3,084억원(유상 2조 2,051억원, 무상 2조 9,145억원, 다자 1조 1,888억원)이다.[38] 유상은 38개국 166개 차관 사업(아시아 41.1%, 아프리카 38.2%, 중동·CIS 10.4%, 중남미 9.4%), 무상은 78개국을 대상으로 33개 기관이 시행하는 991개 사업(KOICA 1조 4,276억원 포함)이며, 다자는 55개 국제기구에 17개 기관이 기여하는 금액이다. 다자 중 8개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약 7,248억원) 가운데 3,999억원은 외환보유고로 납입되어 기관별 세출예산 합계(5조 9,085억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39]

이처럼 총ODA를 유상·무상·다자로 구분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2조와 OECD DAC 통계 기준에 따라 지원 경로, 상환 의무 유무, 주관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 ODA는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양허성 차관 등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재정경제부 주관·EDCF 집행)와 상환 의무 없이 자금·물자·기술을 공여하는 무상원조(외교부 주관·KOICA 및 각 부처 집행, 국제기구에 특정 사업을 지정해 위탁하는 다자성양자 포함)로 나뉘고, 유엔·국제금융기구 등 국제기구의 정규재원으로 분담금·출자·출연금을 납부하여 간접 지원하는 원조는 다자 ODA(국제금융기구·녹색기후기금은 재정경제부, 그 밖의 국제기구는 외교부 주관)로 분류된다. 양자 ODA 가운데 유상과 무상의 비율은 2025년 39.5 대 60.5에서 2026·2027년 43.1 대 56.9로 유상 비중이 커졌으나, 제4차 기본계획이 정한 범위(유상 35~45%) 안에 있다.

---

3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Ⅳ.1 총괄표.
3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p.7~9, Ⅳ.1 총괄표.
3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Ⅲ.2 양자협력 분야(유상·무상 총괄)·다자협력 분야(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계획), Ⅳ.1 기관별 총괄표 및 주 2).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ODA 규모는 기획예산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세부사업 목록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은 30개 부처·청의 159개이며, 합계는 5조 2,438억원으로 2026년 ODA 예산(종합시행계획 확정액 5조 4,372억원)보다 1,934억원(3.6%) 적다.[40]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2조 2,438억원, △2.7%)와 외교부(2조 1,642억원, △1.0%)가 전체의 84.1%를 차지하고, 세부사업 159개 중 62개는 증액, 87개는 감액, 10개는 동액 편성되었다.[41] 유상원조 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13개 세부사업은 1조 8,650억원으로 2026년(1조 9,750억원)보다 5.6% 적고, 이 가운데 차관(융자) 5개 세부사업이 1조 8,047억원이다.[42]

외교부·재정경제부를 제외한 28개 부처·청의 세부사업은 105개(66.0%)이나 예산은 8,358억원(15.9%)으로, 사업 수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들 가운데서는 교육부(8개, 1,660억원), 농림축산식품부(6개, 1,266억원, △12.4%), 보건복지부(9개, 912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9개, 681억원, +8.9%) 순으로 예산이 많다. 159개 사업의 중앙값은 41.9억원이고 100억원 미만인 사업이 101개(63.5%)이며, 그중 85개가 이들 부처·청의 사업이다.[43]

---

40)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Ⅳ.1 총괄표. 2026년 ODA 예산은 종합시행계획 확정액 기준이며, 같은 159개 세부사업의 2026년 예산(5조 3,441억원)과 비교하면 1,002억원(1.9%) 적다. 기획예산처 목록의 160개 중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ODA)은 2027년 예산안이 0원(WHO 사업분담금 지원으로 통합)이어서 사업 수에서 제외하였다.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1)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부처별·지역별 합계, 증감률, 비중, 사업 수 분포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2) 재정경제부, 「2027년 정부예산안 기준 ODA 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EDCF 세부사업은 차관 5개,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사업진행컨설팅·사업심사평가연구·개발협력증진·협조융자사업관리·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 인건비·기금관리비이며, 합계와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3)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사업 수·비중·중앙값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027년도 예산안 부처별 ODA 세부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수	예산		증감(B-A)	증감률	2027 비중
		2026 (A)	2027안 (B)			
재정경제부	23	2,305,867	2,243,823	△62,044	△2.7	42.8
외교부	31	2,186,116	2,164,189	△21,927	△1.0	41.3
교육부	8	169,231	166,025	△3,206	△1.9	3.2
농림축산식품부	6	144,478	126,631	△17,847	△12.4	2.4
보건복지부	9	90,840	91,181	341	0.4	1.7
기후에너지환경부	9	62,511	68,072	5,561	8.9	1.3
기타 24개 부처·청	73	385,019	383,913	△1,106	△0.3	7.3
합계	159	5,344,062	5,243,834	△100,228	△1.9	100.0

주: 1) 기획예산처가 ODA 세부사업으로 제출한 159개 기준이며(2027년 예산안이 0원인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 제외), 재정경제부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의 국고채무부담행위(이듬해 이후 지출할 채무를 미리 지도록 국회가 의결한 금액)분(2026·2027년 각 35,293백만원)을 포함함

2) 외교부는 KOICA 출연 17개 세부사업(2027년 1,120,559백만원)과 본부 14개 세부사업(1,043,630백만원), 재정경제부는 EDCF 5개 차관 세부사업(1,804,693백만원)과 기타 18개 세부사업(439,130백만원)으로 구성됨

3) 증감률·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증감률은 같은 159개 사업의 2026년 예산 대비이며, 2026년 ODA 예산(종합시행계획 확정액 5조 4,372억원) 대비로는 △3.6%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DA 총규모 추이(2021~2027년)]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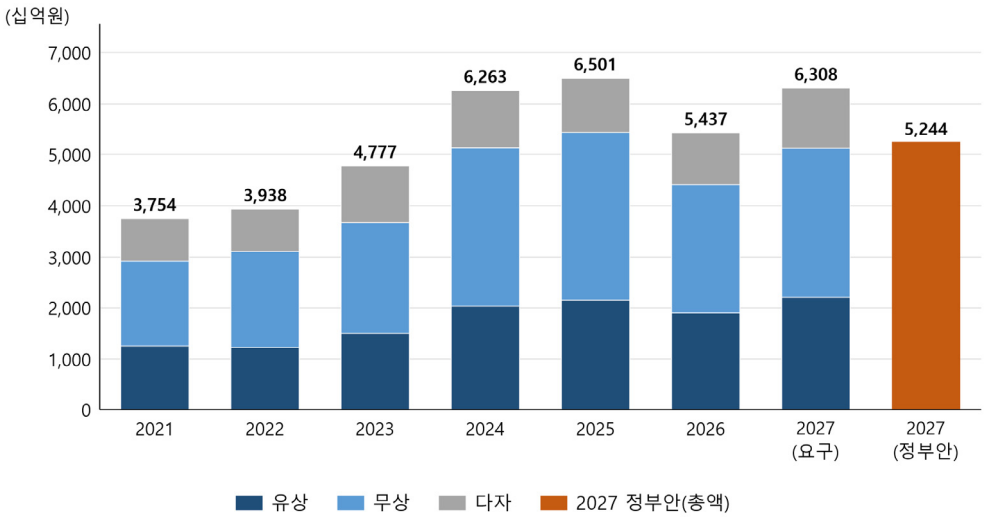
연도		총ODA	유상	무상	다자	양자 내 유상:무상
2021		3,754.3	1,258.2	1,667.9	828.2	43.0:57.0
2022		3,938.3	1,230.5	1,885.2	822.6	39.5:60.5
2023		4,777.1	1,503.0	2,170.9	1,103.2	40.9:59.1
2024		6,262.9	2,032.0	3,096.2	1,134.7	39.6:60.4
2025		6,501.0	2,150.0	3,295.1	1,055.9	39.5:60.5
2026		5,437.2	1,900.6	2,513.2	1,023.4	43.1:56.9
2027	요구	6,308.4	2,205.1	2,914.5	1,188.8	43.1:56.9
	정부안	5,243.8	-	-	-	-

주: 1) 다자는 국제기구의 정규재원으로 내는 분담금·출연금과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 ODA로,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 ODA(유상·무상)와 구분됨. 국제기구에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맡기는 다자성양자는 양자 무상에 포함됨

2) 2021~2026년은 확정액, 2027년 요구는 요구액 기준(제56-2호·제58-1호 최신 시계열). 2027년 정부안은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ODA 세부사업(159개) 합계로 종합시행계획과 집계 범위가 다르며, 같은 기준의 2026년 예산은 5,344.1십억원임(유·무상·다자 구분 미제시)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2026.7.);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2026.9.1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DA 유형별 규모 추이(2021~2027년)]



주: 2027년(요구)은 요구액 기준. 2027년 정부안 총액(세부사업 합계 5조 2,438억원)은 국제기구별 ODA 계상비율과 외환보유고 납입분[44]이 반영되지 않은 세출 기준이어서 종합시행계획의 유·무상·다자 구분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므로 유·무상·다자 구분 없이 총액으로만 표시함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제58-1호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시행기관별로는 EDCF와 KOICA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시행기관 수는 2024년 46개에서 2027년 요구액 기준 33개로, 사업 수는 1,976개에서 1,227개로 줄었다.[45] 2027년 요구액에서는 2026년에 비해 지역별로 중동·CIS(7.5%→9.3%), 분야별로 보건(7.9%→10.8%)의 비중이 높아지고 교통(28.2%→21.9%)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양자 ODA 중 중점협력국 대상 비중(다국가 사업 제외 기준)은 약 71%에서 75.0%로 높아졌다.[46]

44) 외환보유고 납입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출자금을 한국은행이 납입한 금액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1~2026) 및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붙임1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 2024년 46개 기관·1,976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48-1호)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4, p.9.

4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Ⅳ.1 주요특징.

[주요 시행기관별 ODA 예산 및 사업 수(2021~2027년)]

(단위: 억원, 개)

기관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요구	정부안
수출입은행(EDCF)	12,582.0 (171)	13,334.2 (200)	15,030.0 (228)	20,319.8 (257)	21,499.5 (270)	19,689.9 (197)	22,762.9 (171)	-
한국국제협력단	8,536.8 (699)	9,102.7 (738)	10,617.6 (759)	12,978.7 (817)	13,644.5 (813)	12,134.0 (789)	14,276.1 (444)	-
외교부(본부)	3,787.1 (58)	5,358.0 (62)	7,001.5 (66)	12,053.1 (66)	11,138.9 (61)	7,032.1 (63)	9,063.4 (60)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본부)	3,352.1 (138)	2,755.3 (105)	2,880.5 (99)	5,386.6 (110)	4,805.1 (110)	3,226.3 (96)	3,713.8 (84)	-
기관별 합계	33,611 (1,682)	36,551 (1,765)	42,289 (1,840)	59,792 (1,976)	61,981 (1,928)	50,153 (1,763)	59,085 (1,227)	-
시행기관 수	42	44	45	46	41	37	33	-

주: 1) 괄호 안은 사업 수. 기관별 규모는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을 제외하므로 총ODA와 다름. 2026년 합계에 출자·출연 4,219억원을, 2027년 요구액에 3,999억원을 더하면 각각 총ODA(54,372억원, 63,084억원)와 일치함(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027년 정부안은 기관별 집계 미제시

2) 2021년 사업 수는 2022년 계획 본문에 1,699개, 2022년은 2023년 계획 본문에 1,756개로 달리 기재됨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1~2026) 붙임1; 제58-1호 붙임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분야별 배분과 신규사업 비중을 2025년부터 보면 변화가 더 뚜렷하다. 양자 ODA 중 아프리카 비중은 2025년 18.5%에서 2026년 24.0%로 높아졌다. 분야별로는 2025년 1위였던 인도적 지원(16.6%)이 2026년 9.5%로 줄고, 교통은 14.2%에서 28.2%로 늘었다가 2027년 요구액에서 21.9%로 낮아지는 등 연도별 변동이 크다.[47] 신규사업은 2025년 464건(7,376억원)에서 2026년 425건(2,571억원), 2027년 요구액 98건(1,650억원)으로 줄어, 2027년 신규사업 규모는 기관별 예산의 2.8%에 그친다. 2026년의 신규사업 감소는 ODA 총액이 줄어든 시기와 겹친다. 2027년의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2026.3.)에 따른 저성과·소규모 사업 정비와 신규사업 선별 강화를 이유로 제시하였다.[48]

4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Ⅳ.1 주요 특징(지역별·분야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Ⅳ.1 주요특징. 2025년 비중은 제56-2호의 전년 비교치.

[양자 ODA의 지역·분야별 비중과 신규사업 추이(2025~2027년)]

(단위: %, 건, 억원)

구분		2025(확정)	2026(확정)	2027	
				요구	정부안
지역(%)	아시아	33.4	30.4	29.4	-
	아프리카	18.5	24.0	24.6	-
	중동·CIS	8.1	7.5	9.3	-
	중남미	7.1	7.8	6.8	-
분야(%)	교통	14.2	28.2	21.9	-
	인도적 지원	16.6	9.5	9.7	-
	보건	7.3	7.9	10.8	-
	교육	6.9	8.1	8.1	-
	공공행정	7.7	6.4	7.2	-
신규사업	수(건)	464	425	98	-
	규모(억원)	7,376	2,571	1,650	-
	규모 비중(%)	-	5.1	2.8	-

주: 1) 지역·분야 비중은 양자(유상+무상) 기준이며, 표에 없는 부분은 오세아니아·다국가·지역미지정 및 기타 분야임

2) 2025년 값은 2026년 계획에 제시된 전년 비교치로, 2025년 계획의 당초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신규사업 규모 비중은 기관별 예산(출자·출연 제외) 대비임. 2027년 정부안은 부문별 집계 미제시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6) 및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2026.7.23.) Ⅳ.1 주요특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ODA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전략적 ODA 등을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에 2026년 7,477억원보다 73.5% 많은 1조 2,972억원을 편성하였다.[49] 이 가운데 AI·문화·테크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서 추진하는 전략형 프로젝트는 198건, 8,781억원(2026년 5,794억원)으로 K-AI 54건(1,000억원), K-CULTURE 30건(621억원), K-TECH 114건(7,160억원)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외교 후속사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인도 조선 협력 등을 포함하여 1,380억원에서 3,486억원으로, 핵심광물 등 공급망 확보 연계사업은 303억원에서 70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에는 저성과 ODA 사업 구조조정(△0.9조원)

4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및 「(제58-1호)」, Ⅳ.1 주요특징(신규/계속); 「(제58-1호)」, Ⅱ(사업 정비: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2026.3.).

49)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홍보자료), 2026.9., p.43, p.66.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이 포함되어[50], 2027년도 ODA 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익과 연계된 분야로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AI·문화 등 전략적 투자 분야의 ODA 지원 확대를 통한 'ODA 사업의 국익 연계 강화'로 제시되어 있다.[51]

[2027년도 예산안 전략적 ODA 편성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2027년 예산안	증감률
전략형 프로젝트 (K-AI·K-CULTURE·K-TECH)	5,794	8,781	51.6
· K-AI	823	1,000	21.5
· K-CULTURE	419	621	48.2
· K-TECH	4,552	7,160	57.3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1,380	3,486	152.6
·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인도 조선 협력 등	816	2,660	226.0
· 정상회담 후속사업화 지원	564	826	46.5
공급망 확보	303	705	132.7
· 공급망·산업인프라 구축	188	517	175.0
· 핵심광물·자원 확보	115	189	64.3
합계	7,477	12,972	73.5

주: 1) 기획예산처가 '전략적 ODA 등을 통한 K-이니셔티브 확산' 과제로 제시한 금액이며, 2027년 예산안 기준 건수는 K-AI 54건, K-CULTURE 30건, K-TECH 114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인도 조선 협력 등 64건, 공급망·산업인프라 구축 6건, 핵심광물·자원 확보 7건임
2) 공급망 확보의 2027년 예산안은 원자료 합계(705억원)이며, 세부 항목의 합(706억원)과는 단수처리로 1억원 차이가 있음.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홍보자료, 2026.9.) p.4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무상원조(외교부·KOICA)

(1) KOICA 예산 규모

KOICA 총예산(본예산, 출연·보조·자체수입 포함)은 2021년 9,790억원에서 2024년 2조 212억원으로 늘었다가 2026년 1조 5,321.5억원으로 전년보다 23.4% 줄었는데, 외교부 보조금이 6,369억원에서 3,188억원으로 절반이 된 영향이 크다.[52]

50)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홍보자료), 2026.9., p.10.
51)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6.9., p.13, p.36.
52) 한국국제협력단, 「(2021)~(2026) KOICA 기관 업무보고 자료」, 예산 총괄표. 후속 연도 보고서의 전년도 수치는 이월·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2027년도 정부안 KOICA 출연금은 1조 1,206억원으로 전년보다 1.6% 적다.[53]

(2) 세부사업 구조와 4대 프로그램

KOICA 출연금은 국별협력 4개 지역, 공공협력, 다자협력, 시민사회협력, 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 신성장 파트너십, 사업관리지원, 기관운영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며, KOICA는 2027년 증액 사유로 정상외교 후속조치(중동·중앙아 +447억원, +80.5%), 통합 ODA(공공협력 +305억원, +90.3%, 부처연수지원 +114억원), 분쟁·취약국 지원(+429억원)을 들었다.[54] 국별협력·다자협력·시민사회협력사업의 내역은 기술·디지털 혁신, 보건회복력, 기후·에너지 대응,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의 '4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55] 국별협력 4개 지역 합계는 2026년과 2027년이 거의 같으나, 중동·중앙아에서는 기술·디지털 혁신(+113.6%)과 기후·에너지 대응(+190.6%)이 급증한 반면 아프리카는 네 프로그램이 모두 줄었다.[56]

[국별협력사업 4대 프로그램별 예산(2026~2027년)]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4개 지역 합계		증감률	중동·중앙아	
	2026	2027		2026	2027
① 기술·디지털 혁신	178,427	179,217	0.4	17,808	38,035
② 보건회복력	97,319	97,274	△0.0	15,050	19,435
③ 기후·에너지 대응	82,078	83,570	1.8	6,166	17,918
④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	81,769	77,212	△5.6	6,651	8,643
일반 프로그램	21,447	21,150	△1.4	9,862	16,191
계	461,040	458,423	△0.6	55,537	100,222

주: 2026년은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4개 지역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자료: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2026.8.28.) 국별협력사업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53)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54)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5번(2027년 ODA 사업별 예산 증감 사유).

55)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국별협력사업 산출근거 및 참고1·참고2. '4대 프로그램'은 제12차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2026.1.21.)에서 의결된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체계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의 7대 중점 분야(교육, 공공행정, 보건, 기후, 농촌개발, AI, 문화)를 반영해 개편한 4대 전략목표·16개 하위 중간목표 체계임. ① '청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② '감염병 및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보건회복력 강화', 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④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개발'로 구성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 프로그램'으로 분류됨.

5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국별협력사업 산출근거 및 참고1.

(3) 집행 현황

KOICA 출연사업의 집행 실적은 두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외교부가 KOICA에 출연금을 넘겨준 비율인 교부 기준 결산 집행률로, 2025년 17개 세부사업 중 16개가 100.0%였다. 다른 하나는 KOICA가 출연금을 현장에서 실제로 쓴 비율인 실집행률로, 국별협력사업은 2023~2025년 교부현액 대비 90.7~98.3%, 추경예산 대비 70.6~90.5%였다.[57]

다. 유상원조(EDCF)

(1) 운용체계와 지원조건

EDCF는 재정경제부가 운용·관리 주체로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수은이 심사·차관계약·집행·사후관리를 맡으며, 14개 부처·기관장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지원조건은 금리 0.1~2.5%, 상환기간 12~40년이고,[58] 수은은 "구속성 차관이 주된 운용방식"이라고 설명한다. 2026년 6월 말까지 누계 60개국 539개 사업에 41.1조원을 승인하였다.[59]

(2) 기금 수입·지출과 승인·집행

EDCF 사업비 예산은 2025년 2조 1,298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1조 8,356억원으로 줄고 있고, 사업비 집행률은 2022년 98.2%에서 2025년 89.8%로 낮아졌다.[60] 융자지출 기준 집행률은 같은 기간 98.9%에서 90.4%로 수치는 조금 다르나 낮아지는 방향은 같다.[61] 2027년도 정부안의 기금 수입·지출 규모는 2조 575.6억원으로 13.5% 줄었다. 수입 측의 일반회계 전입금(△21.9%)과 공자기금 차입(△

57)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다.결산내역 1) 실집행내역·2) 주요 결산사항.
58) 금리 하한은 2026년 8월 21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으로 0.01%에서 0.1%로 높아졌다(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59)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2~4항.
60)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2번 표. 집행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61) 같은 자료 2번 표의 융자지출 결산을 편성예산으로 나누면 2021년 97.5%, 2022년 98.9%, 2023년 92.9%, 2024년 91.0%, 2025년 90.4%로, 사업비 기준 수치와 계상 범위의 차이로 소폭 다르다(국회예산정책처 계산).

16.2%), 지출 측의 대개도국차관(△3.6%)이 줄었으나, 공자기금에 갚는 이자(이자상환액)는 16.4% 늘었다.[62] 승인액은 2024년 4조 9,243억원에서 2025년 3조 2,812억원으로 줄고 집행액은 1조 8,710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의 목표 대비 2025년 달성률은 승인 71.3%, 집행 86.2%(「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집행 목표 2.2조원 대비로는 융자지출 기준 85.0%, 사업비 결산 기준 87.0%)였다.[63]

[EDCF 주요 수입·지출 추이(2021~2027년)]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정부안)
사업비 예산	12,834	12,602	15,364	20,702	21,298	19,469	18,356
사업비 결산	12,401	12,372	14,279	18,865	19,132	-	-
집행률	96.6	98.2	92.9	91.1	89.8	-	-
일반회계 전입	7,529	6,623	7,873	12,187	12,374	13,343	10,425
기금예수금(공자기금 차입)	3,000	3,450	3,600	4,562	4,800	6,279	5,262
공자기금 이자상환	77	131	244	394	563	828	963

주: 예산은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편성예산(2021~2025년 일반회계 전입·기금예수금·공자기금 이자상환은 결산). 2026년은 국회 확정, 2027년은 정부안. 집행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2026.8.28.) 2·3·4번 표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2026.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EDCF 중기운용방향의 변화

EDCF 중기운용방향의 3년간 승인 목표는 2023~2025년판 11.7조원에서 2025~2027년판 14.1조원까지 늘었으나, 2026~2028년판에서는 9조원(연 3.0조원)으로 줄어 연평균 승인 목표가 약 36% 낮아졌다.[64][65] 2025~2027년판은 2024

62)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8.28., 4번 표;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1번·5번.

63)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2024.2.7., Ⅰ.1, Ⅱ.2, Ⅲ.2·Ⅲ.3;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승인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당해 연말 환율(계약을 마친 사업은 확정 환율)을 적용하여 다시 제시한 값이다(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64)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2.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방향 수립」, 2025.2.27.;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Ⅱ.2(2026~2028년 9조원). 연평균 감소율은 (9조원÷3)÷(14.1조원÷3)−1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65)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 2026.4.13.,

년의 역대 최대 실적(승인 4.9조원, 집행 1.8조원)을 근거로, 승인액을 2025년 4.6조원에서 매년 0.1조원씩 늘리고 3년간 7조원 수준(2025년 2.2조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지역 배분을 아시아 50~60%, 아프리카 30~40%, 중남미 10~20%로 바꾸어 아프리카 비중을 높였다.[66]

그러나 2025년 집행 실적은 융자지출 기준(1조 8,710억원)으로 이 목표의 85.0%, 사업비 결산 기준(1조 9,132억원)으로 87.0% 수준이었다. 또한 2025~2027년판은 2026년 이후 목표에 대해 "재정당국 협의 결과와 제4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재조정"한다고 적어, 2026·2027년 목표(승인 4.7조원·4.8조원)가 확정된 목표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잠정 목표임을 밝혀 두었다. 실제로 이 판본은 1년 만에 2026~2028년판으로 대체되었고, 3년간 승인 목표도 14.1조원에서 9조원으로 낮아졌다.[67]

2026~2028년판은 2025년 융자지출 1.9조원(+1.2%)과 융자원리금 회수 0.5조원(+61.2%)을 바탕으로 2026년 집행 목표를 1.9조원으로 정하였고, 2027년 이후에는 연도별 목표 없이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집행가능 적정소요)을 반영한다고 밝혔다.[68] 또한 사업 전 단계의 정보공개 원칙,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장기 지연 사업의 승인취소 검토, 금리체계 개편(인상 추진)과 채권관리 강화를 새 과제로 제시하였다.[69][70] 이 과제들은 2025년 12월의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과 이어진다.[71] 다만 금리 인상 폭, 승인취소 대상 사업, 2027년 이후 집행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72]

Ⅱ.1 기본 방향(p.3), Ⅱ.2 중기 운용 규모(p.4).

66) 기획재정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2025-①호 안건), 2025.2.27., 요약, Ⅰ.2 2024년 EDCF 운용실적, Ⅱ.2 중기 운용 규모, Ⅱ.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Ⅲ.3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2025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67) 기획재정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2025-①호 안건), 2025.2.27., 요약, Ⅰ.2 2024년 EDCF 운용실적, Ⅱ.2 중기 운용 규모, Ⅱ.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Ⅲ.3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2025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68)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Ⅰ.2 '25년 EDCF 운용실적(주요 성과·기금 운용).

69)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2 국민 신뢰 제고(p.8), Ⅳ 향후 추진계획(p.11).

70)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1) 기존사업 합리화(p.10). 원문에는 승인취소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대상 사업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71)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Ⅰ.2(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025.1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추진과제 각주.

[EDCF 중기운용방향 판본별 비교]

(단위: 조원)

항목	2023~2025	2024~2026	2025~2027	2026~2028
승인 목표(3년)	11.7	13.8	14.1	9.0(연 3.0)
집행 목표(3년)	5.0	6.5	7.0 수준(2025년 2.2)	2026년 1.9 2027년 이후 집행가능 적정소요
중점분야	그린·디지털·보건	그린·디지털·보건	그린·디지털·공급망	AI·디지털·문화·그린·공급망
지역배분	아시아 60~70 등	아시아 60~70 아프리카 20~30 중남미 10~20	아시아 50~60 아프리카 30~40 중남미 10~20	아시아 중점 유지 아프리카·중남미 중점협력국 중심
기존사업 정비	-	소요기간 4년→2년 9개월	사업관리자문단 3→6개국, 사후지원 한도 20→50억원	장기지연·참여가능성 저하 사업 승인취소 검토
금리·수익·투명성	-	-	비구속성 지원조건 재정비(2025 하반기)	금리체계 개편(인상 추진), 상생기여금 납부 추진, 전 단계 정보공개·정책실명제

주: 2025~2027년판과 2026~2028년판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안건 원문 기준. 2025~2027년판의 승인 계획은 2025년 4.6조원, 2026년 4.7조원, 2027년 4.8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2024.2.7.); 기획재정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2025.2.27.);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2026.4.1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다자·민간재원 개관

다자원조는 총ODA 기준으로 2024년 1조 1,347억원에서 2026년 1조 234억원으로 줄었고 2027년 요구액은 1조 1,888억원이며,[73] KOICA 다자협력은 분쟁·취약국 지원 증액으로 2027년 정부안에서 5.0% 늘었다.[74] 외교부 본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인도적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의 2027년도 정부안은 1조 436억원으로 2026년(1조 472억원)보다 0.3% 적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인도적지원(△15.3%)은

72)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3)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원문에는 금리 인상 폭·적용 대상, 기금수지 전망, 미수납·연체·대손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7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Ⅳ.1 총괄표.

74)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다자협력 산출근거;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5번.

줄고 국제기구 사업분담금(+88.8%)과 글로벌 보건기여(+62.0%)는 늘었다.[75]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증액은 NATO 신탁기금[76]을 새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보건기여의 산출근거는 '6,000만달러×환율' 한 줄뿐이어서 어느 국제기구에 얼마를 낼지 제시되지 않았다.[77] 14개 세부사업 중 국제기구 분담금 성격의 10개 사업은 사업설명자료에 성과지표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78]

민간재원 유치에 대해 제4차 기본계획은 민간재원 활용 확대와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정량 목표는 두지 않았다.[79] KOICA는 기업과 함께하는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80]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81]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82]을 운영하며, 그 예산은 2026년 50,576백만원에서 2027년 정부안 41,283백만원(△18.4%)으로 줄었고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았

75)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부처별·지역별 합계, 증감률, 비중, 사업 수 분포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76) NATO 신탁기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회원국과 협력국의 자발적 기여금을 모아 특정 국가·분야 지원에 쓰는 기금이다. 외교부는 2027년 정부안에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세부사업에 NATO 신탁기금 기여분을 새로 편성하였다.

77)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글로벌 보건기여(ODA)(2131-4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총괄표·1)사업근거·2)추진경위·3)산출근거·8)중기재정계획·다.결산표.

78)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2131-410)」(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총괄표·3)산출근거·다.결산표; 같은 자료, 국제기구 일반분담금 납부(ODA)(2131-406) 3)산출근거.

7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10~11, pp.22~26, pp.29~30.

80)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예비창업가·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풀기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를 해결하는 KOICA 프로그램으로, 2015년 도입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2).

81)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공유가치창출(CSV) 재원과 ESG 등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협력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KOICA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다(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

82) IPS(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재원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KOICA의 혼합금융 기반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임팩트 투자사·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한다(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

다.[83] EDCF에는 민간재원을 조달하는 별도 항목이 없고, 대신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84]의 이자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2027년 정부안 8,236백만원)을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기획(ODA) 세부사업으로 협력국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운영한다.[85]

마. 부처별 ODA 세부사업 현황

2027년도 예산안의 ODA 세부사업은 외교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30개 부처·청의 159개이며, 합계는 5조 2,438억원으로 2026년 ODA 예산(5조 4,372억원)보다 3.6% 적다.[86] 재정경제부(23개, 2조 2,438억원)와 외교부(31개, 2조 1,642억원)가 금액의 84.1%를 차지하고, 나머지 28개 부처·청의 105개 사업은 8,358억원(15.9%)이다. 28개 부처·청 중에서는 교육부(1,660억원)·농림축산식품부(1,266억원)·보건복지부(912억원)·기후에너지환경부(681억원)의 4개 부처가 54.1%를 차지한다.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인 58개 사업이 금액의 94.8%를 차지하고, 그중 1,000억원 이상인 14개 사업에 65.6%가 몰려 있다. 가장 큰 사업은 재정경제부 아프리카차관(6,927억원)과 아시아차관(6,160억원)이며, 외교부 인도적지원(2,703억원)이 뒤를 잇는다. 반면 100억원 미만 사업은 101개(63.5%)이나 금액 비중은 5.2%에 그친다. 이 101개 중 85개가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의 사업이어서, 28개 부처·청 105개 사업의 81.0%가 100억원 미만이다.

---

83)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가.총괄표·9) 외부지적사항·13) 성과평가.

84) EDPF(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경협증진자금):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 등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 EDCF와 달리 은행이 조달한 자금을 쓰며, 조달 비용과 지원 금리의 차이는 EDCF가 보전(이차보전)한다(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6번(민간재원)).

85)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5번·6번; 재정경제부, 「EIPP 사업설명자료」, 2026.

86)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2027년 예산안이 0원인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ODA)을 제외한 159개 사업의 합계·부처별 비중·규모 구간별 분포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같은 159개 사업의 2026년 예산(5,344,062백만원)과 비교하면 1.9% 감소이다. 2026년 ODA 예산(5조 4,372억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Ⅳ.1 총괄표의 총ODA 확정액이다.

[ODA 세부사업의 규모별 분포(2027년도 예산안)]

(단위: 개, %, 백만원)

규모 구간	사업 수	비중	2027 예산안	비중
10억원 미만	25	15.7	12,653	0.2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8	36.5	138,361	2.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8	11.3	121,199	2.3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4	27.7	1,530,286	29.2
1,000억원 이상	14	8.8	3,441,335	65.6
계	159	100.0	5,243,834	100.0

주: 1) 기획예산처가 ODA 세부사업으로 제출한 30개 부처·청의 159개 기준이며, 2027년 예산안이 0원인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WHO 사업분담금 지원으로 통합)은 제외함
2) 100억원 미만 101개 가운데 85개(10억원 미만 22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1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개)는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28개 부처·청의 사업임. 비중 합계는 반올림으로 100.0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업 유형은 30개 부처·청이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이하 "제출자료")로 159개 사업 모두 확인할 수 있다.[87] 국제기구에 분담금·기여금·신탁기금 등으로 납부하는 사업이 72개(1조 4,497억원)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민간단체에 출연·보조하는 사업이 48개(1조 6,064억원), 부처나 국내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32개(3,537억원),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빌려주는 융자 사업이 5개(1조 8,047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인건비·관리비가 2개(294억원)이다. 금액으로는 EDCF 차관인 융자가 34.4%로 가장 크고, KOICA 출연금이 대부분인 출연·보조가 30.6%, 분담금 등이 27.6%를 차지한다. 직접 사업(32개, 3,537억원)은 금액의 40.5%가 교육부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1,432억원)에 집중되어 있고,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의 105개 사업에서는 분담금 등이 52개(금액의 39.0%)로 가장 많다.

87) 외교부·재정경제부와 각 부처·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국토교통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기후대응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2026.; 성평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인사혁신처·산림청·국무조정실, 각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26.8.~9.(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국제정책대학원 소관분 포함)(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사업 유형은 각 사업의 사업시행방법과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

[ODA 세부사업 159개의 유형별 분포(2027년도 예산안)]

(단위: 개, %, 백만원)

유형	사업 수	비중	2027 예산안	비중	주요 사업
직접	32	20.1	353,675	6.7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143,225),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33,976),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27,992)
출연·보조	48	30.2	1,606,378	30.6	인도적지원(270,299), 다자협력(235,079),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186,135)
분담금·기여금 등	72	45.3	1,449,681	27.6	국제금융기구 출연(222,360),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155,823),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110,515)
융자(차관)	5	3.1	1,804,693	34.4	아프리카차관(692,741), 아시아차관(615,965), 중동-CIS차관(242,066)
기금 운영비 등	2	1.3	29,407	0.6	인건비(24,258), 기금관리비(5,149)
계	159	100.0	5,243,834	100.0	-

주: 1) 사업설명자료의 사업 유형·사업시행방법과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함. 직접 수행과 출연·보조가 섞인 사업(외교부 인도적지원 등)과 재정경제부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은 출연·보조로, 국제기구에 납부하여 기구가 시행하는 다자성양자·신탁기금과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 출연은 분담금·기여금 등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인건비·기금관리비는 기금 운영비 등으로 분류함

2) 2027년 예산안이 0원인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은 제외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은 제출자료 안에서 2027년 금액이 2,845백만원과 3,045백만원으로 달라 기준목록과 같고 부처가 최종 정부안 금액으로 확인한 2,845백만원을 적용함. 비중 합계는 반올림으로 100.0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8.~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주요 쟁점 분석

1 ODA 추진체계의 책임성·투명성과 국제환경 대응력 점검

가. 현황

우리나라 ODA는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가 종합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2026.1.1.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기관으로서 시행기관을 총괄하는 구조이다.[88]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상위전략과 사업 간 연계 부족,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N-2년제(무상)에 따른 적기 대응 부족", "투명한 정보공개·공정성 미흡"을 명시하였다.[89] 여기서 N-2년제는 무상원조 사업을 집행 2년 전(N-2년)에 발굴하고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개위는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24회 개최되어 81건을 심의·조정하였다. 2021~2025년 20회 중 서면회의가 11회(55.0%)였고, 같은 기간 안건 61건 중 27건(44.3%)이 서면회의에서 처리되었다.[90] 서면으로 처리된 안건에는 「'26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2025.8.),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2025.12.), 「ODA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2024.4.) 등 재원배분과 투명성 제도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었다.[91] 2026년에는 3회 모두 대면으로 열려 제4차 기본계획, 2027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등 15건을 의결하였고, 12월 4회차 본위원회도 대면회의로 준비하고 있다.[92][93]

---

88)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7조·제12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1번.
8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8~9.
90)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4번 표 및 심의·조정 목록. 서면 비중과 서면 안건 수는 목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하였다.
91)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심의·조정 목록 15·17·19·20·21번.
92)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심의·조정 목록 22~24번.
93)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및 심의·조정 실적(2020~2026년)]

(단위: 회, 건, %)

연도	개최 횟수	대면	서면	심의·조정 안건	서면 안건 수	서면 안건 비중
2020	1	1	0	5	0	0.0
2021	4	2	2	15	7	46.7
2022	4	2	2	13	5	38.5
2023	4	2	2	11	4	36.4
2024	4	2	2	10	5	50.0
2025	4	1	3	12	6	50.0
2026(7월까지)	3	3	0	15	0	0.0
합계	24	13	11	81	27	33.3

주: 1) 원자료 합계란의 '24건'은 회의 24회의 오기로 보아 정정함
2) 서면 안건 수와 비중은 심의·조정 목록을 합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함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2026.8.27.) 4번 표 및 심의·조정 목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협력국과 ODA 사업의 선정은 법률과 기관별 지침·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중점협력대상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국개위가 종합기본계획과 유엔 최저개발국(LDCs)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해 선정하고(2026년 5월 제4기 중점협력국 재지정, 대외 비공개[94]), 정부는 중점협력국별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해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2027년 요구액 기준 75.0%)을 배분한다.[95]

무상원조(외교부·KOICA) 사업은 KOICA 「국별협력사업 규정」에 따라 해외사무소가 협력국 개발정책·CPS·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부합성을 검토해 공식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96]를 접수하면, 본부 PCP 검토위원회(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여건 적절성, 수행계획 적정성, 이해관계자 분석, 지속가능성 검토)와 외부 전문가 예비조사, KOICA 사업심사위원회(내·외부 6인, 외부위원 과반)를 거쳐 후보사업을 선정한다. 이어 외교부가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

94) 제3기(2021~2025년, 27개국)까지는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제4차 기본계획은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협력국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16).

9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16, p.2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6, p.8, p.34.

96) PCP(Project Concept Paper, 사업요청서): 협력국 기관이 KOICA에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의 기본 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관리·추진 방안을 담아 제출하는 문서이다(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2번).

성지침」과 「무상원조 사업 정비계획 및 추진방향」(2026년 3월)의 ODA 적정성 심사기준(효과성·효율성·정책정합성·성과관리·지속가능성)에 따라 1대1 협의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심사를 거쳐 시행계획안을 마련한다.[97]

유상원조(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사업은 OECD DAC ODA 적격국(1인당 GNI 13,935달러 이하) 중 80개국을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한국수출입은행 업무세칙에 따라 정부 간 정책협의·타당성조사(F/S,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협력국 공식 차관신청 후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지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사업범위·사업비·채무지속가능성 등)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지원방침을 결정(승인)한다.[98]

감사원이 2022~2024년도 KOICA 신규 국별협력사업의 심의 단계별 변동을 추적한 결과, KOICA가 제출한 183건(2022년 73건, 2023년 49건, 2024년 61건)은 외교부안 단계에서 171건으로 줄었고, 국개위가 의결한 171건 중 170건(99.4%)이 정부안·국회안에 변동 없이 반영되었다(미반영 1건은 2023년 △△△△ 사업).[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6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개위 의결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100]

연계사업은 개별 유상·무상 ODA 사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거나 함께 추진하여 비용 절감과 사업 효과 제고를 꾀하도록 시행계획에 지정하는 사업으로, OECD DAC가 2012년·2018년·2024년 동료검토에서 거듭 지적한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유상사업과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는 무상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무상원조 사업 간 연계는 외교부가 담당하여 사업 중복을 막고 기관 간 전문성을 살리도록 한다.[101] 외교부가 매년 시행기관에 내려보내는 「무상원조사

97)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2번(신규 ODA 사업 의사결정 구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25, p.32.

98)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3·5항;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2번(신규 EDCF 사업 의사결정 구조).

99)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0](p.29).

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6항. 2025.10.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으로 존중 의무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되었다.

101)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의 연계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연계사업이 확정되면(선정), 재외공관이 현지 협의체를 통해 이행을 관리하고(이행), 외교부가 연계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환류).[102]

감사원이 2021·2022년 시행계획상 KOICA가 참여한 연계사업 126개 중 연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29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9개(65.5%)는 시행계획과 달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정 단계에서 작성지침의 선정기준은 협력국·수혜계층·지역·분야·추진시기 등을 고려해 비용 절감과 효과 제고가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내용에 그치고, 개발효과나 실행가능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두지 않았다. 예컨대 2021년 시행계획에서 수은의 △△△△ 지하수 관개사업, 기획재정부의 농업 가치사슬 진단, KOICA의 관개·농촌개발 역량강화가 유·무상 연계사업으로 묶였으나(외교부는 이 사업이 국무조정실이 전략 연계 패키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103] KOICA 사업은 2021년에 이미 마무리 단계였던 반면 수은 사업은 2024년 11월에야 시공에 착수하였고 사업 지역도 달랐다. 이행 단계에서는 미연계 사업이 있는 8개국 재외공관이 2021~2024년에 연 현지 협의체 회의 100회 가운데 연계 이행을 점검한 회의가 없었고, 환류 단계에서는 작성지침 양식에 미연계 사유를 적는 칸이 없어 KOICA가 미연계 사업을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였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선정기준 구체화와 양식 보완을 통보하고 현지 협의체 지도·감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외교부는 이를 수용하였다.[104]

외교부는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의 연계 목록을 점검해 연계가 불가능하거나 2026년 연계 계획이 없는 사업, 단순 정보 공유에 그치는 사업을 목록에서 제외하고(2026년 1월), 연계 판단기준과 미추진 사유를 적도록 양식을 고친 「2027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배포하였으며(2026년 2월), 재외공관 ODA 현지협의체와 무상원조 집행관리 분과회의를 통해 연계사업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05]

---

10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p.38~48([그림 6] p.39, [표 15] p.43, [표 16] p.45, [별표 3] p.80).
103)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04)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p.38~48([그림 6] p.39, [표 15] p.43, [표 16] p.45, [별표 3] p.80).
105)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나. 분석의견

(1) 정세변화 조정 개시 계기 보완 필요

협력국의 정세가 바뀌면 의결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이나 추경 감액으로 사후에 조정된다. 지침은 비상사태 선포·내전 발발·정권교체 등을 시행기관이 사업변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으나, 검토는 시행기관의 요청으로 시작되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해당국의 진행 사업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교부·재정경제부는 사업 조정의 탄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여행경보 상향 등 변경 검토를 시작하는 계기를 주관기관 검토 절차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지침 개정을 국개위에 요청하며, 재외공관 점검 결과를 시행계획 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은 국개위가 의결한 사업의 내용·기간·예산을 바꾸거나 사업을 철회·신설할 때의 사유와 승인 절차를 정한 국개위 의결 지침이다. 변경은 시행기관이 주관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면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국개위에 분기마다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25년에 이미 의결된 사업을 변경한 것은 261건이었고, 철회 32건(무상 29건, 유상 3건)의 사유로는 '수원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전시·내전 등 치안 불안 상황 지속', '내부 협의 지연에 따른 장기 부진', '수원국 채무여건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2025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에는 변경 내역을 분기마다 국개위에 상정하고 있으며,[106] 2026년 2분기에는 22건(철회 11건: 협력국 약속 불이행·의사결정 지연 7건, 장기지연 2건, 재원조달 방침 변경 2건)이 의결되었다.[107] 2025년 추경에서는 아시아·태평양(△7,000백만원, 현지 거버넌스 변동), 아프리카(△9,500백만원, 협력국 의사결정 지연), 다자협력(△5,370백만원, 협력국 정세불안)이 감액되었다.[108]

---

106) 관계부처 합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55-1호), 2025.12., Ⅱ 변경 사유·Ⅳ 변경 절차. 주관기관 승인과 국무조정실 공유 절차가 누락된 변경·신설 집행은 다음 국개위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107) 관계부처 합동, 「'25년도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제56-4호), 2026.2.26., pp.1~2; 「'26년 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2분기)」(제58-3호), 2026.7.23., pp.1~3.

108)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다자협력 세부사업 결산사항.

정세 변화로 사업을 조정한 사례를 보면 조정은 모두 상황이 생긴 뒤에 이루어졌다. △△△△의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용량 증대 타당성조사, 수자원 효율성 증대 등 KOICA 3개 사업은 2025년 8월 14일 주관기관(외교부) 승인으로 철회되었다. 변경 내역은 이러한 철회의 사유를 '수원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전시·내전 등 치안 불안 상황 지속' 등으로 묶어 제시하였고, 이 내역은 2026년 2월 국개위에 2025년도 변경 내역으로 일괄 보고되었다. 같은 나라의 직업학교 재건사업(1,490만달러)은 '협력국의 정세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요청사항 발생 및 현지 사정'을 사유로 예산 증액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이 2026년 5월 7일 주관기관 승인을 거쳐 같은 해 7월 국개위 분기 변경 안건으로 의결되었다.[109] 감사원(2025)이 분석한 KOICA 종료사업 24개에서도 외부 요인으로 시행 단계가 지연된 사업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2016~2019년 국가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 □□□□(정세불안·내각 구성 지연) 사업에서는 정세불안이 지연 사유로 명시되었다.[110]

이처럼 정세 변화에 사후적으로만 대응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무상원조는 사업 발굴(집행 2년 전, N-2년), 예산 편성(집행 1년 전, N-1년), 집행(N년) 사이에 2년의 시차가 있으나, 그 사이 정세가 바뀌었을 때 N-1년도 사업 심사와 시행기관의 변경 요청 외에는 정세 변화를 계기로 사업을 점검하는 장치가 없다.[111][112] 의결 이후 정세가 바뀌어도 국개위 단계에서 사업을 다시 조정하는 경로는 분기별 변경 안건밖에 없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개위 조정이 "사후적인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하였다.[113] 둘째, 현지 정세 정보가 재외공관, KOICA 해외사무소, 한국수출입은행에 흩어져 있어 N-1년도 사업 심사 이후에는 이를 한데 모아 조정 판단에 쓰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사업 변경 내역을 사유별

109) 관계부처 합동, 「'25년도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제56-4호, 보고안건), 2026.2.26., p.1 및 붙임 131~133번; 관계부처 합동, 「'26년 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2분기)」(제58-3호, 의결안건), 2026.7.23., p.1 및 붙임 외교부(KOICA) 4번.

110)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5](p.16), [별표 1](p.74) 및 본문 pp.16~17. 유형별 사업 수는 중복 집계이다.

11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5. 기본계획·시행계획상 정세 변화 사전 조정기준 조항이 없다는 판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이다.

11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8~9.

11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18호, 2025.10.22., pp.1~2.

로 집계하지 않아 정세 때문에 바뀐 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2027년에는 분쟁·취약국 지원이 63.6% 늘어나므로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이 증액은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우크라이나 1억달러 포괄지원 공약에 따른 것으로,[114] 정세 변화에 따른 집행 위험이 큰 분야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조정 개시 계기의 필요성도 커진다.

재해·분쟁 같은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재난 등 복합위기 속에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HDP Nexus)를 바탕으로 단기 구호를 넘어 장기적 회복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115] 협력국에 대규모 재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진행 중인 ODA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는 기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변경·신설 지침도 변경 사유와 승인 절차를 정할 뿐 진행 중인 사업을 일시 중지하는 기준은 두지 않는다. 해외긴급구호도 외교부 인도적 지원(ODA) 세부사업안의 양자 무상원조로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된 ODA이지만,[116] 그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재난 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구호의 개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을 정한 법률이어서,[117] 그 나라에서 이미 진행 중인 개발협력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긴급사태가 생기면 구호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은 사후 변경 절차로만 조정된다.

사전 조정에는 이미 마련된 재외공관 점검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재외공관[118]이 연 1회 이상 사업 현황을 파악해 국개위에 보고하고, 국개위가 정기국회 전에 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제23조제3항), 외교부는 2026년 86개 공관을 통해 1,148건을 점검할 계획이다.[119] 따라서

114)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다자협력(ODA) 내역사업표;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5번('분쟁·취약국 지원 +429억원').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115)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분쟁 취약국 지원 강화'·'인도적 지원 강화' 과제.

11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사업목록 59번(인도적지원(ODA) — 해외긴급구호, 양자무상).

1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조·제5조·제7조·제1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18)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한다.

1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23조; 외교부, 「2025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제58-4호), 2026.7.23., p.4.

외교부·재정경제부는 ① 국가비상사태·정권교체·무력충돌·대규모 재해 등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생기면 시행기관의 요청과 별도로 해당국의 진행 사업을 점검하는 계기와 사업 일시중지·범위 조정·대체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절차를 변경·신설 지침의 변경 사유와 연계하여 주관기관 검토 절차에 반영하되 필요하면 지침 개정을 국개위에 요청하고, ② 재외공관 점검에서 '관리 필요'로 분류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이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을 예산 요구 단계에서 별도로 표시하여 편성이 적정한지 검토하며, ③ 변경 요청 시 정세 요인을 따로 표시하여 분기 변경 내역에서 정세 요인에 따른 변경·철회가 집계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조정을 시작하는 계기로는 외교부 여행경보의 3단계(출국권고) 이상 상향,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협력국의 비상사태 선포처럼 외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해당 사업의 일시 보류 여부를 포함하여 주관기관의 변경 검토에 들어가도록 미리 정해 두면, 상황이 생긴 뒤 개별 안건으로 처리할 때 생기는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쟁·취약국 지원처럼 위험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이 계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여행경보 단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 지역 단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20]

외교부는 사업 계획 변경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 변화를 재외공관과 소관 지역국의 의견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양자 관계에 미치는 외교적 함의도 있어, 정세 변화를 유형화하고 조정 개시 요건을 미리 정하면 사업 조정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N-1년도 사업 심사에서 민간전문가·재외공관·소관 지역국의 의견을 접수해 사업 조정을 권고하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기관에 면밀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위험 체크리스트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21] 국무조정실도 지침이 이미 협력국의 정세 변화를 세분화하여 변경 검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변경 요청에 수시로 대응하여 결정의 신속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2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계기는 사업 조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진행 사업을 점검하고 변경 검토를 시작

120) 외교부 여행경보제도는 위험 수준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하며, 이와 별도로 단기 긴급 위험에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

121)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22) 국무조정실,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하는 계기로 설계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탄력적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유상원조는 사업 구조가 달라 같은 계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쟁·내란 등 위난상황이 생기거나 외교부 여행경보가 발령된 고위험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내부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즉시 자금 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개국 해외사무소를 통해 협력국 정세와 사업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EDCF는 협력국과 우리 기업이 맺은 공급계약의 공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정세 변화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미리 조정하면 우리 기업의 공정대금 미수나 사업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123] 따라서 유상원조는 이러한 특별관리사업 제도를 조정 개시 계기와 연계하되 사업별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ODA 정보공개 이행 점검 필요

정부는 정보공개 관련 계획을 세 차례 수립하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 42개 항목 중 31개를 공개하고 있으나, 계획별 이행률과 신규사업 선정 기준·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계획별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국개위 회의 결과(2026년 12월 공개 예정)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범위를 넓히며, 외교부는 신규사업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 유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수립한 「ODA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2024.4.), 「ODA 통합정보포털 구축계획」(2025.4.), 「사업 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2026.5.) 가운데 앞의 두 계획은 서면회의로, 가이드라인은 대면회의로 국개위에서 의결되었다.[124] 이행된 것으로 공개된 실적은 원조 사업의 예산·집행·성과 정보를 공통 형식으로 공개하는 국제 기준인 IATI를 통한 사업정보 공개, 2026년 5월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125] 국개위 평가결과의 ODA KOREA 공개[126]이다.

---

123)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24)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심의·조정 목록 15·19·23번.
12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4.
126)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25년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국개위 제56-3호), 2026.2.26., p.1.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IATI에 가입하였고, 2016년 8월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약 740개 사업에 대하여 필수 13개 항목을 처음 공개하였다.[127] 현재는 재정경제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KOICA·보건복지부 등 40여 개 기관의 사업정보를 분기마다 ODA KOREA와 IATI에 공개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42개 항목(필수 13개) 중 기관정보 8개와 사업정보 23개를 합한 31개(73.8%)를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128][129] 국제 비영리기구 Publish What You Fund의 원조투명성지수에서 KOICA는 2022년 77.7점(50개 기관 중 13위)에서 2024년 71.8점(22위)으로 낮아졌고, 2024년 성과 부문 점수는 20점 만점에 5.8점에 그쳤다.[130]

[한국의 IATI 정보공개 현황]

구분	공개 기준	한국 공개 실적
공개 항목	IATI 정보공개 항목 42개(필수 13개)	31개 공개(기관정보 8개, 사업정보 23개)
첫 공개(2016.8.)	39개 항목 중 필수 13개	KOICA·한국수출입은행(EDCF)의 약 740개 사업
공개 기관	ODA 시행기관	재정경제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EDCF)·KOICA·보건복지부 등 40여 개 기관
갱신 주기	진행 중인 최신 사업정보	분기별(최근 2026.8.31., 2026년 2분기분)
주요 정보 요소	기본정보, 참여기관, 지리, 분류(분야·원조유형·구속성 등), 재정(예산·계획지출·거래), 성과, 문서	-
국제 평가(원조투명성지수)	100점 만점(성과 부문 20점)	KOICA 2022년 77.7점(전 세계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13위) → 2024년 71.8점(22위), 2024년 성과 부문 5.8점

주: 1) 공개 항목 수(42개 중 31개)는 국무조정실 집계 기준임
2) '주요 정보 요소'는 IATI 표준(v2.03)의 사업(activity) 정보 요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묶은 것임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2016.8.11.); 국무조정실, ODA KOREA·ODA통합누리집 「IATI 정보공개」; IATI, 「IATI Standard Reference v2.03」; Publish What You Fund, 「Aid Transparency Index」(2022·202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27) 외교부,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한국 ODA 정보 공개」(보도자료), 2016.8.11. ; 가입 시점은 국무조정실, ODA통합누리집 「IATI 정보공개」(2026.10.5. 접속).
128) 국무조정실은 통합정보포털이 2026년 1월 구축을 마치고 운영 중인 ODA 행정업무용 내부 시스템으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어서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IATI 공개 항목 수(42개 중 31개, KOICA는 35개)는 스웨덴(33개)·벨기에(32개)·독일(31개)·일본(29개) 등 DAC 주요 공여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29) 국무조정실, ODA KOREA 「정보공개 〉 사업정보 〉 IATI 정보공개」(최종 업데이트 2026.8.31.); 국무조정실, ODA통합누리집 「IATI 정보공개」(2026.10.5. 접속). 공개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130) Publish What You Fund, 「2022 Aid Transparency Index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2022.7.; 같은 기관, 「2024 Aid Transparency Index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2024.7.

정보공개는 제4차 기본계획이 스스로 제3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꼽은 과제이다.[131] 제4차 기본계획은 "투명한 정보공개·공정성 미흡"을 명시하였고,[132] 국민의 ODA 인지도는 2021년 64.3%에서 2024년 50.0%로 14.3%p 하락하였다(지지도는 76.0%에서 77.8%).[133] 인지도 하락의 원인을 정보공개 부족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국민이 ODA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할 필요성은 보여준다. 정보공개는 국개위가 사업을 실제로 조정하는지,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지를 외부에서 검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개위는 2021~2025년 안건의 44.3%를 서면회의로 처리하다가 2026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면으로 열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동안 수정의결된 안건은 1건(제56-1호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고 보류된 안건은 없으며, 심의·의결 안건은 ODA KOREA에 공개하되 회의 결과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해 왔고, 2026년 12월부터는 회의 개요와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회의 결과를 안건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134] 회의 결과가 정례적으로 공개되면 회의 방식의 변화가 심의 내용에 미친 영향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선정 과정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KOICA의 사업요청서(PCP) 검토 및 사업심사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의 타당성조사·심사보고서, 외교부·재정경제부의 시행계획 적정성 심사 등 기관별 내부 선정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2022~2024년도 KOICA 신규 국별협력사업 183건 중 12건은 외교부안 단계에서 빠졌고 외교부안 171건은 모두 국개위에서 의결되고 그중 170건이 예산에 반영되어,[135] 국개위 단계에서는 사실상 조정이 없었고 사업은 그 이전 단계(KOICA 내부 심사와 외교부안 마련)에서 걸러졌다. 그러나 주관기관의 세부 심사 배점·선정 기준과 후보사업 탈락 사유, 제4기 중점협력대상국 명단과 국별 배분 기준은 시행계획 등 공개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136]

---

13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7.
13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8~9.
133)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3.
134)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35)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0](p.29). 외교부안 단계 탈락 건수(12건)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136) 「20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주관기관 심사기준 명확화와 대국민 공개를 향후 제도개선

계획의 이행 정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원인으로는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등 대외 공개를 위한 계획의 이행 목표와 항목별 이행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도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등 "대외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137] 유상원조에서는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이 사업 전 단계의 정보공개 원칙, 타당성·심사보고서 공개,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내부신고 창구 등을 2026년 상반기 과제로 제시하였다.[138]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 6월부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완공평가보고서 등 사업 발굴에서 평가까지의 정보를 EDCF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같은 해 5~6월에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과 익명 기반 내부신고센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139] 다만 이러한 유상원조 정보를 무상원조 정보와 연계하여 공개하는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이미 투명성 증진 의무(제5조제4항), 주요 실적 공개와 종합정보 제공체계(제18조제3항·제4항), 통계 정보시스템(제21조)을 두고 있으므로,[140] 이 조항들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①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등 대외 공개 계획의 이행 상황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141] ② 2026년 12월부터 공개하기로 한 국개위 회의 결과(회의 개요·주요 논의사항)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며, ③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 단위로 ODA KOREA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도 EDCF 정보공개 과제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유상원조의 특성을 고려하되 무상원조 정보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제로 제시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137) 외교부, 「2025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제58-4호), 2026.7.23., 향후계획.

138)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2 국민 신뢰 제고(p.8), Ⅳ 향후 추진계획(p.11).

139)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19번(EDCF 정보공개·정책실명제·내부신고 창구 등 2026년 상반기 과제의 이행실적).

1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5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

141) 국무조정실은 항목별 이행실적은 ODA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계획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국무조정실,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외교부는 신규사업 선정 기준을 시행계획 작성지침으로 시행기관에 미리 공유하고 탈락 사유는 시행기관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심사 결과의 상세 사유는 외교적 민감성, 심사의 자율성, 시행기관의 비공개 정보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142] 이를 고려하더라도 외부에서 선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선정 기준과 함께 개별 사업의 상세 사유가 아닌 탈락 건수와 사유 유형을 집계하여 시행계획 부속자료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는 외교부도 사업별 주요 결과를 다음 연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시행기관의 후속조치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개 범위와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142)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 ODA 사업 프로그램화·대형화 추진의 실효성 검토

가. 현황

제4차 기본계획은 무상 시행기관 정비, KOICA 공공협력사업 중심의 통합 플랫폼, 패키지형 사업 대형화를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OECD DAC 동료검토가 2012년 이후 반복하여 지적하고 2024년에는 45개 기관의 분절이 "기회이자 위험"이며 통합적 프로그램 기획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이다.[143]

사업당 평균규모는 전체 기준 2021년 20.0억원에서 2027년 요구액 기준 48.2억원으로, KOICA는 2026년 15.4억원에서 32.2억원으로 커졌다.[144] KOICA 사업 수가 2026년 789개에서 2027년 요구액 기준 444개로 345개(43.7%) 줄어든 사유를 보면, 「2027년 ODA 사업정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2026년 3월)에 따라 ① 각 부처의 단기 초청연수 사업을 KOICA 글로벌연수(부처연수지원) 플랫폼으로 통합·일원화하면서 KOICA 자체 단기연수 과정도 감축하였고, ② 다국가 유사·행사성·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정비·종료하는 한편 신규 사업 발굴을 선별·축소(전체 신규 425건→98건, KOICA 국별·다자 신규 11건)한 영향이 크다.[145]

반면 기존에 진행 중인 국별협력 개별 프로젝트들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4대 프로그램 아래로 묶어 표시하였을 뿐 종합시행계획 사업목록과 세부 내역에서는 여전히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은 진행 중인 계속 프로젝트들을 물리적으로 합친 결과라기보다 정비계획이 제시한 단기연수 통합과 소규모 사업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양자 무상 사업 평균규모가 2016년 10.4억원에서 2025년 20.8억원으로 커졌다고 설명하나, 이 수치는 원출처와 계산 방식이 제시되지 않은 재인용 자료이다.[146]

---

143)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1-나 p.38(OECD DAC 동료검토 2012·2018·2024 요약).

14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1~2026) 및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붙임1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 평균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14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Ⅳ.2.

2027년 신규사업 98건 중 15건(15.3%)이 대형사업(유상 1억달러·무상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만,[147] 제4차 기본계획은 대형화의 정량 목표를 두지 않았다.[148] 이를 종합하면 KOICA 사업의 평균규모가 두 배 넘게 커진 것은 주로 사업 수가 줄어든 결과로 보아야 하며(사업 수 43.7% 감소, KOICA 예산은 종합시행계획 기준 2026년 확정액 1조 2,134억원에서 2027년 요구액 1조 4,276억원으로 17.7% 증가), 개별 사업의 대형화는 유·무상 전체 신규사업 98건 중 대형사업 15건 수준에서 확인된다. KOICA와 외교부도 이 평균은 예산을 시행계획상 사업 개수로 단순하게 나눈 값이어서(연수사업은 시행계획 1건에 수백 개의 연수가 포함됨) 실제 대형화는 국별협력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 기준으로 1건당 평균 규모는 2026년 165.3억원에서 2027년 214.9억원(요구 기준)으로 약 1.3배 커졌다고 설명하였다.[149]

[ODA 사업당 평균규모 추이(2021~2027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요구)
전체(기관별 합계)	20.0	20.7	23.0	30.3	32.1	28.4	48.2
무상(UN 포함)	12.4	13.8	15.9	20.7	22.5	18.3	32.5
한국국제협력단	12.2	12.3	14.0	15.9	16.8	15.4	32.2
수출입은행(EDCF)	73.6	66.7	65.9	79.1	79.6	99.9	133.1

주: 기관별 예산규모를 사업 수로 나누어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정부 제시치(무상 2025년 22.5억원, 2026년 18.3억원)와 산식·범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2021~2026)·「(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붙임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프로그램화는 국별협력사업의 내역을 4대 프로그램으로 다시 묶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2026년에도 프로그램 아래에 149개 개별 사업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다.[150] 통합 플랫폼의 핵심인 공공협력사업은 예산이 2026년

14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공공협력사업 참고자료.

14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Ⅳ.1·Ⅳ.3.

148)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Ⅴ '사업 대형화'.

149)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37.8억원에서 2027년 642.8억원으로 90.3% 늘고, 이 가운데 본사업은 21건에서 51건으로 확대된다.[151] 사업을 발굴·설계하는 형성 단계의 비용은 형성기획비·사후관리비·수행지원비로 구성된 '사업효과성제고비'에서 지원되며, 기획조사 1건의 평균 비용(6,496만원)은 사업 1건의 평균 총사업비의 0.4% 수준이다.[152] 2027년 정부안에서 사업관리지원 세부사업 안의 형성기획은 14,600백만원(200건)에서 4,375백만원(60건)으로 70.0% 줄었다. KOICA는 표준사업모델(외교부와 협의하여 문서명칭을 사업설계지침으로 변경) 기반 기획 도입을 이유로 200건 유지를 요구하였으나,[153] "사업 발굴 물량 조정 등"으로 감액되었다.[154] 한편 KOICA는 초기단계 평가지표 개선(2024.12.), 형성조사 제도 도입(2025.2.), 협의의사록 체결 여부의 부서 평가지표 반영(2025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155]

사업 형성 단계와 본사업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착수 준비에 영향을 준다. KOICA는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경쟁입찰에 PM(사업책임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되, 공모로 선발된 전문가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형성 과정의 정보를 가진 전문가가 입찰에서 유리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전문성은 활용하려는 장치이며, KOICA는 예비조사·기획조사 보고서 등 형성자료를 공개하여 입찰 참여자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획조사에 투입된 전문가 387명 중 326명(84.2%)이 공모로 선발되었고, 2023~2024년 신규 국별협력사업 중 수행기관 선정이 끝난 43개 사업의 기획조사 투입 전문가 190명 가운데 본사업 PM으로 참여한 사례는 8개 사업 8명(4.2%), 기타 인력으로 참여한 사례는 15개 사업 23명(12.1%)이었다. KOICA는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를 본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면 응찰 업체 감소, 유찰 증가,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156]

---

150)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4)-②.

151)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공공협력사업 산출근거 및 참고자료.

15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각주 35·36·41;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3조제2호.

153)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54)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사업관리지원 산출근거·참고 2;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5번.

155)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6] p.19;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9)-5).

나. 분석의견

(1) 착수준비도 연계 편성 필요

2026년 착수한 국별협력 신규사업 48건의 첫해 편성액 중앙값은 82.5백만원이었으나 2027년에는 1,050백만원으로 늘었고, 48건 중 36건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첫해 소액 편성은 현행 절차상 합리적인 면이 있으나 2년차 증액분이 착수준비 일정에 맞는지는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교부와 KOICA는 협의의사록 체결과 수행자 선정 일정을 예산안에 함께 적을 필요가 있다.

KOICA 국별협력사업은 착수연도에 기획조사, 협의의사록 체결, 수행자 선정을 거친 뒤 2년차부터 본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많아, 첫해 편성액은 작고 이듬해에 크게 늘어난다. 2026년 착수 국별협력 48건의 초년도 편성액은 32건이 100백만원 이하(8건은 5백만원 이하)였고, 2027년에는 베트남 사이버보안(5→1,096백만원), 파라과이 소농 기후적응(50→2,828백만원)처럼 크게 늘었다.[157]

[신규사업 초년도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사업 수	초년도 편성 합계	초년도 중앙값	초년도 100백만원 이하	익년 편성 합계	익년 중앙값	익년/초년도 5배 이상
2026 착수 국별협력(4개 지역)	48	9,715	82.5	32건(5백만원 이하 8건)	56,813	1,050	36건
2026 착수 다자협력	16	14,434	723.5	3건	23,476	1,452	3건
2027 신규(국별 9·다자 2)	11	7,597	350	4건	-	-	-

주: 예산안 설명자료 산출근거 중 2026년 착수로 표기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익년은 2027년 정부안

자료: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2026.8.28.) 4개 지역·다자협력 산출근거;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2026.9.8.) 1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56) 한국국제협력단, 「형성단계 참여 전문가의 본사업 PM 참여 제한 관련 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PM 참여 비율(4.2%)과 기타 투입 비율(12.1%)은 수행기관(PMC) 선정이 완료된 43개 사업의 기획조사 투입 전문가 190명 기준임.

157)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4개 지역 국별협력 산출근거. 집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현행 절차를 전제로 하면 첫해 소액 편성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은 대체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협력국과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므로, 감사원이 점검한 진행 중 사업 80개 중 착수 전년도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사업은 없었고 착수연도에 수행자를 선정한 사업도 절반 수준(51.3%)이었다. KOICA도 예산 심의 전 협의의사록 체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158] 이런 절차에서는 첫해에 협의의사록 체결과 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쓰고 본사업비는 2년차부터 쓰게 되므로, 첫해 편성액이 작은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개위 의결 사업의 99.4%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고 기획조사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협력대상국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심의가 끝난 뒤 사업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붙인 협의의사록(조건부 협의의사록)을 착수연도 이전에 체결하는 등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통보하였다.[159] 조건부 협의의사록을 미리 체결한 사업은 착수연도 초부터 수행자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 첫해에도 본사업비를 집행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첫해 소액 편성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은 협의의사록을 예산 확정 뒤에 체결하는 현행 절차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한다. 또한 2027년 신규사업 중 인도 조선해양 인재양성(2,933백만원)과 에티오피아 도시기후회복력(2,162백만원)은 첫해부터 큰 금액이 편성되어, 모든 신규사업이 첫해에 적게 편성되는 것도 아니다.[160]

문제는 편성액과 착수 준비 상황의 관계가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점검한 2021~2023년 착수 진행 사업 80개 가운데 착수연도에 수행자를 선정한 41개 중 37개는 하반기에 선정되었으므로,[161] 수행자 선정이 늦어진 사업은 2년차 초에도 본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사업에서는 2년차에 크게 늘어난 예산의 일부가 이월·불용되거나 사업 간에 예산을 옮기는 과부족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도 착수연도 집행 부진을 반복 지적해 왔다.[162] KOICA가 협의의사록 체결 여부를 부서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은 개선 조치

158)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p.27~28, [표 11] p.32.
159)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3항 나(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 등 활성화 필요) 및 각주 30·37, 조치할 사항 ②; 「국별협력사업 규정」 제14조제1항.
160)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1번(2027년 신규 ODA 사업 목록).
161)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1](p.32) 및 pp.32~33.
162)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9)

이나,[163] 사업별 협의의사록 체결과 수행자 선정 일정이 예산안에 제시되지 않아 편성액이 그 일정에 맞는지를 예산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외교부와 KOICA는 정부안 편성(5~8월)과 협의의사록 체결·수행자 선정(주로 하반기) 사이의 시차가 불가피하여, 착수 준비 완료 여부만으로 2년차 증액을 결정하면 정부안 확정 뒤 수행자를 선정한 사업의 증액 소요를 반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협의의사록 체결 일정 등을 예산안에 적으면 제출 시점과 국회 심의 시점의 차이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64]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여, 외교부와 KOICA는 신규·2년차 사업의 기획조사 완료 여부, 협의의사록 체결(예정)일, 수행자 선정(예정) 시기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예정 일정으로 적고, 2년차에 크게 늘어나는 사업은 심의 시점에 맞추어 진행 상황을 갱신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관행대로 첫해에는 착수에 필요한 비용 위주로 편성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시설·기자재 등 본사업비는 협의의사록 체결(감사원이 통보한 조건부 협의의사록 포함)과 수행자 선정 일정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하면, 2년차에 급증한 예산이 이월·불용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첫해와 2년차의 편성 비중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프로그램 성과지표 확정 필요

KOICA 국별협력사업은 4대 프로그램 체계로 개편되었으나, 기존 성과지표는 2026년에 삭제되었고 대체지표의 2027년 목표는 아직 '검토' 상태이며, 4대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는 수립 중으로 예산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프로그램별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점검하려면 성과를 측정할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는 협력국에서 실제로 나타난 변화(결과)를 측정하는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를 제4차 기본계획의 중간목표·통합성과지표와 연계하여 확정하고 예산안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외부지적사항.

163)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6] p.19;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9)-5).

164)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KOICA 국별협력사업은 기술·디지털 혁신, 보건회복력, 기후·에너지 대응,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의 4대 프로그램 아래 개별 사업을 묶어 편성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세부사업마다 공통 지표 하나를 두고 있다. 기존 '국별협력사업 성과달성도' 지표는 2023~2025년 목표 대비 100% 내외로 달성된 뒤 2026년에 삭제되었다. 대체지표인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3개 분야 수혜자 수×만족도)는 2026년 목표가 890,251이고 실적은 '진행' 중이며, 2027년 목표는 '검토' 상태이다.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국별협력사업에 '사업개선' 판정을 내리며 성과지표 체계 고도화와 영향평가 정착을 요구하였고, KOICA는 신규 지표 초안을 개발 중이라고 답하였다.[165]

이 지표 체계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변별력이 낮았던 기존 지표를 삭제한 뒤 대체지표의 2027년 목표가 확정되지 않아 2027년 예산안에 성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대체지표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 수준에 그쳐 협력국에서 나타난 실제 변화(결과, outcome)를 측정하지 못한다. 셋째, 대체지표가 4대 프로그램과 대응하지 않는다. 그 결과 중동·중앙아의 기술·디지털 혁신(+113.6%)과 기후·에너지 대응(+190.6%) 증액이 어떤 성과 목표를 위한 것인지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166] 제4차 기본계획은 산출 중심의 통합성과지표를 먼저 도입한 뒤 성과(결과) 단위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고,[167] 국개위는 2027년 신규사업부터 통합성과지표를 적용하기로 정하였으나,[168]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관리 틀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사업에서 4대 프로그램 아래 149개 개별 사업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보면, 현재의 4대 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을 분야별로 묶은 분류 체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단위의 공동 목표와 성과지표, 사업 간 예산 배분 원칙이 갖추어져야 사업 단위 관리에서 프로그램 단위 관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KOICA는 기존 KOICA-SDGs 성과프레임워크를 개편하여 KOICA 프로

165)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4) 사업효과·13) 성과평가, 사업관리지원 13) 성과평가.
16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중동·중앙아 국별협력 산출근거 및 참고1.
167)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성과관리 내실화.
168)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제56-3호), 2026.2.26., pp.2~8.

그램 이행계획(2026년 7월)에 따라 4대 프로그램 성과지표를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69] 이 지표가 예산안으로 이어지도록 외교부와 KOICA는 4대 프로그램별로 중간목표·통합성과지표[170]와 연계된 결과 수준의 지표와 목표치를 확정하여 2028년도 예산안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대표사업 선정·관리기준 필요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대표 성공사례와 플래그십·랜드마크 사업 추진을,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략형 프로젝트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분야별 전략에 대표사업 유형과 요건이 나뉘어 있을 뿐 어떤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볼지 정하는 분야 공통의 기준이 없고 시행계획과 예산안 설명자료에서도 대표사업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분야별 요건은 유지하되 전략형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표(플래그십)사업 여부와 그 성과 목표를 시행계획과 예산안에 구분 표시하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정하고 외교부·재정경제부는 이를 적용하며, 국개위의 대표사업 기여분석 결과도 후속 선정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ODA 규모가 2020년 3.4조원에서 2025년 6.5조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대표성 있는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성과관리도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171]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의 사업 대형화와 성과기반 관리체계 도입으로 "대표 성공사례 창출·확산"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패키지형 기획과 대규모 사업 신규 발굴을 사업 대형화의 수단으로 두고, 우리나라 ODA의 방향과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설정을 별도 과제로 두었다.[172]

개별 전략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각각 쓰이고 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보건 분야의 결핵·말라리아 시그니처 사업, 문화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패키지, AI 활용 분야의 유·무상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대표사업 유형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안)」은 유·무상 사업 연계와 패키지 사업 개발을 통

169)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170) 중간목표·통합성과지표: 상위 전략목표 아래 둔 세부 목표(중간목표)와, 여러 사업의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하기 위해 정한 공통 성과지표(통합성과지표)를 말한다.
17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3, p.9.
17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11, p.22, p.26.

해 "AI 활용 ODA 대표사업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상 사업을 ODA 사업전략협의회(연 2~3회)에서 발굴하겠다고 하였다.[173]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대형 랜드마크 사업에 주력하고 '정책컨설팅+프로그램차관+인프라지원'[174]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175] KOICA의 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 사업은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의 이행 과제로 "국가별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을 들고 있다.[176] 2027년도 예산안은 AI·문화·테크 등 강점 분야의 사업 198건(8,781억원)을 '전략형 프로젝트'로 묶어 K-AI·K-CULTURE·K-TECH로 제시하였다.[177]

사업 대형화와 대표사업 육성은 필요한 과제이다. OECD DAC는 2012년 이후 동료검토마다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분절화를 지적하였고,[178] 제4차 기본계획도 대표 성공사례가 부족하다고 진단하였으며, 재원 목표를 정할 때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기여 확대 요구를 고려하였다.[179] 원조 규모가 DAC 13위권인 공여국으로서 협력국 발전에 뚜렷하게 기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공여국도 대표적인 대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인도 뭄바이-아마다바드 고속철도 사업에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누적 1조 500억엔의 엔차관을 약정하였다.[180] 독일 재

---

173)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안)」(제58-2호), 2026.7.23., p.4, p.12.

174) 프로그램차관(Program Loan): 특정 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차관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책과제·개발사업 실시 자금을 지원하는 EDCF 차관으로, 협력국의 정책 이행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기자재·공사를 사들이는 본구매 계약이 따로 없다(한국수출입은행,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개요 및 입찰정보」, 2016.4., EDCF 차관의 종류). 당해 연도에 승인·집행되므로 예산 편성 시점에는 사업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미정사업으로 편성된다(재정경제부, 「2027년도 ODA 사업설명자료(대외기금, 정부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75)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p.3, p.7.

17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다자협력 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 사업 개요.

177)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홍보자료), 2026.9., p.43, p.66.

178)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1-나 p.38(OECD DAC 동료검토 2012·2018·2024 요약).

17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3, p.9, Ⅵ 재원배분.

180) JICA, 「JICA extends an ODA loan of INR 22,627 crores for the Mumbai-Ahmedabad High Speed Rail Project (V)」(보도자료), 2023.12.21.(https://www.jica.go.jp/english/overseas/india/information/press/2023/20231221.html, 2026.10. 접속).

건은행(KfW)은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MZ)와 연방환경부를 대신하여 모로코 와르자자트의 누르(Noor) Ⅱ·Ⅲ 태양열발전소에 6억 5,400만유로를 대출하였는데, 이는 프랑스개발청(AFD)·아프리카개발은행·유럽투자은행·EU·세계은행과 함께 조성한 14억유로 규모 협조융자[181]의 일부였다.[182] 두 사례는 대형사업이 여러 해에 걸친 분할 약정이나 여러 공여기관의 협조융자로 재원을 나누어 추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유상차관 사례이지만, 무상원조 대표사업도 여러 해에 걸친 재원 약정과 기관 간 분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분야별 추진전략이 분야마다 대표사업의 유형과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표사업·플래그십·랜드마크 사업과 전략형 프로젝트가 사업 규모, 유·무상 또는 다부처 연계, 국가협력전략상 중점분야와의 연계, 성과 목표 가운데 어떤 요건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정한 기준은 없다.[183]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과 2027년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도 대표사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성과 목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184] 이 상태에서는 전략마다 플래그십 사업이 따로 선정되어 제4차 기본계획이 해소하려는 분절이 명칭만 바뀌어 반복될 수 있고, 국회도 어떤 사업에 대표사업으로서 추가 재원과 관리가 투입되는지 예산안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대표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5년 국별종합진단에서 △△△△(27건)·◇◇◇◇(14건)·○○○○(15건)의 2019~2024년 종료 대표사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성과가 협력국 개발계획·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85] 지표와 연계되지 않은 사례

---

181) 협조융자(co-financing): 하나의 사업에 둘 이상의 공여기관이 함께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EDCF는 주로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 주관하는 사업에 재원 일부를 분담하며, 이때 전문가 고용 등 사업관리는 주관 기관이 수행함.

182) KfW, 「KfW supports energy turnaround in Morocco」(보도자료), 2014.12.22.

183) 국무조정실은 최상위 전략인 종합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대표사업명이나 공통 요건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분야별 추진전략에서 대표사업의 유형과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또한 대표사업은 분야마다 목적·추진형태·성과지표가 달라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18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대표사업·플래그십 사업의 구분이 없다는 판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두 문서를 검토한 결과이다.

185)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UN 총회가 채택한 2030년

(△△△△), 현지 상황 분석이 부족하고 결과(Outcome)·영향(Impact) 지표가 구분되지 않은 사례(◇◇◇◇), 지역·품목 선정의 전략적 타당성이 약하고 기초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었다.[186] 대표사업으로 꼽힌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는 경로와 이를 측정할 지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대형화나 브랜드화만으로 대표 성공사례가 만들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착수 준비와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분야별 추진전략이 제시한 대표사업 유형과 요건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 요건은 유지하되 대표사업 여부와 그 성과 목표를 시행계획과 예산안에 구분 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국가협력전략상 중점분야와의 연계, 기초선조사와 결과 수준 성과지표의 보유, 다년도 재원계획 등)을 정하고, 개별 전략에서 추진하는 플래그십·랜드마크 사업과 예산안의 전략형 프로젝트를 이 기준에 따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재정경제부와 시행기관은 선정된 대표사업을 시행계획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구분 표시하여 사업별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별종합진단 등에서 대표사업 기여분석을 정례화하여 그 결과를 후속 선정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표사업 육성은 사업 대형화에 따른 착수 지연과 집행 부진 위험을 함께 키울 수 있으므로, 선정 단계에서 착수준비도를 확인하는 장치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EDCF 사업은 모두 플래그십 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협력국의 권한과 책임 아래 추진되는 EDCF 사업에서 대표사업을 따로 정하려면 협력국과 협의해야 하고 특정 사업의 선정 사실을 공개하면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87] 따라서 유상원조의 대표사업 구분은 협력국과의 협의 절차를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공개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까지의 국제사회 공동 개발목표로, 빈곤 퇴치·보건·교육·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0/1), 2015.9.25.).

18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제56-3호), 2026.2.26., pp.62~69.

187)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 ODA 사업 추진 지연 실태와 개선조치의 예산 반영 점검

가. 현황

ODA 사업 지연은 2022년 국정감사("신규 ODA사업 중 15% 이상이 시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188] 2023회계연도 결산("집행 1년 차에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189] 2024·2025년도 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신규사업 조정·감액, 초년도 집행 저조 관리방안)에서 반복 지적되었고,[190] 감사원도 2025년 12월 KOICA 정기감사에서 개선을 통보하였다.

(1) 무상원조(KOICA) 사업의 지연 실태

감사원이 2021~2024년 종료평가를 받은 총사업비 800만달러 이상 사업 24개를 분석한 결과, 20개가 사업기간을 1~6년 연장하였고 12개가 총사업비를 38만~190만달러 증액하였다.[191] 진행 중인 80개 사업(2021~2023년 착수)은 예비조사에서 기획조사까지 평균 448일, 기획조사에서 집행계획 수립까지 199일, 집행계획 수립에서 수행자 선정까지 177일이 걸렸다.[192] 착수 전년도에 기획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27개였고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으며, KOICA는 "국회 예산 심의 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담긴 협의의사록 협의·체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였다.[193] 착수연도에 수행자를 선정한 사업은 41개(51.3%)였고, 그중 37개는 하반기에 선정되었다. 착수연도 집행률이 1% 이하인 사업은 18개(22.5%), 50% 이하인 사업은 41개(51.3%)였으며, 착수연도 성과달성률이 0%인 사업은 64개(80.0%)였다.[194]

---

188) 한국국제협력단, 「2023 KOICA 기관 업무보고 자료」, 2023, p.45(부록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번).
189)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27.
190)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9)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191)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4](p.12).
19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9](p.27). 세 단계 합계(824일)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193)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p.27~28.
194)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1](p.32) 및

감사원은 종료사업 24개의 지연 요인을 원인(내부·외부)과 단계(기획·심의, 시행)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내부·기획심의 13개, 내부·시행 6개, 외부·기획심의 12개, 외부·시행 21개였다(한 사업이 여러 유형에 중복 집계됨). 외부·시행 유형에는 코로나19와 협력대상국 정세 불안이 포함되었다.[195] KOICA도 지연 원인을 협력국 요인(협의의사록 지연, 정세불안·정권교체, 인허가), 국제환경 요인(팬데믹, 환율), 구조적 요인(집행 2년 전 발굴과 1년 전 편성에 따른 시차, 입찰 지연)으로 구분한다.[196] 개선 조치로 KOICA는 해외사무소 권한 확대(2019.8.~), 초기단계 평가지표 개선(2024.12.), 형성조사 제도 도입(2025.2.)을 추진하였고,[197] 2025년에는 협의의사록 체결·집행계획 수립 여부를 사업부서 평가지표로 도입하였다.[198]

(2) 무상원조 세부사업의 집행 지표

KOICA 국별협력사업의 결산 집행률(외교부가 KOICA에 교부한 비율)은 2025년 4개 지역과 공공협력 모두 100.0%였으나, KOICA가 실제로 쓴 비율인 실집행률은 아시아·태평양이 2023~2025년 교부현액 대비 93.3%, 97.0%, 93.0%(추경예산 대비 84.9%, 84.6%, 84.8%)로 차이를 보였다. 매년 결산에서는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사업 사이에서 금액을 옮기는 '이·전용 등 과부족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규모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2023년 △16,032백만원, 2024년 △27,717백만원, 2025년 △20,339백만원이었다.[199]

---

pp.32~33.

195)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5](p.16), [별표 1](p.74) 및 본문 pp.16~17.

196)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4번.

197)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6](p.19).

198)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아시아·태평양 국별협력 9)-5) 조치결과.

199)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결산사항.

[KOICA 국별협력·공공협력사업 결산 집행률과 과부족 조정 추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구분	2023	2024	2025
아시아·태평양	집행률(C/B, 교부 기준)	91.7	89.1	100.0
아시아·태평양	이·전용 등 과부족 조정	△16,032	△27,717	△20,339
아프리카	집행률(C/B)	93.5	90.4	100.0
아프리카	이·전용 등 과부족 조정	△20,822	△18,517	△17,316
중남미	집행률(C/B)	84.6	98.2	100.0
중남미	이·전용 등 과부족 조정	△10,813	△9,312	△10,012
중동·중앙아	집행률(C/B)	95.0	84.7	100.0
중동·중앙아	이·전용 등 과부족 조정	△3,163	△14,652	△2,781
공공협력	집행률(C/B)	90.1	84.2	100.0

주: 1) 2025년 추경 감액: 아시아·태평양 △7,000, 아프리카 △9,500
2) '과부족 조정'은 결산 서술상 금액으로 결산표의 예산현액(그해 쓸 수 있는 예산) 기준 이·전용액(예: 아시아·태평양 2023년 △1,944, 2024년 △6,674)과 달라 불용 포함 여부는 결산 자료에 구분되어 있지 않음

자료: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2026.8.2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7월 말 실집행률(추경예산 대비)은 전략적 협력 강화 0.0%, 공공협력 18.5%, 사업관리지원 28.1%, 아시아·태평양 30.4% 등으로 16개 세부사업 평균은 44.6%이다. 16개 세부사업을 실집행률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하위 25%의 경계가 되는 값(하위 사분위 경계값)은 30.9%이고, 같은 방식으로 구한 2025년 17개 세부사업 실집행률의 하위 사분위 경계값은 추경예산 대비 87.7%, 교부현액 대비 93.1%이다.[200)201)]

(3) 유상원조(EDCF) 사업의 지연 실태

EDCF 융자지출의 예산 대비 결산 비율은 2022년 98.9%에서 2025년 90.4%로 낮아졌고, 2025년 승인액과 집행액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이 정한 목표의 각각 71.3%와 86.2%에 그쳤다.[202)203)] 2025년 2월 수립된

200)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실집행내역(2026년 7월 기준).

201)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025년은 KOICA 출연 17개 세부사업, 2026년 7월은 실집행률이 제시된 16개 세부사업 기준이다.

202)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8.28., 2번 표. 결산/예산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03)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2.7., p.5;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이 2025년 목표로 제시한 승인 4.6조원·집행 2.2조원과 비교해도 각각 71.3%, 85.0%(사업비 결산 기준 87.0%) 수준이다.[204]

[EDCF 융자지출 예산 대비 결산, 승인·집행 실적과 중기목표]

(단위: 백만원(예산·결산), 억원(승인·집행),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융자지출 결산/예산	97.5	98.9	92.9	91.0	90.4	-
승인 실적(억원)	26,590	30,843	36,879	49,243	32,812	-
집행 실적(억원)	12,267	12,176	13,961	18,485	18,710	7,205 (6월 말)
'24~'26 중기 집행목표(억원)	-	-	-	20,320	21,694	23,277
'25~'27 중기 집행목표(억원)	-	-	-	-	22,000	-
집행목표 달성률('24~'26 기준, 괄호는 '25~'27 기준)	-	-	92.9	91.0	86.2 (85.0)	-

주: 1) 결산/예산(예산은 추경·변경 반영)과 2024·2025년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023년 92.9%는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원문이 "'23년 목표 대비"로 기재한 수치로, 직전 판본의 2023년 목표 기준임. 2024년 91.0%(18,485/20,320)와 2025년 86.2%(18,710/21,694)는 '24~'26 기준이며,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2025년 집행 목표를 2.2조원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괄호 안 85.0%(18,710/22,000)는 이 기준 달성률이고(한국수출입은행은 이 목표가 사업비 기준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사업비 결산 19,132억원 기준으로는 87.0%),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연도별 집행 목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수록하지 않음
2) 승인 실적과 2021년 집행 실적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당해 연말 환율(계약을 마친 사업은 확정 환율)을 적용하여 다시 제시한 값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2026.8.28.);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2026.8.);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2024.2.7.) Ⅱ.2,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2025.2.27.);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2026.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료」, 2026.8.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04) 기획재정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2025-①호 안건), 2025.2.27., 요약, Ⅰ.2 2024년 EDCF 운용실적, Ⅱ.2 중기 운용 규모, Ⅱ.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Ⅲ.3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2025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나. 분석의견

(1) 실집행률 기준 집행관리 필요

KOICA 국별협력사업은 2025년 결산 집행률이 모두 100.0%였고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대비 93.0~98.3%이나 추경예산 대비로는 79.8~90.1%여서, 교부 기준 결산 집행률로는 예산 대비 실제 집행 수준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는 실집행률과 과부족 조정 내역(이·전용·불용 구분)을 결산 자료에 함께 적고, 월별 실집행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은 외교부가 KOICA에 교부하면 부처 결산에서 그 금액이 곧바로 '집행'으로 처리되지만, KOICA가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쓰는 시점은 협력국 협의와 수행자 선정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 2023·2024년 국별협력 결산 집행률은 84.6~98.2%였다가 2025년 모두 100.0%가 되었으나, 같은 해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대비로 아시아·태평양이 97.0%에서 93.0%로, 중동·중앙아가 97.7%에서 94.2%로 낮아지는 등 결산 집행률처럼 높아지지 않았다.[205]

결산 집행률은 외교부가 KOICA에 교부한 금액(집행액)을 그해 쓸 수 있는 예산(예산현액)으로 나눈 값이다. 2025년에는 결산 과정에서 사업 간 과부족 조정을 거쳐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을 실제 교부액에 맞추었고, 그 결과 17개 세부사업 중 16개에서 분자와 분모가 같아져 집행률이 100.0%가 되었고 결산표상 불용액도 0으로 표시되었다. 예컨대 예산현액이 100이고 실제 교부액이 90이면 원래 집행률은 90%이지만, 결산 과정에서 예산현액을 90으로 맞추면 집행률은 100%가 된다.[206] 즉 2025년 결산 집행률이 높아진 것은 KOICA가 현장에서 돈을 더 빨리 쓰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산상 예산현액을 교부액에 맞춘 결과로 보이며, 실제 집행 수준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93.0~98.3%)과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79.8~90.1%)을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과부족 조정액은 결산표의 예산현액 기준 이·전용액보다 훨씬 커서 실질적으로 쓰지 못한 금액이 조정 과정에서 다른 사

---

205)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결산사항.

20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다. 1)·2) 결산표 및 결산 서술. 서술상 과부족 조정액이 교부·집행액과 추경예산의 차이와 일치한다는 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조한 결과이다.

업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결산 자료에는 그 구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KOICA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개도국개발협력사업(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출연)은 2023~2025년 교부 기준 집행률이 모두 100.0%였으나, 2025년 실집행률은 같은 자료 안에서도 작성지침상 기준이 달라 89.4%(기능별 내역표, 부처 기준 실집행액)와 96.6%(실집행내역표, 재단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집행 포함)로 달리 적혀 있고, 재단의 연말 이월액은 2022~2025년 매년 4,460~6,824백만원이었다.[207] 고용노동부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의 출연분 실집행률은 2023~2025년 38.2%, 112.8%, 64.1%였다(2024년은 전년도 이월액 집행분이 분자에 포함되어 100%를 넘음).[208]

기상청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지원은 부처 결산 집행률이 99.5~99.9%였으나 대행기관 실집행률은 당해 연도 교부액을 분모로 한 사업설명자료 기준 104.9%, 85.4%, 88.6%,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을 분모로 한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기준 96.5%, 84.1%, 78.1%로 산정 방식에 따라 달랐다.[209] 문화체육관광부 해외공공도서관 조성은 결산 집행률이 96.8~98.5%였으나 성과평가 최종평가서는 2022·2023년 실집행률을 0.8%, 6.2%로 적은 반면, 사업설명자료 실집행내역표는 전년도 이월액 집행분을 분자에 넣어 2023~2025년을 222.8%, 77.2%, 101.1%로 적었다.[21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는 2026년 7월 말 출연금 4,728백만원이 모두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은 725백만원(15.3%)이었다.[211] 반면 행정안전부

---

207)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 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내역, 다. 결산표·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주요 결산사항.

208)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9) 외부지적사항, 다.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2024년 실집행률은 같은 표에 88.7%로 적혀 있으나 표의 집행액(5,674백만원)을 예산액(5,031백만원)으로 나누면 112.8%이며, 고용노동부도 112.8%로 정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09) 기상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다. 결산표·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기상청,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2026., Ⅳ②; 同,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평가의견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2026., 3-1.

210)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다. 결산표·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평가의견서: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026., 3-1·3-4; 同,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026., 〈표 3-4〉.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결산 집행률(99.2~99.9%)과 보조 실집행률(92.6~93.0%)의 차이가 7%p 안팎으로 안정적이었다.[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은 △△△△의 정세 불안으로 2024년 실집행률이 78.2%였고, 2026년 7월 말 시행기관 실집행률은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 36.6%,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19.1%였다.[213]

사업 계약이 여러 해에 걸치므로 두 집행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2025년 실집행률을 교부현액 대비로 보면 국별협력 4개 세부사업은 93.0~98.3%로 아시아·태평양(93.0%)만 17개 세부사업의 하위 사분위 경계값(93.1%)을 밑돌았다. 다만 사업설명자료 실집행내역표의 산식대로 추경예산 대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84.8%), 아프리카(85.2%), 중남미(79.8%)가 경계값(87.7%)보다 낮은데, 이는 예산액과 교부액의 차이가 결산에서 과부족 조정으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2026년 7월 말에는 전략적 협력 강화, 공공협력, 사업관리지원, 아시아·태평양이 하위 사분위 경계값(30.9%) 아래에 있다.[214] 다만 7월 말 실집행률은 연중 집행 시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야 부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시행기관을 거치는 ODA 사업에서는 교부 기준 집행률만으로 현장의 집행 속도와 시행기관에 쌓이는 이월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집행률의 산정 기준(전년도 이월액 집행분 포함 여부, 분모)도 자료마다 다르다.

착수 지연이 이월과 다음 연도 편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내 '△△△△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2023.12.~2027.12.,

---

211)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다. 결산표·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212)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다. 결산표·실집행내역; 행정안전부,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Ⅳ.

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다. 결산표·실집행내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다. 결산표·2)·실집행내역.

214)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025년은 KOICA 출연 17개 세부사업, 2026년 7월은 실집행률이 제시된 16개 세부사업 기준이다.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실집행내역표의 집행액을 교부현액으로 나눈 값(아시아·태평양 177,907/191,382, 아프리카 140,452/148,054, 중남미 42,266/43,001, 중동·중앙아 57,765/61,354 백만원)으로, 외교부도 이 값으로 정정을 요청하였다(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총 3,866백만원)은 △△△△의 정권교체와 행정 지연으로 협의의사록 체결이 11개월 늦어지고 사업관리 용역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었다. 이 때문에 2023년 예산(805백만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68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 예산(540백만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잡혀 437백만원이 집행되는 등 각 연도 예산의 집행이 이듬해 이후로 밀렸다. 부처는 2023·2024년 예산 집행률이 낮아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고, 같은 부처의 2026년 9월 제출자료에는 2024년 5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2025년 예산 '감축' 결과를 받은 것으로도 적혀 있다. 이후 2026년 486백만원에 이어 2027년 정부안에는 관광안내소 건립 등 잔여 사업비 2,035백만원이 한꺼번에 반영되었다.[215] 이처럼 착수가 늦어진 사업은 잔여 사업비가 특정 연도에 몰려 편성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는 ① 결산 보고 시 교부 기준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병기하고, ② 과부족 조정액을 이·전용, 불용, 기타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③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세부사업별 월별 실집행 실적(당해 연도와 직전 2개년 동월)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도 과부족 조정 내역 공개와 월별 실집행 실적 포함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216]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는 이미 출연·보조사업의 실집행내역표가 있으나, 작성 서식에 분모와 전년도 이월액 집행분의 처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같은 사업의 실집행률이 자료마다 다르게 적히고 있다. 사업설명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침에 따라 소관 부처가 작성하므로,[217] 소관 부처는 출연·보조방식 ODA 사업의 실집행률을 적을 때 분모와 이월액 집행분의 처리 기준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분모는 시행기관의 교부현액(당해 연도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으로 하고 분자는 당해 연도 교부분 집행액과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을 나누어 적으면, 같은 사업의 실집행률이 산정 기준에 따라 한 자릿수에서 200%대까지 달라지

215) 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설명자료: △△△△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추진경과·소요예산. 2024년 배정분은 2026년 10~11월 기성검사를 거쳐 추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연장평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13).

216)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17) 기획예산처,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의 2023년 실집행률은 성과평가 최종평가서 기준 6.2%, 제출자료 실집행내역표 기준 222.8%로 적혀 있으나, 교부현액을 분모로 하면 68.7%이다.[218] 특히 2027년 예산이 90.3% 늘어나고 2026년 7월 말 실집행률이 18.5%인 공공협력사업은 월별 실집행 실적을 우선 점검하고, 착수가 늦어진 사업은 실집행 실적과 함께 연차별 공정 계획을 확인하여 잔여 사업비가 특정 연도에 몰려 편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감사 지적 이행 예산반영 필요

신규사업 착수연도 집행 부진은 2022년 이후 국회와 감사원이 반복 지적해 왔으나, 감사원(2025) 통보 3건의 이행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KOICA는 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 실적과 신규사업별 협의의사록·수행자 선정 예정 시기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하고, 외교부는 착수 준비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편성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2025년 12월 KOICA 정기감사에서 신규사업의 착수 지연을 줄이도록 ① 협력대상국이 희망하면 우리 정부의 심의가 끝난 뒤 사업을 추진한다는 단서를 붙인 조건부 협의의사록을 착수연도 이전에 체결하는 등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② 해외사무소 평가에 수행자 선정 시점을 반영하며, ③ 요청서 검토위원회를 상시 개최하도록 통보하였다.[219]

KOICA는 2027년 신규사업 11건(7,597백만원)을 "착수 연차로서 기획조사, 협의의사록(R/D) 체결 등 착수 소요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인도 조선해양 인재양성(2,933백만원)과 에티오피아 도시기후회복력(2,162백만원) 2건이 편성액의 67.1%를 차지한다.[220] 외교부와 KOICA는 통보 3건의 이행을 2026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221] 그 내용인 조건

---

218)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기초조사보고서」(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2023년 예산 780백만원, 전년도 이월 1,749백만원, 교부현액 2,529백만원, 집행 1,738백만원.

219)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1-가·1-나 조치할 사항(p.37 등).

220)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1-가·1-나 조치할 사항(p.37 등);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1번.

221)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부 협의의사록 체결 건수, 해외사무소 평가에 수행자 선정 시점을 반영했는지, 요청서 검토위원회를 상시 개최하는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신규사업별 협의의사록·수행자 선정 예정 시기도 예산안에 제시되지 않아, 사업별 편성액이 착수 준비 상황에 맞는지를 예산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회 지적이 2022년 이후 반복된 점은 개선 조치가 편성 관행의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행 실적이 중요한 것은 지연의 원인이 외부 요인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4유형 분류에서 내부·기획심의(13개)와 외부·기획심의(12개) 지연도 적지 않아,[222] 사업 형성·심의 단계의 절차도 지연과 관련이 있었다. △△△△ 종료사업 3건도 계약 파기, 정권교체, 설계·조사 부실, 대지진이 함께 작용한 사례였다.[223] 핵심 문제는 착수 전 준비 단계가 길고, 그 기간이 예산 편성 주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조사에서 수행자 선정까지 평균 824일이 걸리고[224] 감사원이 점검한 진행 중 사업 80개 중 착수 전년도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사업이 없어(KOICA는 착수 전년도 체결을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225] 착수연도 예산이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편성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로 착수연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51.3%, 착수연도 성과달성률이 0%인 사업이 80.0%였다.[226]

따라서 KOICA는 ① 통보사항별 이행 결과와 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 실적을 예산안 제출 시 함께 공개하고, ② 신규사업 설명자료에 협의의사록 체결·수행자 선정 예정 시기와 착수연도 소요 산출근거를 명시하며, ③ 착수연도 집행률과 수행자 선정 시점을 사업부서·해외사무소 성과지표에 반영한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착수준비도를 신규사업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착수연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차년도 편성 시 이월·불용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2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5](p.16), [별표 1](p.74) 및 본문 pp.16~17.
223)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4](p.12), [별표 1](p.74) 및 본문 pp.13~17.
224)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9](p.27). 세 단계 합계(824일)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25)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p.27~28.
226)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1](p.32) 및 pp.32~33.

(3) EDCF 장기지연사업 정비 필요

EDCF 사업은 승인에서 본구매 계약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승인 후 5년 누적 집행률이 23.4%에 그친다.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를 검토한다는 방침만 두고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취소한 사업 외의 장기지연사업도 승인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승인 한도와 집행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 목표의 달성 실적을 공개하며, 경과기간·진척률·예외 사유 등 승인취소 기준과 확보 재원의 재배분 절차를 명문화하여 약정 대비 미집행 잔액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EDCF 사업은 정부지원방침 결정(승인) 뒤 차관계약(L/A) 체결·발효, 컨설턴트 고용, 본구매 계약을 거쳐 집행된다.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승인에서 본구매 계약까지 평균 48개월(차관계약 체결·발효 12개월, 컨설턴트 고용 14개월, 본구매 계약 22개월)이 걸리고, 승인 후 5년이 지나도 누적 집행률은 23.4%에 머문다.[227]

사업 지연은 승인 철회와 계획액 감액으로도 이어진다. 2026년 4월 30일 주관기관(재정경제부)은 △△△△ 2건(디폴트 선언 등 장기지연)과 다른 2개국 2건(재원조달 방침 변경)의 철회를 승인하였고, 이 철회는 7월 국개위 분기 변경 안건으로 의결되었다. 2025년에는 절차가 지연된 유상사업 179개의 계획액이 감액되었다.[228] 수은은 지연 원인으로 협력국 행정절차와 정세 변화(전쟁, 지진, 군사쿠데타)를 들었다.[229] 연계사업에서도 EDCF ○○○○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 사업(1,114.12억원)은 2020~2025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 11월에야 시공에 착수하였다.[230]

---

227)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p.5(연차별 누적 집행률), p.9(단계별 소요기간).

228) 관계부처 합동, 「'26년 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2분기)」(제58-3호), 2026.7.23., p.1 및 붙임; 「'25년도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제56-4호), 2026.2.26., p.2. 주관기관 철회 승인 4건의 승인액은 △△△△ 터널 2,929.28억원, △△△△ 의료기자재 1,177.6억원, 그 밖의 2개국 교육기자재 2,132.12억원·ITS 2,150.98억원이다.

229)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4번.

230)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별표 3] 연번1(p.80).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2021년 2월~2025년 4월 승인 92개 사업(승인액 122.4억달러)의 승인·약정·발효·최초집행 일자와 연도 말 미집행 잔액을 보면, 2025년 말 미집행 잔액 14조 1,798억원 가운데 제출 시점까지 첫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34개 사업의 몫이 7조 8,053억원(55.0%)이고, 2022년까지 승인되었는데도 첫 집행이 없는 사업도 11개(1조 6,399억원)이다. 이 자료는 2021년 이후 승인분만 담고 있어 잔액 합계의 증가는 승인이 쌓인 결과이므로, 지연의 정도는 첫 집행이 없는 사업의 비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231] 한국수출입은행은 승인 후 1년 이상 차관계약을 맺지 못한 장기지연사업으로 8개 사업(승인액 13.3억달러)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1개 사업이 승인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이 8개 사업에 합계 5,541백만원이 편성되었고(1개 사업의 보충융자 포함), 이와 별도로 제시된 차관계약 지연사업 2개는 편성액이 없으며 이 가운데 1개만 승인취소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었다.[232]

유상원조는 돈을 빌리는 협력국이 인허가·차관계약(L/A)·비준 절차를 주도하고,[233] 협력국의 정세와 채무 여건의 영향도 크다. 2026년에 철회된 △△△△ 2건과 2025년에 철회된 유상사업 3건이 그 예이다.[234][235] 따라서 지연을 완전히 막기보다, 지연된 사업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고 그 재원을 다른 사업에 돌리는지가 관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연 관리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48개월을 33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의 달성 실적도 공개되지 않았다.[236] 결산/예산 비율 하락과 중기 집행목표 미달이[237][238] 장기지연사업 누적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

231) 한국수출입은행, 「[별첨17] 미집행 잔액 추이」(「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17번 별도 제출), 2026.10.8. 합계와 사업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최초 집행일이 비어 있는 사업 기준).

232)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4번(차관계약 지연·승인취소 검토 대상사업의 편성내역)·17번(장기지연사업 목록과 구조조정 기준).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33)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4번.

234) 관계부처 합동, 「'26년 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2분기)」(제58-3호), 2026.7.23., p.1 및 붙임; 「'25년도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제56-4호), 2026.2.26., p.2. 주관기관 철회 승인 4건의 승인액은 △△△△ 터널 2,929.28억원, △△△△ 의료기자재 1,177.6억원, 그 밖의 2개국 교육기자재 2,132.12억원·ITS 2,150.98억원이다.

235) 관계부처 합동, 「'25년도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제56-4호), 2026.2.26., pp.1~2.

236)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2.7., p.5(연차별 누적 집행률), p.9(단계별 소요기간).

237)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8.28., 2번 표. 결산/예산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026년 4월 13일 의결된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기존사업 합리화' 과제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진 사업과 협력국 사정으로 장기 지연된 사업의 승인취소를 검토하고, 확보 재원을 AI·문화, 공급망 등에 재투자하며 취소 사업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지연 우려가 높은 중점협력국에는 사업관리자문단(PMA)을 계속 파견하고 집행 장애요인을 수시 점검하기로 하였다.[239] 그러나 원문에는 판단 기준(경과기간, 진척률, 예외 사유)과 재배분 절차가 없고,[240]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시한 구조조정 기준도 같은 원칙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며,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 저하'는 지연 관리와 성격이 다른 기준이어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 기준이 없으면 오랫동안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승인 한도를 계속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계나 채무재조정 협상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기간 기준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2조 등에 따라 협력국의 요청이 있어야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차관계약을 바탕으로 협력국 정부와 먼저 협의해야 하며, 승인 후 1년 안에 차관계약을 맺지 못한 사업은 내규에 따라 특별관리사업으로 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241] 앞에서 본 지하수 관개 연계사업처럼[242] 유상사업의 지연은 연계된 무상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한정된 승인 한도 안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①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 목표의 연도별 달성 실적을 공개하고, ② 승인취소 방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취소 사업 공개 계획을 이행하며, ③ 연도 말 약정 대비 미집행 잔액, 장기지연 사업 현황, 승인취소·재배분 실적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승인취소 기준을 정할 때에는 외교관계·채무재조정 협상 등을 고려한 예외 사유와 판단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 저하' 기준의 적용 범위를 밝히며, 연계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유상사업의 일정 위험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238)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2.7., p.5;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달성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39)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3 개발효과성 제고(p.9).
240)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1) 기존사업 합리화(p.10). 원문에는 승인취소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대상 사업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41)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42)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별표 3] 연번 1(p.80).

또한 승인에서 본구매 계약까지는 L/A 체결·발효(12개월), 컨설턴트 고용(14개월), 본구매 계약(22개월) 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긴 본구매 단계의 단축 목표는 약 1.5개월(22개월→20.5개월)에 그친다.[243] 현재 EDCF 조달대행(입찰서류 작성 등 실무를 수은이 대신하는 것)은 협력국이 요청할 때 수은이 발주하는 타당성조사와 재난상황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타당성조사는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과 예상 사업비 산출이 목적이고, 상세설계와 입찰 준비는 심사·승인으로 사업비와 사업 범위가 확정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조달대행을 승인 이후 단계의 상세설계·입찰서류 준비 지원으로 넓히는 방안을 본구매 단계의 단축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43)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2.7., p.9(단계별 소요기간과 단축 목표).

4 EDCF 미수납 원리금 추이와 재정건전성 영향 점검

가. 현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에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 재원으로, 2026년 6월 말까지 60개국 539개 사업에 누계 41.1조원을 승인하였다. 차관은 금리 0.1~2.5%(2026년 8월 개정 전 0.01~2.5%), 상환기간 12~40년의 양허 조건이므로[244] 협력국의 상환능력이 약해지면 상환기일이 지난 원리금이 수납되지 않는 미수납이 생기고, 이는 기금의 회수재원과 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절의 미수납 원리금은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수납되지 않은 원리금으로, 현재 연체분과 채무재조정에 따른 유예분을 포함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재조정에 따른 상환유예분은 계약 변경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된 정상채권이어서 결산상 미수납액(납입고지한 징수결정액 가운데 해당 연도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나,[245] 이 절은 연체분과 함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이 미뤄진 금액의 규모도 살피기 위해 두 금액을 함께 '미수납 원리금'으로 부르며, 그 범위는 결산상 미수납액과 다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EDCF 차관에서 새로 발생한 미수납 원리금은 모두 1,368.1억원이며, 상위 3개국이 96.8%를 차지한다.[246]

---

244)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별첨1]), 2026.8., 2~4항(지원조건·지원현황). 누계 승인액은 2026년 6월 말 환율 적용.

245)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결산상 미수납액의 정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3권(회계·기금용)에 따른 것이다.

246)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2021~2025년 연도 말 EDCF 미수납 원리금 현황). 국가별 합계·누계와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EDCF 차관사업 미수납 원리금 발생액(2021~2025년)]

(단위: 억원, %)

구분	2021~2024년	2025년	누계	비중
상위 3개국	974.6	350.0	1,324.6	96.8
기타 4개국	0.2	43.4	43.6	3.2
계(7개국)	974.7	393.4	1,368.1	100.0

주: 1) 연도별 값은 그해 새로 발생한 미수납 원리금(연체 원금과 연체 이자)으로 봄
2) 합계·누계와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이며, 2021~2024년 계는 연도별 반올림값의 합으로 반올림 때문에 구분별 값의 합과 맞지 않을 수 있음
3) 상위 3개국 중 2개국은 2026년 수정 차관계약 체결로 상환 유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2026.10.8.) 3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로 보면 미수납 원리금(연체 원금과 연체 이자)은 2021년 23.3억원, 2022년 250.2억원, 2023년 357.6억원, 2024년 343.6억원, 2025년 393.4억원이고, 2021~2024년 합계는 974.7억원이다. 자료명은 '연도 말 현황'이나 같은 사업의 원금이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절은 각 연도의 값을 그해 새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았다. 2025년 발생분 393.4억원은 6개국 43개 사업에서 나왔고, 이 가운데 3개국은 2025년에 새로 포함되었다.[247] 미수납이 집중된 3개국 가운데 2개국은 2026년에 파리클럽 합의에 따른 수정 차관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시한 2026년 8월 말 연체금액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2개국의 238.0억원이다.[248]

미수납이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경로를 보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상 기금 재원에는 정부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수금이 포함되고(제4조), 결손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다(제14조제2항).[249] 2027년 정부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21.9%, 공자기금 차입은 16.2% 줄고 융자원금 회수는 늘었다.[250] 반면 공자기금 이자상환액은 2021년 7,653백만

247)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2021~2025년 연도 말 EDCF 미수납 원리금 현황). 연도별 합계와 누계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48)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EDCF 파리클럽 관련 사업현황 답변자료」, 2026.10.8., 2번;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평가 관련 추가요청(2차) 답변자료」, 2026.10.13., 1번(EDCF 연체 현황, 2026년 8월 말 기준).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4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제14조제2항(결손의 보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붙임1 법령 원문 pp.1~3.

250)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2·3·4번 표; 同,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5번 표(증감사유).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원에서 2025년 56,340백만원으로 7.4배가 되었고, 2027년 정부안은 96,292백만원(+16.4%)이다. 이를 대출 이자수입(기타민간이자수입)으로 나눈 '대출이자수입 대비 차입이자 비율'은 2025년 결산에 101.9%로 100%를 넘었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을 분모에 더하면 100%를 넘는 시점이 2026년 예산(106.0%)으로 늦어진다.[251] EDCF 재원의 절반 이상(2025년 결산 수입의 56.1%)은 무이자 일반회계 전입금이므로, 이 비율은 기금 전체의 수지가 아니라 차입 재원의 이자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EDCF 재정 전이경로 측정지표(2024~2027년)]

(단위: 백만원, %)

지표	2024	2025	2026	2027안
일반회계전입(정부출연)	1,218,749	1,237,379	1,334,339	1,042,539
기금예수금(공자기금 차입)	456,249	480,000	627,924	526,200
공자기금 이자상환	39,405	56,340	82,755	96,292
공자기금 원금상환	-	12,000	272,000	-
융자원금 회수	243,373	423,899	309,274	336,599
대출 이자수입(기타민간이자수입)	50,923	55,277	73,633	75,642
기타재산이자수입	9,190	10,133	4,436	10,133
대출이자수입 대비 차입이자 비율(%)	77.4	101.9	112.4	127.3
재산이자 포함 시 비율(%)	65.6	86.1	106.0	112.3
대손충당금	미적립	미적립	미적립	미적립

주: 1) 2024·2025년 결산, 2026년 국회 확정, 2027년 정부안 2) 비율 = 공자기금 이자상환 ÷ 기타민간이자수입(재산이자 포함 시 + 기타재산이자수입) × 100(국회예산정책처 산출). 무이자 재원과 수수료 등은 반영하지 않아 기금 전체 수지 지표가 아님 3) 한국수출입은행은 1987년 EDCF 설립 이후 채무를 면제하여 채권을 상각한 사례가 없어 과거 대손율에 근거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채무재조정에 따른 가치 변동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2026.8.28.) 2·3·4번 표,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2026.10.8.) 3번, 「국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평가 관련 추가요청(2차) 답변자료」(2026.10.13.) 2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51)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3·4번 표(수입지출총괄표 자체수입의 기타민간이자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4년 9,190백만원, 2025년 10,133백만원, 2026년 4,436백만원, 2027년 정부안 10,133백만원이며,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나. 분석의견

(1) 미수납액 관리·공시 강화 필요

EDCF 미수납 원리금은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기준 2021~2025년 발생 누계가 1,368.1억원이고 상위 3개국이 96.8%를 차지하는 등 일부 채무위기국에 집중되어 있다. 기금 결산보고서에는 결산상 미수납액이 공개되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된 금액은 미수납액에서 빠지므로 연체분과 재조정 유예분을 구분한 규모는 드러나지 않아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연도 말 기준 미수납 원리금을 연체분과 재조정 유예분으로 나누어 국가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로 충당금 반영액과 함께 기금 결산·운용계획 부속자료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EDCF 미수납 원리금은 협력국이 차관계약에 따른 상환기일까지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말하며, 이 절에서는 협력국이 연체한 금액과 파리클럽 등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이 미뤄진 금액을 함께 포함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연도별 미수납 원리금은 2021년 23.3억원, 2022년 250.2억원, 2023년 357.6억원, 2024년 343.6억원, 2025년 393.4억원으로, 2021~2025년 발생 누계는 1,368.1억원이다. 상위 3개국이 96.8%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이 밖의 3개국에서도 새로 발생하였다.[252]

먼저 채무재조정 유예분을 포함한 미수납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기금 결산보고서에는 최근 5개년 미수납액 규모와 해당 연도 원금·이자 미수납액이 공개된다.[253] 그러나 이는 결산상 미수납액이어서 채무재조정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된 금액은 빠지므로, 재조정 유예분을 포함한 연도별 발생액과 연체분·재조정 유예분의 구분은 국회 요구에 따른 제출자료로만 확인된다.[254]

다음으로 채무위기국 채권에 대한 충당금 반영 규모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손충당금은 과거 대손율을 근거로 설정해야 하나, 1987년

---

252)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2021~2025년 연도 말 EDCF 미수납 원리금 현황). 연도별 값은 그해 새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았으며, 누계와 국가별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53)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54)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同,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同, 「EDCF 설명자료」, 2026.8.

EDCF 설립 이후 협력국의 지급능력 약화로 채무재조정을 하면서 채무를 면제하여 채권을 상각한 사례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차주가 개도국 중앙정부·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이거나 그 지급보증이 있어 국가가 존속하는 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과, 매년 받는 회계법인 감사에서도 대손충당금 미설정이 지적된 적이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255] 그 대신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금리의 융자금은 원금에서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채무재조정으로 상환 조건이 바뀌면 이를 충당금 산정에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256]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결산보고서에 공시되나, 과거에 채무를 면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만으로 향후 회수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채무재조정분에 대한 충당금을 따로 산출할 수 없고 재조정 건별 현재가치 차이도 결산서에 수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채무위기국 채권의 손실이 회계상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여전히 외부에서 점검하기 어렵다.

미수납 규모만으로는 상환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 예산정책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DCF가 차관을 공여한 59개국 중 2024년 9월 말 기준 23개국이 무디스(Moody's) 기준 신용등급 C등급 이하이고, 이들 국가에 대한 누적 공여(승인) 규모는 11조 9,031억원으로 전체 누적 공여(33조 6,335억원)의 약 35%이다.[257] 이는 대출잔액이 아닌 누적 공여 규모이나 위험에 노출된 범위를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승인 심사 때 IMF·세계은행의 채무지속가능성 체계로 협력국의 외채상환 능력을 검토하였고, 채무위기는 승인 이후 협력국의 대내외 요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연체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내부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즉시 집행을 중단하는 등 관리하고 파리클럽 참여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채무위기가 생기면 연체된 금액뿐 아니라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채권의 상환 일정도 함께 바뀔 수 있다.

---

255)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미수납 원리금 현황,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56)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평가 관련 추가요청(2차) 답변자료」, 2026.10.13., 2번. 근거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와 「융자 회계처리지침」을 들었다.

257) 한국수출입은행, 「과거 언론기사 사실관계 확인 요청 답변」(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21. 원화 금액은 2024년 9월 말 매도율(1,332.79원/달러) 기준(본구매 계약을 마친 사업은 승인일 환율)이며 달러 기준으로는 270.31억달러 중 89.31억달러(약 33%)이다. 같은 자료는 EDCF가 1987년 이후 59개국 536개 사업을 지원하였다고 적었다.

따라서 상환위험은 기금 전체의 연체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험국에 대한 채권 전체를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지원 결정과 상환위험 평가의 연계도 드러나지 않는다.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미수납 원리금이 발생한 한 협력국의 기본약정(F/A: 협력국별로 일정 기간 지원할 차관 한도를 정하는 약정) 한도를 10억달러 '현행 유지'로 적었으나,[258] 상환이 밀린 협력국의 한도를 유지하거나 조정할 때 어떤 상환능력 평가를 거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신규 중기운용방향의 외채 지속가능성 모니터링[259]도 그 결과를 승인·한도 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협력국과의 기본약정 확대 체결(2024년 6월)은 채무재조정 협의가 마무리되던 시점(2024년 1월 금리 등 주요 조건 합의, 6월 양해각서 문안 확정)에 협력국 정부의 공식 요청(2024년 4월)을 받아 결정한 것이며, 기본약정은 개별 차관계약을 맺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도 약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미수납 구분 공시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납액은 이미 공개하고 있고 협력국별 채권·연체 내역을 공개하면 협력국의 재정·상환 정보가 드러나 국가 간 신뢰를 해칠 수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프랑스개발청(AFD)·독일재건은행(KfW)·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양자 원조기관도 연체분과 채무재조정분의 충당금을 나누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260]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시는 협력국을 구분하지 않은 합계로 하고, 채무재조정 유예분은 결산상 미수납액과 구분하여 상환기일이 조정된 채권임을 밝혀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충당금도 채권별 내역이 아니라 채무재조정·연체 채권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계로 밝히면 협력국별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수납'을 연체분과 채무재조정 유예분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연도 말 기준 시계열과 채무위기국 대출잔액, 충당금 가운데 채무재조정·연체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로 기금 결

---

258)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부록(기본약정 현황).

259)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3)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260) 재정경제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산보고서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상환유예국이나 재조정 진행국의 한도 확대·신규 승인 시에는 외채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결과와 기존 채권 재조정 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자료에 명시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하는 충당금은 채권을 상환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잔액과 적립률을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채무재조정 유예 채권의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261]

(2) 채무재조정 손실 측정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재조정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결산에 반영한다고 설명하나, 원금 감면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늘고 금리가 낮아지면 회수액의 현재가치는 줄어들며 재조정 채권은 연체 통계에서도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국협의회 합의와 차관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에서 재조정 채권 전체의 조건 변경 전후 현재가치 차이와 수정 차관계약(수정 L/A) 이후 수납 실적을 국가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로 기금 결산 부속서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재조정은 주로 파리클럽(Paris Club)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파리클럽은 1956년 결성된 공적 채권국의 비공식 협의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대해 채권국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1일 21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262] △△△△ 채무재조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클럽 회원국과 비회원 채권국 2개국으로 구성된 공적채권국위원회(OCC)가 IMF 확대금융(EFF) 프로그램의 조건에 맞추어 2023년 11월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2024년 6월 26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263]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파리클럽 가입 이후 16개국과 채무재조정에 따른 수정 차관계약[264]을 체결하였다. 이 가운데 14개국은 2020년 11월부터

---

261)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다. EDCF 채권은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기금 자산이므로 이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상환 상태별 구분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62) Paris Club,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Paris Club and welcoming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21st member」, 2016.7.1.

263) Paris Club, 「Statement: Agreement o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Official Creditor Committee and △△△△ on a Debt Restructuring」, 2024.6.26., Background notes 1~3.

264) 수정 L/A(수정 차관계약): 채무재조정 합의 내용에 따라 기존 차관계약(L/A, Loan Agreement)의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를 계기로 파리클럽과 G20이 함께 채택한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에 따라, 2개국은 2026년에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채권국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채무재조정 내용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65]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재조정으로 원금을 탕감하지 않으므로 명목상 원금 손실은 없고, 상환기간 연장 등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 하락분은 「융자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산정하여 자산 장부가액에서 빼고 해당 연도 결산에 융자보조비용(회계상 손실)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266] 파리클럽의 표준 조건은 최빈국에 대해서도 비ODA 채권만 감면하고 ODA 채권은 원래 금리 이하로 장기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어,[267] EDCF와 같은 ODA 채권은 명목 원리금이 감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목 손실이 없다는 것과 재정적 손실이 없다는 것은 같지 않다. 상환일정이 수십 년 뒤로 미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명목 원리금이 그대로여도 회수액의 현재가치는 줄어들고, 그 기간 기금은 회수재원 대신 정부출연이나 공자기금 차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재조정된 채권은 연체에서 재조정 유예로 분류가 바뀌므로, 재조정이 이루어질수록 연체 통계와 결산상 미수납액의 규모는 오히려 작아진다. 실제로 2021~2025년 미수납 원리금 발생 누계(1,368.1억원)의 80.3%(1,098.5억원)를 차지한 2개국과 수정 차관계약을 맺은 뒤, 2026년 8월 말 연체 금액은 다른 2개국의 238.0억원만 남았다.[268] 연체 통계만으로 손실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상환기간·거치기간·금리 등 상환 조건을 바꾸기 위해 EDCF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차주국이 새로 체결하는 변경 계약을 말한다. 수정 L/A가 체결되면 종전 상환 일정에 따라 연체되었던 원리금은 바뀐 상환 일정에 따라 관리된다.

265)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EDCF 파리클럽 관련 사업현황 답변자료」, 2026.10.8., 2번(우리나라 파리클럽 채무유예사업 이력, 2016~2026년).

266) 한국수출입은행 의견(국회예산정책처 협의, 2026.10.);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 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267) Paris Club, 「Standard terms of treatment」(https://clubdeparis.org, 검색일 2026.10.2.). Classic·Houston 조건은 상환 일정 재조정, Naples 조건은 비ODA 채권의 50~67%, Cologne 조건은 비ODA 채권의 90% 이상 감면이며, ODA 채권은 Houston 조건에서 최장 20년(거치 10년), Cologne 조건에서 40년(거치 16년)으로 재조정함.

268)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평가 관련 추가요청(2차) 답변자료」, 2026.10.13., 1번(EDCF 연체 현황, 2026년 8월 말 기준); 같은 기관,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 합계와 2개국 누계·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조정 건별 현재가치 차이와 수납 실적은 협력국과 맺은 차관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협력국의 재정과 상환 상황을 드러내어 국가 간 신뢰를 해치거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결산서에 수록하기 어렵고, 채무재조정 관련 양해각서 등은 채권국협의회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69]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건별 정보 대신 채무재조정 채권 전체의 원리금 잔액과 충당금 변동액을 합계로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부도 채무재조정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 변동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와 「융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융자보조비용으로 해당 연도 결산에 반영되고 있고, 기금 설립 이후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권을 상각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연체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손실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다.[270] 다만 현재 연체 규모가 작은 것은 재조정 채권이 연체 통계에서 빠진 결과이기도 하고, 결산에 반영된 금액 가운데 재조정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시 자료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합계 기준 공개는 현행 회계처리의 결과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재조정 채권의 대상 원리금, 변경 전후의 금리·만기,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변동액, 수정 L/A 이후 약정 대비 수납 실적을 차관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와 채권국협의회 합의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가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 등으로 기금 결산 부속서류에 공개하여 '손실 없음'이라는 판단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공시는 미수납 공시, 재정 전이 경로 관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69)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평가 관련 추가요청(2차) 답변자료」, 2026.10.13., 2번.
270) 재정경제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3) 재정 전이경로 관리 필요

EDCF 미수납은 회수재원 감소에 따른 정부출연·공자기금 차입 증가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상 결손 보전 규정을 통해 정부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액과 연도별 차입금 상환 계획은 EDCF 재무제표에 공시되나, 채무재조정·연체에 따른 회수 일정 변경분과 그 충당금 반영액 등 미수납의 영향을 따로 보여주는 지표는 제시되지 않아 영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채무재조정·연체에 따른 연도별 회수 계획 변경분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 영향은 두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수재원 경로(a)는 원리금 회수가 줄어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이나 차입이 늘어나는 경로이다. 예컨대 채무재조정을 한 2개국에서 2022~2025년 계획보다 1,082억원이 덜 회수되었으므로, 같은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려면 그만큼을 출연이나 차입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 자산가치 경로(b)는 대출채권의 가치가 떨어져 공자기금 차입금을 갚을 실질 재원이 약해지고, 결손이 쌓이면 결국 정부 예산으로 메우게 되는 경로이다.[271] "미수납액이 국가채무를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어느 경로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DCF 관련 채무가 대응자산(대출채권)이 있어 별도 재원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미수납이 곧바로 국가채무를 늘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로 (a)에서는 미수납이 출연·차입 증가로 이어진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7년 정부안의 전입금·차입 감소는 대개도국차관 축소(△3.6%)와 종료사업 수 변화 등 다른 편성 요인과 함께 나타나 미수납의 영향만 분리할 수 없다.[272] 중기운용방향은 2025년 융자원리금 회수가 0.5조원(+61.2%)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으나,[273] 2026년 예산의 융자원금 회수(309,274백만원)는 2025년 결산보다 적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5년에는 계획(277,615백만원)에 없던 일부 사업의 조기

27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제14조제2항(결손의 보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2026.8.27., 붙임1 법령 원문 pp.1~3.

272)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2·3·4번 표; 同,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5번 표(증감사유).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73)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Ⅰ.2 '25년 EDCF 운용실적(주요 성과·기금 운용).

상환으로 결산이 계획보다 많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채무재조정 대상국의 수정 차관계약 체결 전에 수립되어 이들 국가의 상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차이는 채무재조정에 따른 상환 이연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재정경제부도 기금 수입은 공자기금 차입금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다양하여 일부 국가의 원리금 연체가 그 금액만큼 공자기금 차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에 따른 차입 잔액과 이자 부담의 증가분을 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274] 이 점을 고려하면 미수납의 재정 영향은 차입 증가분을 추정하기보다 회수 계획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채무재조정 대상 2개국의 회수 계획과 실적을 보면, 2022~2025년 계획 1,113.4억원 중 31.4억원(2.8%)만 회수되어 1,082.0억원이 계획보다 덜 회수되었다. 수정 차관계약 발효(2026년 6월) 이후에는 약정대로 상환되고 있다고 하며, 2026년 9월까지 두 나라의 회수액(136.2억원)은 채무재조정을 반영한 2026년 회수 계획(125.1억원)을 이미 넘었다. 그러나 2026년 계획과 2027년 계획(136.4억원)은 모두 2025년 당초 계획(325.5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275] 이처럼 채무재조정은 회수 시점을 늦추어 회수재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경로 (b)를 판단할 지표인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 잔액과 차입·출연 결산은 EDCF 재무제표 등으로 공시되고 있다.[276] 차입 잔액이 쌓이면 이자 부담도 커지므로 회수 차질을 차입으로 메우는 구조에서는 이자비용이 함께 늘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자체수입 비중이 낮으나, 차관잔액이 늘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원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채무재조정은 원금 감면이 아닌 일정 조정이어서 명목 손실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현재가치 손실과 재조정 후 회수 실적은 충당금 반영액과 함께 공개되어

274) 재정경제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275)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21번(2022~2027년 채무재조정 대상국 EDCF 원리금 회수 계획 및 실적). 2026년 계획은 채무재조정을 고려한 금액이며, 합계와 계획 대비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76)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EDCF 재무제표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누적액과 연도별 차입금 상환 계획이 공시된다고 설명함;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2·3·4번 표.

야 검증할 수 있다. 정부도 금리 개편의 목적을 "장기적으로 추가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는 데 두고 이차보전 상한 설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277] 추가 재정투입 규모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채무재조정·연체에 따른 연도별 회수 계획 변경분과 채무재조정·연체 채권에 대한 충당금 반영액·증감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로 제시하고, 국가결산보고서에서 EDCF 관련 채무가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 근거와 대응자산의 회수 상태를 함께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금리조건·이자수지 점검 필요

EDCF의 대출 이자수입 대비 공자기금 차입이자 비율은 2024년 77.4%에서 2027년 정부안 127.3%로 높아져 차입 재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금리 인상 폭과 기금수지 영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금리체계 개편의 내용·적용 대상과 기금수지 영향 추계를 공개하여 양허성 유지와 기금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점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EDCF는 무이자 재원인 정부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재원으로, 협력국에 연 0.1~2.5%(2026년 8월 개정 전 0.01~2.5%)의 금리로 최장 40년에 걸쳐 빌려준다. 따라서 공자기금 차입이 늘면 차입 재원에 내는 이자가 대출에서 받는 이자보다 빠르게 늘 수 있다. 이 절은 공자기금 이자상환액을 대출 이자수입(기타민간이자수입)으로 나눈 '대출이자수입 대비 차입이자 비율'로 그 부담을 살폈으며, 이 비율은 2024년 77.4%에서 2025년 결산 101.9%, 2027년 정부안 127.3%로 높아진다.[278]

차입이자 비율은 분모를 기타민간이자수입으로 정의할 때 2025년 결산부터 100%를 넘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포함하면 2026년 예산부터 넘는다.[279][280] 이

277)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3)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278)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2~4항; 같은 기관,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3·4번 표.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79)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공자기금 이자상환 ÷ 기타민간이자수입 × 100(2024년 39,405/50,923, 2025년 56,340/55,277, 2026년 82,755/73,633, 2027년안 96,292/75,642). 원자료는 한국수출입

비율은 이자 항목만으로 산출하여 기금 전체 손익을 보여주지 않고 2026·2027년은 예산·정부안 기준이지만, 이자상환액이 대출 이자수입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방향성은 1차 자료에서 일관된다.[281]

이 변화에는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최장 40년에 걸쳐 낮은 금리로 회수되는 대출을, 이자를 내야 하는 공자기금 차입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에서 차입이 늘어난 것이다.[282][283] 다른 하나는 사업비 결산이 2021년 1,240,121백만원에서 2025년 1,913,228백만원으로 커진 것이다.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채무재조정·연체로 이자 수납이 늦어지는 영향도 더해졌다.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새로 생긴 연체 이자는 57.6억원으로, 이를 대출 이자수입(552.8억원)에 더하면 2025년 대출이자수입 대비 차입이자 비율은 101.9%에서 약 92.3%로 낮아진다.[284] 자산·부채 구조로 보면 EDCF의 자산은 0.1~2.5%(개정 전 0.01~2.5%)의 저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대출인 반면, 부채 측의 공자기금 예수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이어서 빌려주는 금리(운용금리)와 빌려오는 금리(조달금리)가 맞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차입 비중이 커지면 무이자 일반회계 전입금이 사실상 차입이자 부담을 메우는 효과가 생겨, 같은 출연 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순융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중기운용방향은 다른 공여국 금리와 국제 ODA 기준을 고려한 금리 인상으로 추가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채권관리 강화와 이차보전 상한 검토를 병행하며, 금

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3·4번 표.

280)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3·4번 표(수입지출총괄표 자체수입의 기타민간이자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4년 9,190백만원, 2025년 10,133백만원, 2026년 4,436백만원, 2027년 정부안 10,133백만원이며, 비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81)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2·3·4번 표; 同,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5번 표(증감사유).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82)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별첨1]), 2026.8., 2~4항(지원조건·지원현황).

283)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2·3·4번 표; 同,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5번 표(증감사유).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284)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2025년 연체 이자 합계 5,755백만원); 同,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3·4번 표(2025년 공자기금 이자상환 56,340백만원, 기타민간이자수입 55,277백만원). 비율은 연체 이자가 모두 수납되었다고 가정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이다.

리 개편과 상한 검토를 2026년 상반기 일정으로 제시하였다.[285] 신규 승인 목표도 3년간 9조원(연평균 약 3조원)으로[286] 직전 계획(14.1조원)보다 연평균 약 36% 줄어[287] 중장기 차입 소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운용방향에는 인상 폭, 적용 대상(신규 승인분 한정 여부), 기금수지 전망이 없고, 2026년 8월 개정으로 최저 금리가 0.01%에서 0.1%로 높아진 뒤에도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되지 않아 차입이자 부담 완화 정도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익 환류 방침에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 중기운용방향은 "EDCF 낙찰조건부 지원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2026년 하반기부터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288] 납부 주체, 산정 기준,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 상생기여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89호·제2217336호)에 담겨 있으며, 이 법률안들은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이 지원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289] 따라서 상생기여금의 납부 주체와 법적 근거는 법률 제정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률이 제정되면 중기운용방향이 밝힌 'EDCF 이익 환류'와 기업이 내는 기여금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리 인상은 협력국 상환부담을 늘려 채무위기국의 상환위험을 키울 수 있고, EDCF가 ODA로 인정되려면 양허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중기운용방향도 "국제사회 ODA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90]

재정경제부는 금리 인상의 폭과 일정은 국제 금리와 다른 공여기관의 금리 추이, EDCF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므로 현 시점에서 기금수지 영

---

285)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3)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원문에는 금리 인상 폭·적용 대상, 기금수지 전망, 미수납·연체·대손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86)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 2026.4.13., Ⅱ.1 기본 방향(p.3), Ⅱ.2 중기 운용 규모(p.4).

287) 직전 계획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방향 수립」, 2025.2.27. 연평균 승인목표 감소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9÷3)÷(14.1÷3)−1 ≈ △36.2%).

288)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2) 이익 환류(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26.下~). 원문에는 상생기여금의 납부 주체·산정기준·규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89)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법률안 비교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220460호), p.7.

290)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3)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향을 단정하기 어렵고, 양허성 유지와 기금 지속가능성 사이에 일률적인 균형 기준을 두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다.[291]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기금수지 전망은 확정값이 아니라 금리 가정별 범위로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차입과 출연의 구성에 관한 운용 방향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개정을 포함한 금리체계 개편의 내용·적용 대상과 개편 전후 5년간 기금 이자수지 전망(금리 가정별 범위)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시하고, 공자기금 차입과 정부출연의 적정 비율, 상생기여금과 기금 수지의 관계를 기금 운용원칙으로 명시하여 유상원조의 양허성 유지와 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리 조건을 바꿀 때에는 채무위험이 높은 협력국의 상환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국가별 채무위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91) 재정경제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5 원조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 정책의 정합성 제고

가. 현황

원조 비구속화는 원조로 하는 구매(조달)를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001년 권고로 채택하고 회원국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원칙이며,[292] 정부도 제3차·제4차 기본계획에 비구속 비율 목표를 두었다. 한편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민간재원 활용 확대와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 수립을 과제로 제시하였고,[293]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EDCF에 참여한 우리 기업의 해외 계약 규모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으며,[294] 산업통상부는 「수출·수주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 방안」(2026.3.)을 마련하였다.[295] 2027년도 예산안도 AI·문화·테크 등 강점 분야의 전략형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K-이니셔티브 확산과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296]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도 ODA의 정책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비구속화는 조달을 다른 나라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고 국내기업 수주 확대는 국내 참여를 늘리는 것이므로, 두 목표는 실제 구매계약이 있는 사업에서 서로 부딪칠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비구속 비율 유상 60%, 무상 95% 이상을 목표로 하였고,[297] 제4차 기본계획은 같은 목표의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었다. 2024년 실적은 제4차 기본계획에 유상 63.7%·무상 88.4%(p.8)로 적혀 있고, p.30에는 유상 59.3%·무상 90.7%가 2024년 실적으로 적혀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은 p.30의 수치가 2023년 실적이며 연도가 잘못 적힌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98] 이에 따르면 유상 비구속 비율은 2023년 59.3%에서 2024년 63.7%로 높아져 목표

292) OEC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ECD/LEGAL/5015), 2001년 채택(이후 적용 대상국 범위를 넓히는 개정을 거침) (https://legalinstruments.oecd.org).
293)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Ⅵ 재원배분, 민간 참여 활성화 절.
294)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Ⅰ.2 (1) 주요 성과.
295) 산업통상부, 「수출·수주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 방안」, 2026.3., Ⅱ.1.
296)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홍보자료), 2026.9., p.43, p.66.
297)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1.20., pp.24~25.
298)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8(제3차 성과·한계), p.30(비구속성 비율 각주), Ⅵ 재원배분, 민간 참여 활성화 절.

(60%)를 넘었으나, 집계 기준은 표기되지 않았다. EDCF의 2023년 비구속 비율은 59%(잠정)였다.[299] DAC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DAC 권고 적용 대상 ODA의 비구속 비율(2019~2020년 평균)은 우리나라 71%로 DAC 평균 80%보다 낮고, 우리나라 구속성 원조의 91%는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 차관이며, 자국 공급자가 수주한 계약의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DAC 평균(48%대)보다 높다.[300]

[비구속 원조 비율의 목표와 실적(자료별)]

(단위: %)

구분	대상	비율	비고
제3차 기본계획 목표(2025년)	유상 / 무상	60 이상 / 95 이상	목표
제4차 기본계획 목표(2030년)	유상 / 무상	60 이상 / 95 이상	목표
2024년 실적(제4차 기본계획 p.8)	유상 / 무상	63.7 / 88.4	집계기준 미표기
2023년 실적(제4차 기본계획 p.30, 2024년으로 기재)	유상 / 무상	59.3 / 90.7	집계기준 미표기
2023년 EDCF 실적	유상(EDCF)	59	잠정
DAC 권고대상 ODA(2019~2020년 평균)	한국 / DAC 평균	71 / 80	DAC 이행보고서

주: 제4차 기본계획 p.30에는 2024년 실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은 2023년 실적이라고 설명함(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2021.1.20.);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2024.2.7.); OECD DAC, DCD/DAC(2022)34/FINAL(202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6~2024년 승인된 비구속 유상사업 43건(2,674.1백만달러)의 본구매 시행 업체를 보면 국내기업 3건 106.6백만달러, 국외기업 11건 485.5백만달러이고, 나머지 29건 2,082.0백만달러(77.9%)는 프로그램차관처럼 본구매가 없거나 수주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다.[301] 본구매가 있는 14건 중 국내기업 비중은 승인액 기준 18.0%, 건수 기준 21.4%이며, 2020~2024년 승인분 중 본구매 업체가 정해진 사업에서는 국내기업 수주가 없었다.

299)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Ⅰ.1·Ⅲ.2.

300) OECD DAC, 「2022 Report on the DAC Untying Recommendation」, DCD/DAC(2022)34/FINAL, 2022, pp.7·8·12. DAC 평균 자국 공급자 계약 비중은 원문 p.12에서 소수점 이하가 확인되지 않아 "48%대"로 표기함.

301)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비구속성 현황」(2026.9.23. 답변 별도 제출), 시트 '비구속성현황'. 국내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금액 106.6÷(106.6+485.5)=18.0%, 건수 3÷14=21.4%).

[비구속 유상 ODA 사업의 본구매 시행업체 국적(2016~2024년 승인)]

(단위: 건/백만달러)

승인연도	국내	국외	해당없음·미확정	합계
2016	1/25.0	2/27.5	0/0	3/52.5
2017	1/31.6	1/25.0	0/0	2/56.6
2018	0/0	1/79.0	2/110.0	3/189.0
2019	1/50.0	0/0	2/110.0	3/160.0
2020	0/0	1/60.0	7/360.0	8/420.0
2021	0/0	1/35.0	6/500.0	7/535.0
2022	0/0	2/95.0	1/60.0	3/155.0
2023	0/0	2/157.0	4/292.0	6/449.0
2024	0/0	1/7.0	7/650.0	8/657.0
계	3/106.6	11/485.5	29/2,082.0	43/2,674.1

주: 해당없음은 프로그램차관 등 본구매가 없는 사업, 미확정은 협조융자 1건. 국내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구속성 사업은 국내기업만 본구매를 수주할 수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비구속성 현황」(2026.9.23. 답변 별도 제출) 시트 '비구속성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민간재원 실적은 기관마다 단위가 다르다. KOIC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CTS·IBS·IPS) 중 IPS 유치액은 예산안 설명자료상 2021년 2,621만달러에서 2025년 19,591만달러로 제시되어 있으나, KOICA 답변은 2025년 155,582백만원이고, 같은 설명자료의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혁에는 2024년 1,783.5억원으로 적혀 있어 집계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302)303)] EDCF는 수입 항목에 민간재원 조달이 없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체 조달한 자금을 민간재원으로 보아 이를 재원으로 경협증진자금(EDPF)을 대출하고, EDCF가 그 이자 차이를 보전(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민간재원을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차보전 예산은 2025년 2,308백만원(결산 1,993백만원)에서 2027년 정부안 8,236백만원으로 늘었는데,[304)] 새 중기운용방향은 그 상한 설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305)] 제4차 기본계획은 "민간재원 활용 확대"와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 수립"을 제시하였으나 유치액의 정량 목표는 없다.[306)]

302)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별첨4 혼합금융 요구 개요 '사업성과' 표 및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혁.

303)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1-2(CTS).

304)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3번(비구속성)·5번(증감사유)·6번(민간재원).

305)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3)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p.10), Ⅳ 향후 추진계획(p.11).

[기관별 민간재원 관련 실적과 산정단위]

기관·프로그램	실적	산정 단위·기준
KOICA IPS	2021 2,621만달러 / 2022 329 / 2023 2,775 / 2024 10,197 / 2025 19,591만달러	민간개발재원 동원액(약정·연도별 신규 유치액 기준, 타 공여기관 공공 재원 포함)
KOICA IPS (상충)	2024 132,569 → 2025 155,582백만원 / 1,783.5억원(2024 연혁)	유치액(집계 범위 상이)
KOICA IBS	2010~ 213개 사업, 기업분담 1,615억원	기업 분담금
KOICA CTS	2025 외부 투자유치 576.3억원	참여기업 투자유치
EDCF	민간재원 조달 없음(EDPF 이차보전 2027안 8,236백만원)	해당없음
EIPP	정량 유치 지표 없음(정책제언 유용성)	-

주: OECD '민간부문 동원액' 기준 적용 여부는 자료에 표기되지 않음
자료: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2026.8.28.); 한국국제협력단,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2026.9.18.);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2026.9.16.); 재정경제부,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1) 비구속화 실적·영향 점검 필요

정부는 원조 비구속화와 국내기업 해외 수주를 함께 목표로 두고 있으나, 본구매가 있는 비구속 유상사업 14건의 국내기업 수주 비중은 승인액 기준 18.0%에 그쳐 구속성 원조 제한국이 늘면 두 목표가 부딪칠 수 있다. 다만 비구속 비율과 수주 실적은 자료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이행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비구속 비율의 산출 기준을 밝히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계약금액 기준 수주 국적 통계를 공개하고 비구속 경쟁입찰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수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상원조는 구속성 차관이 주된 운용방식이다.[307] 「2024~2026년 EDCF 중기 운용방향」은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지방도로 등)은 비구속성을 허용하여 고부가사업(경전철·메트로)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수주해도 실익

306)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8(제3차 성과·한계), p.30(비구속성 비율 각주), Ⅵ 재원배분, 민간 참여 활성화 절.
307)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별첨1]), 2026.8., 2~3항.

이 적은 사업은 비구속으로 추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구속성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같은 문서는 중점지원국 가운데 구속성 원조가 제한되는 국가가 2023년 3개국에서 2027년 8개국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였다.[308] 이어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상위 협력국의 소득이 늘어 구속성 원조 제한 국가(1인당 GNI 4,466달러 이상)가 늘어나고, 누적 승인 4위 협력국인 인도네시아가 2024년 7월부터 제한 국가로 바뀌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비구속성 지원조건(이자율·만기)을 재정비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우위 분야를 분석해 비구속 사업 발주에 활용하는 '비구속성 준비'를 2025년 과제로 제시하였다.[309]

한국수출입은행은 "비구속성 사업 포함하여 90% 이상 국내 기업이 수주"하고 EDCF 사업의 우리 기업 수주액이 2025년 3조 6,038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답하였다. 이 수주액의 1차 근거는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의 'EDCF 참여 우리 기업 해외 계약 규모'(2023년 1.27조원 → 2024년 1.38조원 → 2025년 3.60조원, 탄자니아 국립병원·모로코 철도차량 등 대형 계약 중심)이다.[310] 한국수출입은행은 참여자를 '대한민국국민등'으로 하는 원칙과 사업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등 입찰 전 단계의 사업구조 설계를 설명하였다.[311] 다만 수은이 제시한 "3조 6,038억원"은 중기운용방향의 EDCF 전체 계약 규모(3.60조원)와 같은 수치여서, 비구속 사업에 국내기업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쓸 수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추가 답변에서 "90% 이상 국내 수주"는 국내 법인인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2025년 구속성 EDCF 사업의 계약금액(현지화비용 포함)은 1조 3,372억원, 1조 4,496억원, 3조 5,383억원이고 이 중 국내기업 수주는 1조 2,470억원(93.3%), 1조 3,772억원(95.0%), 3조 3,895억원(95.8%)이며, 같은 기간 국내기업이 계약한 비구속성 사업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비구속성 원조 집계액은 비구속성

308)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Ⅰ.1·Ⅲ.2.

309) 기획재정부,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2025-①호 안건), 2025.2.27., 요약, Ⅰ.2 2024년 EDCF 운용실적, Ⅱ.2 중기 운용 규모, Ⅱ.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Ⅲ.3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310)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Ⅰ.2 (1) 주요 성과 및 각주(연도별 EDCF 사업 계약규모). 구속·비구속 구분과 계약 규모의 산정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311)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3번(비구속성)·5번(증감사유)·6번(민간재원).

사업 금액에 구속성 사업 가운데 현지에서 조달하는 현지화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하였다.[312]

따라서 "90% 이상"은 구속성 사업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2023~2025년에 국내기업이 계약한 비구속 사업은 없었고 2023·2024년 승인분 3건(164백만달러)의 본구매는 국외기업이 수주하였으므로,[313] 이 수치로는 비구속 입찰에서 국내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관이 앞서 제시한 2025년 우리 기업 수주액(3조 6,038억원)은 이번에 제시한 국내기업 수주액(3조 3,895억원)과 다른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외화 계약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한 환율의 기준 시점이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은 2025년 12월, 국회 제출자료는 2026년 9월로 달라 생긴 차이라고 설명하였다.[314] 아울러 유상 비구속 비율에는 구속성 사업의 현지화비용도 포함되므로, 비구속 비율이 높아진 것을 곧 조달 시장의 개방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동안 비구속화에 따른 국내 수주 감소의 금액 규모는 사업 유형 구성 때문에 크지 않았다. 비구속 승인액의 77.9%가 본구매가 없는 사업이고, 비구속 승인이 늘어난 2020년 이후 그 비중이 더 커졌다(2024년 657.0백만달러 중 650.0백만달러).[315] 이는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을 비구속으로 돌리고 고부가 인프라는 구속성으로 추진하는 중기운용방향의 방식과 일치한다.[316] 즉 비구속 비율 목표를, 본구매가 있는 경쟁입찰 사업을 비구속으로 바꾸기보다 본구매가 없는 유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맞추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위기 대응 성격의 프로그램차관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

312)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24번(구속성 EDCF 사업의 국내기업 수주 금액)·25번(구속·비구속 집계기준, "90% 이상 국내 수주"의 산정기준, 해외계약 규모). 국내기업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313)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비구속성 현황」(2026.9.23. 답변 별도 제출), 시트 '비구속성현황'. 2023년 승인 케냐 송전망 사업(57백만달러)·볼리비아 지방 전력화 사업 Ⅲ(100백만달러)와 2024년 승인 벨리즈 보건시스템 효율성, 품질 및 접근성 개선사업(7백만달러,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기금 지원사업)의 본구매를 '국외기업 수주'로 기재함.

314) 한국수출입은행,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15)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비구속성 현황」(2026.9.23. 답변 별도 제출), 시트 '비구속성현황'.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본구매 없는 사업 2,082.0÷2,674.1=77.9%).

316)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Ⅰ.1·Ⅲ.2.

이 방식은 DAC 권고의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DAC는 우리나라 구속성 원조의 91%가 인프라 차관이고 자국 공급자 계약 비중이 DAC 평균을 웃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317] 또한 구속성 원조가 제한되는 중점지원국이 2027년 8개국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어,[318] 본구매가 있는 인프라 사업도 비구속으로 추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비구속 입찰에서 국내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었는지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비구속화가 해당 사업의 국내 수주를 줄인다는 방향은 구속성 원조의 정의상 분명하나, 감소 규모는 승인액이 아니라 본구매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국적을 집계해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 절의 18.0%는 승인액 기준이고 본구매가 있는 비구속 사업이 14건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 기준 집계가 이루어지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319]

비구속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EDCF 예산 규모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점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므로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른 관련 예산 감소 가능성은 작음"이라고 답하였고,[320] 2027년 정부안의 대개도국차관 △3.6%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수 감소(2026년 30개국 163개 → 2027년 31개국 144개)로 설명되었다.[321] 따라서 비구속 확대가 EDCF 예산을 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구속 여부는 조달 조건일 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금리 등 대출 조건이 결정하므로, 비구속 확대가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이나,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이 과제로 제시한 비구속성 지원조건(이자율·만기)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비구속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기금 재정보다는 국내기업 수주 감소로 나타나므로, 이를 계약금액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317) OECD DAC, 「2022 Report on the DAC Untying Recommendation」, DCD/DAC(2022)34/FINAL, 2022, pp.7·8·12. DAC 평균 자국 공급자 계약 비중은 원문 p.12에서 소수점 이하가 확인되지 않아 "48%대"로 표기함.

318)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기금운용위원회 2024-01호 의결), 2024.2.7., Ⅰ.1·Ⅲ.2.

319)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비구속성 현황」(2026.9.23. 답변 별도 제출), 시트 '비구속성현황'. 국내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금액 106.6÷(106.6+485.5)=18.0%, 건수 3÷14=21.4%).

320)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3번(비구속성)·5번(증감사유)·6번(민간재원).

321)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4번 표; 同, 「국회요구자료(예산정책처)」, 2026.9.16., 5번 표(대개도국차관 증감사유: 종료사업, 지원 사업 2026년 30개국 163개 → 2027년 31개국 144개).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현재 약정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비구속 비율의 세부 산출 기준(DAC 권고 적용 대상만 볼지, 구속성 사업의 현지화비용을 포함할지 여부)을 연도별 실적과 함께 밝히고, OECD DAC가 비구속 금액·비율의 공식 집계기준을 확정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연도별 실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322]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구속·비구속·부분비구속(공여국과 개발도상국 기업에만 조달을 개방하는 방식) 유형별 승인액, 본구매 유무, 계약금액 기준 수주 국적을 연도별로 공시하고, 구속성 제한국 증가에 대비해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이 2025년 과제로 제시한 '비구속성 준비'(우리 기업의 기술우위 분야 분석과 비구속 사업 발주 활용)의 이행 결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구속 경쟁입찰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설계·감리 등 용역 단계 참여와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수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그 효과를 점검하는 지표를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주 실적을 공개할 때 원화 환산 기준 시점과 국내·국외 기업 구분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2) 민간재원 산정기준 통일 필요

민간재원 유치 실적은 KOICA IPS 자료 간에도 집계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다르고 EIPP는 유치 개념으로 산정한 실적이 없어 기관 간 합산·비교가 어려우며, 제4차 기본계획에는 유치 목표도 없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OECD DAC 측정 방식을 참고해 집계 범위, 인정 시점, 환율을 담은 공통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실적을 관리·공개할 필요가 있다.

민간재원 유치 실적은 KOIC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EDCF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재정경제부 EIPP 등에서 서로 다른 단위와 기준으로 제시된다. 같은 KOICA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안에서도 2025년 유치액이 2027년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19,591만달러, KOICA 답변에는 155,582백만원(약 1,556억원)으로 적혀 있다.[323]

---

322) 국무조정실은 비구속 비율을 약정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산출하고 있으며, 비구속성 금액·비율의 산출 기준은 OECD DAC가 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 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23)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별첨4 혼합금융 요구 개요

KOICA는 IPS 유치액의 차이가 환율보다 집계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9,591만달러는 약정 및 연도별 신규 유치액 기준으로 민간 파트너가 타 공여기관에서 유치한 공공 재원까지 포함한 값이고, 같은 해 155,582백만원은 같은 기준에서 공공 재원을 제외한 값이며, 2024년 연혁의 1,783.5억원은 기관 경영목표에 따라 국제기구·시민사회 분담금과 CTS 참여기업의 투자유치액 등을 합산한 개발협력 재원 총동원액이다.[324] 자료에는 2025년 19,591만달러(달러당 약 1,400원 환산 시 약 2,743억원)와 약 1,556억원이,[325] 2024년 10,197만달러, 132,569백만원, 1,783.5억원이 병존한다.[326] 그러나 자료에는 각 수치가 어느 범위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운영기준의 "실제 집행된 자본" 인정 기준[327]과 약정 기준 집계의 관계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관·사업 간 불일치는 사업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IPS는 개발재원 동원액, IBS는 기업 분담금, CTS는 투자유치를 실적으로 제시한다.[328] EIPP는 정책제언 유용성 점수를 쓰고 실적은 과제 건수('2025년 말까지 10개국 72건 완료')로 제시한다. 이 건수는 사업목록상 2020~2024년 사업연도 과제 수(72건)와 일치하나, 완료국으로 제시된 미얀마의 과제는 사업목록에 없다.[329][330] 기본계획에 유치 목표도 없어[331] "민간재원 활용 확대"의 달성도를 판단할 공통 척도가 없다.

'사업성과' 표;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324)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25)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19,591만달러 × 약 1,400원 ≈ 2,743억원. 적용 환율은 비교를 위한 가정값이며, KOICA 자료의 인정 시점 환율과 다를 수 있음.

32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별첨4 혼합금융 요구 개요 '사업성과' 표 및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혁.

327)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1-2(CTS).

328)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1-2(CTS).

329) 재정경제부, 「EIPP 사업설명자료」; 同,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 「(최종 평가의견) 경제협력기획(ODA) 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 EIPP 사업목록(「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 건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330) 재정경제부, 「EIPP 사업설명자료」, 2026.; 同, 「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사업목록' 시트. 사업목록 98건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연도 기준으로 집계하면 2020~2024년 72건으로 재정경제부의 '72건 완료'와, 2025년 15건은 '15건 진행'과 일치함. 재정경제부는 완료국 10개국에 미얀마를 포함하나 사업목록에는 미얀마 과제가 없음.

33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8(제3차 성과·한계), p.30(비구속성 비율 각주), Ⅵ 재원배분, 민간 참여 활성화 절.

실적의 대형 사업 집중도 볼 필요가 있다. IPS 2021~2025년 착수 11건의 파트너 분담(154.75백만달러)은 KOICA 분담(18.25백만달러)의 약 8.5배이나, 최대 1건(FASA 펀드, 80백만달러)이 51.7%를 차지하며, FASA·SIFI의 총사업비는 사업명 표기 금액(5,000,000달러, 1,900,000달러)과 달라 자료 간 정합성 점검이 필요하다.[332] 유치액이 2022년 329만달러에서 2025년 19,591만달러로 크게 오르내리는 것도 대형 사업 착수 시점의 영향일 수 있어 제도 성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IPS는 OECD DAC 혼합금융 원칙과 유치 인정 기준을 운영기준에 두고 있고,[333] 기관마다 사업 목적이 달라 자체 지표를 두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이 수치들이 '민간재원 유치'라는 같은 이름으로 합산되거나 홍보될 때 생기는 혼선이다.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가 DAC에 보고한 유치 통계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OECD DAC 민간부문 동원액 측정 방식을 참고해 집계 범위(공공 재원 포함 여부), 인정 시점, 환율 기준을 담은 기관 공통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유치 실적과 상위 사업 집중도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공개할 필요가 있다. 유치 목표를 시행계획에 두는 문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334] 산정기준과 함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OECD DAC 혼합금융 원칙은 개발 목적에 근거하여 혼합금융을 활용하고(원칙 1), 공적 재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업재원을 이끌어내는 추가성을 확보하도록(원칙 2)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민간재원 유치 사업은 선정 단계에서, 공적 재원이 있었기에 민간자금이 들어왔는지(재정적 추가성)와 그로 인해 개발성과가 더 생기는지(개발적 추가성)의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사후에 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IPS는 이

---

332) 한국국제협력단, 「국회예산정책처 별첨 2-2(IPS·IBS 사업목록)」, 2026.9.21. 기준. 합계·비중·배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파트너 분담 154.75÷KOICA 분담 18.25 ≈ 8.5배, FASA 80÷154.75 = 51.7%).

333)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1-2(CTS).

334) 국무조정실은 민간재원 유치 실적을 OECD DAC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 유치를 정부 ODA 시행계획에 명시하는 것은 민간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미 이 원칙을 운영기준에 두고 있으므로 이를 기관 공통 기준으로 넓히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다.[335]

(3) 민관협력 성과지표 개선 필요

KOIC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업 관점의 산출지표 편중과 약정해지·분담 미이행 등 위험 관리 미흡으로 2026년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고 2027년 예산안이 18.4% 감액되었으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 사업도 성과지표 목표치 임의 하향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KOICA는 현지 고용·서비스 개선 등 협력국의 개발 성과지표를 적용하고 약정해지·분담 미이행 사업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경제부는 새로 둔 후속사업 연계 지표의 산식과 실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IBS·CTS·IPS) 예산은 2025년 결산 41,306백만원에서 2026년 50,576백만원으로 늘었다가 2027년 정부안 41,283백만원으로 18.4% 줄었고, 실집행률은 2023~2025년 100.9%·96.8%·96.3%, 2026년 7월 말 49.5%이다. 이 사업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기업 관점의 산출지표 집중, 약정해지 및 분담 미이행 등 리스크 관리체계 미흡"으로 '감액' 판정을 받았고, 국회(2023·2024회계연도 결산)와 감사원(2023년 정기감사)도 성과지표·효과성·분담체계 개선을 요구하였다.[336] KOICA는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과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조치계획으로 제시하였고, IPS는 OECD DAC 혼합금융 원칙에 따라 실제 집행된 파트너 자본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운영기준을 두고 있다.[337]

성과지표가 기업 관점에 치우친 것은 사업이 개발협력과 기업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두 목적을 지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KOICA가 제시한 성과는 IBS의 2025년 현지 매출 38억원(+53%), 현지 고용 1,284건, 국내 신규채용 126명, CTS

335) OECD DAC, 「OECD DAC Blended Finance Principles for Unlocking Commercial Fi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7(2017.10. DAC 고위급회의 채택); OECD, 「OECD DAC Blended Finance Guidance」(2020년 DAC 승인, 2025년 개정판 2025.6. 승인).

33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2432-406) 9)·13)항(성과평가 결과,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337)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1-2(CTS).

의 투자유치 576.3억원과 특허 266건으로,[338] 현지 고용 외에는 참여기업 성과 지표이다. 측정이 쉬운 기업 지표가 중심이 되면 사업 선정과 평가도 협력국 개발 수요보다 기업 사업성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339] KOICA는 협력국 개발 성과지표가 사업별 성과관리계획(PDM: Project Design Matrix)에 설정되어 있고 연차별 산출물 목표달성도(90%)가 KOICA 분담금 지급 요건으로 적용되어 보조적 위치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340]

리스크 관리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IBS는 2021~2026년 착수 73건(총사업비 2,441억원, 파트너 분담 43.2%) 중 3건, CTS는 99건 중 3건의 약정이 해지되었다.[341][342] 국회와 감사원도 성과지표와 분담체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343] 해지된 △△△△ 사업의 총사업비 8,712백만원에는 파트너 분담금 6,2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KOICA 분담금은 2,500백만원이다. KOICA는 이미 지급한 91,711,206원이 반납되어 재원 손실이 없고, 약정해지에 「민관협력사업 규정」의 해지·정산·반납 절차를 적용하며, IBS에 파트너 분담금 50% 선입금 확인 후 지급, 사전적격심사의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이행보증보험 의무화(KOICA 분담금의 100%) 등 제도를 보완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IBS 파트너 분담 비중은 2021년 37.4%, 2022년 36.2%, 2023년 51.1%, 2026년 39.6%로 차이가 있으나, 최소 분담비율이 대·중견기업 5:5, 중소기업 7:3, 사회적기업 8:2로 달라 해당 연도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리스크 관리 수준을 직접 보여 주는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344]

한편 KOICA는 개발성과·동반성장을 확인하는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을 조치계

---

338)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1(IPS·IBS), 1-2(CTS).

339)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2432-406) 9)·13)항(성과평가 결과,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340)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41) 한국국제협력단, 「국회예산정책처 별첨 2-2(IPS·IBS 사업목록)」, 2026.9.21. 기준. IBS 착수 건수·총사업비·파트너 분담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342) 한국국제협력단, 「국회예산정책처 별첨 2-1(CTS 사업목록)」; 同, 「국회 요구자료 제출 — 기업협력사업 설명자료」, 2026.9.18., 1-2.

343)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2432-406) 9)·13)항(성과평가 결과,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344)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획으로 제시하였고, 2027년 감액 편성에도 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다. 다만 새 프레임워크의 지표와 목표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345]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협력기획(ODA,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346]·EIPP 통합)도 성과지표 목표치 임의 하향(87→85점)을 지적받았고(최근 3년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불용은 낙찰차액에 따른 것이어서 집행 적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평가됨), 해외수주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출범한 EIPP는 2026년 성과평가 자료 기준으로 정책제언 유용성 점수만 측정하여 후속 사업화나 민간재원 유치 실적과 연결되지 않았다.[347]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목표치를 낮춘 'KSP 등 정책채택 가능성' 지표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 후속사업과의 연계 성과를 측정하는 '후속사업 연계 추진율' 지표를 새로 두었다고 설명하였다.[348]

따라서 KOICA는 프로그램 이행계획(2026년 7월)에 맞추어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에도 4대 프로그램(기술·디지털, 보건, 기후·에너지, 지역개발)과 연동하여 협력국 개발 성과지표(현지 고용의 질,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개선)를 적용하고, 기업 성과지표는 보조지표(민간재원 유치 등)로 관리하며, 약정해지·분담 미이행 사업의 해지 사유, 기집행 분담금 처리, 재발 방지 조치를 결산 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교부와 KOICA는 사업별 해지 사유와 분담금 처리 내역이 기업 경영정보와 제3자 정보를 담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349] 공개 범위는 유형별·집계 수준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의 같은 취지 지적이 반복된 만큼 KOICA는 개선 조치의 이행 결과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부터 새로 둔 후속사업 연계 지표의 산식과 실적을 사업설명자료에 제시하고, 목표치를 낮출 때에는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345)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2432-406) 9)·13)항(성과평가 결과,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346)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형 개발협력 사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현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ODA)' 세부사업에 EIPP와 함께 편성되어 있다.

347) 재정경제부, 「EIPP 사업설명자료」; 同,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 「(최종 평가의견) 경제협력기획(ODA) 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 EIPP 사업목록(「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 건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연도 기준으로 집계함.

348) 재정경제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349)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평가 관련 외교부 및 KOICA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6 ODA 사업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 점검

가. 현황

(1)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판정과 2027년도 정부안

기획예산처는 2026년 5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첫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의 3단계로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2,487개 사업(2026년 185.4조원) 중 정상추진은 89개(3.6%), 사업개선은 1,497개(60.2%)였고, 감액 858개, 폐지 3개, 통합 40개를 합한 901개(36.2%)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판정되었다. 기획예산처는 감액 판정 사업은 2026년 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2027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업은 각 부처가 8월에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하여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하였다.[350]

ODA 관련 평가단위(성과평가에서 하나로 묶어 평가한 사업 단위로, 여러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는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 27개, 외교부 11개, 재정경제부 6개이다. 열린재정에 공개된 최종 의견서의 판정을 기준으로 하면, 감액·폐지·통합 판정을 받은 12개 단위(타 부처 7개, 외교부 5개)는 모두 2027년 정부안이 2026년 예산보다 15% 이상 줄거나 통합되었다. 다만 외교부의 2026년 세부사업이자 평가단위인 「국제기구협력(ODA)」은 2027년 과목 재편으로 지역별 국가원조와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의 일부 내역사업과 함께 「다자협력(ODA)」으로 통합되어 4대 프로그램으로 재분류되었다. 외교부 환류계획상 과목 재편 전 기준으로는 35,030백만원에서 26,978백만원으로 23.0% 줄었으나, 통합된 다자협력(ODA)은 분쟁·취약국 지원 증액(42,924백만원)으로 223,825백만원에서 235,079백만원으로 5.0% 늘어, 예산안 자료만으로는 감액 반영을 확인하기 어렵다.[351] 부처 제출자료의 성과평가 결과란에 '감액'으로 적힌 3개 단위(재정경제부

350)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보도자료), 2026.5.18., 본문(평가결과, 평가결과 예산 환류) 및 참고 1·2.

351) 외교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외교부)」(정부안 기준), 2026.9., Ⅱ.1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국제기구협력(ODA) 환류계획.

사업진행컨설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 교육부 디지털 교육 세계화)는 최종 의견서 기준의 이 집계에 넣지 않았으며, 이들도 모두 2027년 정부안에서 15% 이상 줄었다.

(2) 성과지표 실태

외교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159개 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를 분류하면, 부처·국내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출연·보조하는 80개 중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는 7개(8.8%)이고, 그중 2개(UNITWIN,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는 2026~2027년에 신설되어 실적이 없다. 외교부의 KOICA 출연 17개 세부사업은 사업별 지표 없이 공통 지표인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수혜자수×만족도)를 쓰고, 재정경제부의 EDCF 부대사업 5개와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은 'EDCF 차관 승인액 규모'를, 경제협력기획은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상정 안건 수'를 성과지표로 쓴다.[352]

사업과 무관한 국내 정책·기관 공통 지표를 쓰는 사업은 8개로,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의 국내 근로감독 지표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피해해결률'(ILO분담금·한-ILO 협력사업도 같은 지표),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의 최고기술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인 '재난안전 기술수준', 국제치안활동강화의 협력국과 관계없이 전체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도피사범 종합송환율',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의 'ICT 국제협력 활동 수혜자 만족도'(산식의 절반이 국내 참가기업 만족도),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설물 안전 조치율' 등이다.[353][354][355][356] 국내 기업의 수출이

---

352)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4) 성과지표; 재정경제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각 세부사업 4) 성과지표. 지표 유형 분류는 국회예산정책처.

353)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ILO 분담금·한-ILO 협력사업)(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각 4).

354)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2932-300)」, 2026.9.22., 4); 국가유산청, 「ODA사업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 2026.9., 4); 국가데이터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 통계지원(ODA)」, 2026.9., 4);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글로벌헬스기술 연구기금(ODA)」·「같은 자료: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 2026.9., 4); 법무부, 「27년 예산안 ODA사업 사업설명자료」, 2026.9., 국제형사협력지원 4)(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경찰청, 「(최종 평가의견서) 일반행정_경찰청_국제치안활동강화(ODA)」, 2026.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기술수준'이 상위 프로그램 성과목표 지표를 차용한 것이며, 사업설명자료에는 세부사업 지표 '재난안전 국제협력 만족도'(2025년 실적 96.1점)를 함께 반영하였고 확정예산 사업설명서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나 조업쿼터를 측정하는 지표가 4개, 투입지표가 8개, 지표 없음이 13개였다.[357]

개선 사례도 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은 2021년 달성도 1,102%였던 초청교육 이수인원 지표를 2025년에 액션플랜 적용도·주민참여율 등으로 바꾸었고, 산업통상부·경찰청·관세청도 성과평가를 계기로 지표를 바꾸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358] 반면 국가유산청과 조달청은 같은 사업의 지표가 제출자료와 성과평가 자료에서 다르다.[359]

(3)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분담률(분담 단위·등급 포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분담금은 외교부 본부의 3개(「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를 포함하여 16개이다. 그중 2027년에 증액된 10개 중 7개(보건복지부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 고용노동부 「ILO분담금(ODA)」, 기상청 「WMO의무분담금(ODA)」,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지식재산처 「WIPO 국제분담금(OD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해외활동(ODA)」)가 전년도에 내지 못한 금액(미납 청산분)을 포함한다. 사업설명자료에 미납 청산분이 원화로 제시된 6개 사업(미납 청산분이 스위스프랑으로만 제시된 WIPO 제외)의 2027년 정부안에는 전년도 미납 청산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4)①.

356) 국토교통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ODA)(4310-302) 4).

35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4); 同, 「추가질의 및 요구자료: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2026.3.17.;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각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4); 해양수산부, 「통합_부처소명의견서_연안국과의 협력」, 2026.; 산업통상부, 「수출·수주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 방안」, 2026.3.

358) 행정안전부, 「(기초조사보고서)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표4-1〉 및 사업설명자료 4);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13); 경찰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치안활동강화(ODA)(3133-312)」 13) 및 「(최종 평가의견서) 일반행정_경찰청_국제치안활동강화(ODA)」; 관세청, 「최종평가의견서」 및 사업설명자료 13)(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59) 국가유산청, 「ODA사업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 4) 및 「기초조사보고서_유산기반국제협력(ODA)」 〈표4-1〉; 조달청, 「ODA사업 사업설명자료」 4) 및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성과지표(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9,800백만원이 들어 있다. 2026년 예산에도 청산분이 있던 사업이 있어 이를 증액분(8,780백만원)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두 해의 청산분이 모두 확인되는 3개 사업(ILO·아시아생산성기구·우정사업해외활동)을 보면 증액분 4,089백만원 중 2,170백만원(53.1%)이 청산분 증가였다.[360]

나머지 의무분담금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기구·협약 의무분담금(ODA)」과 농림축산식품부 「FAO일반분담금(ODA)」은 2027년에 줄었고,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ODA)」은 2019년 이후 동결되었던 운영지원을 정상화하고 업무를 늘려 10.0% 늘었으나 미납 청산분은 없다.[361]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외교역량강화(ODA)」(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산업통상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2026년 미납 발생)과 외교부 본부의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에서도 환차손과 편성액 부족에 따른 미납이나 이·전용(외교부) 사례가 확인된다.[362] 의무분담금은 아니나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기구 출연(ODA)」도 유로화 기여금의 편성환율보다 집행 시점 환율이 높아 2023~2025년 매년 다른 비목에서 34백만원, 90백만원, 142백만원을 전용하여 납부하였다.[363]

---

360) 2026년 예산의 미납 청산분은 고용노동부 ILO 3,465백만원(CHF 2,087,590),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 약 166백만원($120,500×1,38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해외활동 0(2026년 산출내역에 미납 항목 없음)이다(각 부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3) 산출근거의 2026·2027년 산출내역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보건복지부 WHO·국제암연구소와 기상청 WMO는 제출자료의 2026년 산출내역에 청산분 원화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분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산분 증가(2027년 청산분−2026년 청산분)와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6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제기구·협약 의무분담금(ODA));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FAO일반분담금(ODA)·IFAD의무분담금(ODA)); 산림청,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ODA))(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6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관광외교역량강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3)·참고1·참고2; 산업통상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미납 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9)·다.2). 의무분담금 분류와 금액 집계는 국회예산정책처.

363) 재정경제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관세협력기구 출연(ODA)(2131-304)」(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산출근거·다.2) 주요 결산사항.

나. 분석의견

(1) 성과평가 판정 반영 점검 필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폐지·통합 판정을 받은 12개 평가단위는 모두 2027년 정부안에서 15% 이상 줄거나 통합되었으나, 외교부 국제기구협력은 통합 세부사업(다자협력) 기준으로는 5.0% 늘어 예산안 자료만으로는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하향식 지출구조조정과 과목 재편이 함께 작용하므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는 과목 재편으로 다른 세부사업에 통합된 평가단위의 경우 평가단위 기준 편성액과 미반영 사유를 판정-편성 대응표와 예산안 설명자료에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를 거쳐 사업을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판정하며, 감액 판정 사업은 2027년 예산을 2026년 예산보다 15% 이상 줄여, 폐지 판정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요구하도록 하였다. ODA 관련 평가단위는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 27개, 외교부 11개, 재정경제부 6개이다.[364]

판정은 열린재정에 공개된 최종 의견서의 최종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서면·대면평가 단계의 판정은 중간 단계로 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제중소기업협력 ODA는 서면평가에서 '폐지'였고 최종 의견서 평가요약표에는 '사업개선'과 '감액'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나, 제출자료 기재와 기획예산처 설명에 따라 최종 판정을 '사업개선'으로 보았다.[365][366] 외교부 11개 평가단위는 서면평가에서 모두 '감액'이었으나 최종 판정은 감액 5개, 사업개선 6개로 제출자료 기재와 같다.[367]

---

364)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보도자료), 2026.5.18., 본문 및 참고 1·2; 각 부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열린재정). 평가단위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365)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同, 「통합재정사업 대면심사 최종의견서: 국제중소기업협력ODA」, 2026.; 同, 「서면평가 소명의견서」, 2026.3.19.

366) 기획예산처,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67)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2026.1.; 同, 「대면평가 소명의견」, 2026.;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 2026., 단위별 평가요약표 '최종평가결과'(PDF 46·52·58·63·70·77·84·91·99·104·111쪽, 원문 쪽번호 1666쪽 부근부터);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각 사업 13). 최종 판정은 최종 의견서 평가요약표의 O 표시 위치로 판독함(국가원조 4개·협력사업지원·민관협력 '사업개선', 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신성장파트너십·인도적지원 '감액')이

평가단위별 판정과 2027년도 요구안·정부안을 비교하면,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15% 안팎이나 그 이상을 줄인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의 감액 단위는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26.1%),[368] 연안국과의 협력(요구안 18,924백만원, △19.3%),[369] 문화예술교육(요구안 893백만원, △14.95%, 정부안 △15.2%),[370]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요구안 2,732백만원, 15.0%에 근소하게 미달),[371] 국제산림개발협력(요구안 6,461백만원, 15.0%에 근소하게 미달)[372]의 5개이다. 외교부 감액 단위 가운데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요구안 108,171백만원)와 인도적지원(요구안 271,130백만원)도 각각 △14.99%로 15.0%에 근소하게 못 미치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요구안이 확인되는 감액 판정 단위 가운데 요구 단계에서 엄밀히 15% 이상 줄인 단위는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 연안국과의 협력, 국제기구협력(과목 재편 전 기준) 3개이다. 국제치안활동강화는 요구안에서 △12.4%였던 것이 정부안에서 △15.0%가 되었다.[373]

이처럼 감액 판정 단위는 대체로 요구 단계에서 15% 안팎을 줄였고,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26.1%→△47.3%),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15.0%→△35.3%), 연안국과의 협력(△19.3%→△26.5%), 국제치안활동강화(△12.4%→△15.0%)는 정부안 단계에서 감액 폭이 더 커졌다. 국제기구협력은 과목 재편 전 기준으로 요구 단계에서 46.2%를 줄였으나 정부안에서는 감액 폭이 23.0%로 조정되었다. 재정경제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EDCF 평가단위 중 사업진행컨설팅은 집행 부진이 지속된다는 이

며 사업설명자료 기재와 일치함. 판정 출처는 최종 의견서를 우선하고 서면·대면 판정은 중간 단계로 봄(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규칙). 단위 대응액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설명자료 프로그램 내역으로 다시 계산한 추정치.

368)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ODA,정보화)(2038-501)」(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가·3)·13); 同, 「(최종 평가의견서)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ODA,정보화)」, 2026.

369)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13); 同, 「통합재정 대면 소명자료」 및 「통합_부처소명의견서_연안국과의 협력」, 2026.; 同, 「통합재정평가 감액에 대한 의견」, 2026.6.8.

37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문화예술교육(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가·3)·13); 同, 「문화예술교육ODA 최종평가서」, 2026.

3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3)·13).

372) 산림청,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국제산림개발협력(ODA)(1331-301) 가.·13). 요구안 감액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73) 경찰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치안활동강화(ODA)(3133-312)」(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3); 同, 「(최종 평가의견서) 일반행정_경찰청_국제치안활동강화(ODA)」, 2026.

유로 '감액' 판정을 받아 2027년 정부안이 50.8% 줄었고, 대개도국차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개발협력증진,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은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다.[374]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판정과 2027년도 요구안·정부안(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 27개 평가단위와 외교부 11개·재정경제부 6개 평가단위)]

(단위: 백만원, %)

평가단위(부처)	서면	최종	2026 예산	2027		요구안/ 2026	정부안/ 2026
				요구안	정부안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행안부)	-	감액	4,980	3,680	2,623	△26.1	△47.3
국제치안활동강화(경찰청)	-	감액	4,339	3,801	3,688	△12.4	△15.0
문화예술교육(문체부)	-	감액	1,050	893	890	△15.0	△15.2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과기정통부)	사업개선 &감액	감액	3,214	2,732	2,080	△15.0	△35.3
연안국과의 협력(해수부)	사업개선 &감액	감액	23,443	18,924	17,228	△19.3	△26.5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데이터처)	-	폐지·통합	6,300	5,274	5,274	△16.3	△16.3
국제산림개발협력(산림청)	-	감액	7,601	6,461	6,420	△15.0	△15.5
국제중소기업협력ODA(중기부)	폐지	사업개선 (의견서: 사업개선·감액 병기)	10,289	12,129	11,926	17.9	15.9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행안부)	'감액' 문구	사업개선	4,729	5,042	5,030	6.6	6.4
문화유산 개발협력(유산청)	사업개선 &감액	사업개선	10,858	12,284	9,087	13.1	△16.3
개도국 기상·기후 지원(기상청)	감액	사업개선	3,178	3,110	3,110	△2.1	△2.1
관광지도자 벤치마킹(문체부)	'감액 필요성'	사업개선	1,080	947	767	△12.3	△29.0
전자조달 네트워크(조달청)	삭감 의견	사업개선	4,534	3,616	3,616	△20.2	△20.2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과기정통부)	감액	사업개선	4,172	4,990	4,990	19.6	19.6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과기정통부)	사업개선 &감액	사업개선	1,322	96	96	△92.7	△92.7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문체부)	-	사업개선	1,263	1,913	1,913	51.5	51.5

374) 재정경제부, 「2027년도 ODA 사업설명자료(대외기금, 정부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각 사업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같은 부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관련 자료(대외기금)」(기초보고서·1차 소명의견서·2차 소명의견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판정은 제출자료 기재 기준임.

평가단위(부처)	서면	최종	2026 예산	2027		요구안/ 2026	정부안/ 2026
				요구안	정부안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산업부)	감액	사업개선	31,207	35,577	35,469	14.0	13.7
개도국표준체계보급(산업부)	감액	사업개선	2,020	1,695	1,695	△16.1	△16.1
기후에너지산업 국제개발협력(기후부, 舊 국제협력강화)	-	사업개선	1,040	1,506	1,506	44.8	44.8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기후부)	'감액 사유' 기재	사업개선	21,526	17,873	17,873	△17.0	△17.0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기후부)	'감액 필수' 의견	사업개선	28,179	33,976	33,976	20.6	20.6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관세청)	-	사업개선	7,334	7,109	7,109	△3.1	△3.1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교육부)	-	사업개선	139,241	143,789	143,225	3.3	2.9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교육부)	-	사업개선	14,644	15,214	11,013	3.9	△24.8
국제농업협력→농업개발협력(농식품부)	-	정상추진 (제출자료: 증액권고)	41,440	30,182	29,338	△27.2	△29.2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국토부)	-	감액(제출자료)	32,956	30,013	27,992	△8.9	△15.1
디지털 교육 세계화(교육부)	-	감액(제출자료)	2,697	1,128	1,128	△58.2	△58.2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가원조	감액	사업개선	200,492	197,815	186,135	△1.3	△7.2
(외교부) 아프리카 국가원조	감액	사업개선	154,513	135,447	124,480	△12.3	△19.4
(외교부) 중남미 국가원조	감액	사업개선	50,498	52,472	47,586	3.9	△5.8
(외교부) 중동CIS 국가원조	감액	사업개선	55,537	107,819	100,222	94.1	80.5
(외교부)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감액	감액	127,245	108,171	107,954	△15.0	△15.2
(외교부) 글로벌연수	감액	감액	73,640	-	62,592	-	△15.0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과목 재편 전)	감액	감액	35,030	18,841	26,978	△46.2	△23.0
(외교부) 신성장파트너십	감액	감액	52,930	-	42,923	-	△18.9
(외교부) 협력사업지원	감액	사업개선	91,576	-	78,597	-	△14.2
(외교부) 인도적지원	감액	감액	318,943	271,130	270,299	△15.0	△15.3
(외교부) 민관협력사업	감액	사업개선	49,518	-	약49,705	-	약 0.4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	-	사업개선(제출자료)	34,222	26,717	26,717	△21.9	△21.9

평가단위(부처)	서면	최종	2026 예산	2027		요구안/ 2026	정부안/ 2026
				요구안	정부안		
(EIPP 포함)							
(재정경제부) 대개도국차관 (4개 지역 차관)	-	사업개선(제출자료)	1,627,534	1,569,392	1,569,392	△3.6	△3.6
(재정경제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	사업개선(제출자료)	273,066	235,301	235,301	△13.8	△13.8
(재정경제부) 사업진행컨설팅	-	감액(제출자료)	31,454	15,475	15,475	△50.8	△50.8
(재정경제부) 개발협력증진	-	사업개선(제출자료)	2,947	2,384	2,384	△19.1	△19.1
(재정경제부)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	사업개선(제출자료)	6,026	8,236	8,236	36.7	36.7

주: 1) 최종 판정은 열린재정 공개 최종 의견서(평가요약표의 최종 평가결과)를 우선함. '-'는 제출자료에서 서면 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외교부 국가원조 4개·협력사업지원·민관협력의 대면 판정은 '사업개선&감액'이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단위의 대면 판정은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 '사업개선&감액',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 '감액',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사업개선'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 최종 의견서에는 등급 표시가 없어 본문(목표치 하향 지적)과 제출자료의 '사업개선' 기재로 확인하였고, EDCF 5개 단위의 판정은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13) 기재임. 산업통상부 2개 단위의 서면 판정은 대면평가 소명의견서의 '서면평가 결과' 기재이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의 대면평가 결과는 '미정'이었음. 기후에너지환경부 2개 단위의 서면 등급은 서면평가 소명의견서에 인용된 평가보고서 원문 문구로 적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세계화의 '감액(제출자료)'은 부처 제출자료 13) 성과평가 결과란의 기재이며, 본문의 최종 의견서 기준 집계(12개 단위)에는 넣지 않음. 국제중소기업협력ODA는 최종 의견서 평가요약표에 '사업개선'과 '감액'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나 제출자료 기재와 기획예산처 설명에 따라 '사업개선'으로 적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은 제출자료 13)에 '정상추진'으로 적혀 있으나 국제기구 부담금이자 30억원 미만 사업으로 성과평가 제외 기준에 해당하여 표와 집계에서 제외함

2) 타 부처 2026년 예산은 기준목록, 요구안·정부안은 부처 사업설명자료 기준(재정경제부는 부처 제출 사업 목록 기준). 문화유산 개발협력의 부처 기준 2026년 예산은 11,120백만원(다자분 포함)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요구안 +10.5%, 정부안 △18.3%임. 관광지도자 벤치마킹의 요구안(947백만원)은 부처 검토의견(2026.10.)의 부처 제출 수치로, 사업설명자료 총괄표에는 767백만원으로 적혀 있음. 개도국 통계지원은 통합 세부사업 기준(평가단위 2026년 예산 3,690백만원)

3) 외교부 국가원조 4개와 인도적지원은 세부사업 기준, 나머지는 평가단위의 2026년 예산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설명자료의 프로그램 내역으로 다시 계산한 2027년 대응액(추정). 요구안은 사업설명자료 최종 제출본 기준이며 대응 세부사업 값이 확인되는 경우만 적음. 국제기구협력은 외교부 환류계획(정부안 기준)의 과목 재편 전 기준이며, 이를 통합한 다자협력(ODA)은 2026년 223,825백만원, 요구안 189,898백만원, 정부안 235,079백만원임

4) 과목 재편: 국제농업협력은 3개 세부사업으로 분할, 유산청은 유네스코 분담금 분리, 해수부는 2026년 다자협력 분리,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은 2025년 과목 기준(UNITWIN·브릿지 포함)으로 평가됨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2026.9.19.);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 외교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외교부)」(2026.9.);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소명자료·최종 평가의견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판정 반영 여부는 어느 단계의 판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375][376] 중간 단계인 대면평가 판정을 기준으로 하면 외교부 6개 단위('사업개선&감액'),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감액'), 국제중소기업협력ODA('사업개선'·'감액' 병기)가 더해져 감액이 포함된 판정이 20개가 되고, 15% 이상 감액·통합된 단위는 아프리카 국가원조(△19.4%)를 더한 13개(65.0%)로 반영률이 낮아진다.

또한 감액 판정 사업이 줄어든 대신 같은 부처의 평가 비대상 사업이 더 크게 늘어 풍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례도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국과의 협력이 6,215백만원 줄었으나 평가 대상이 아니던 해양수산 다자협력이 10,126백만원(+69.5%) 늘어 부처 ODA 합계가 38,010백만원에서 41,921백만원(+10.3%)이 되어 판정에 따른 감액 효과가 부처 합계에서는 상쇄되었다. 부처는 2028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연계한 신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력(3,799백만원), 국제기구와 연계한 신규사업, 기존 사업의 연차별 소요 증가를 증액 사유로 들었다.[377] 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부터 연안국과의 협력에 섞여 있던 국제기구 분담금·기여금 비목을 해양수산 다자협력으로 분리하였고, 다자협력 증액은 2026년 1월 발효된 BBNJ 협정의 이행과 제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를 위해 외교부 심의를 거친 신규 다자 ODA여서 감액 판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378] 다만 두 세부사업은 2026년 예산부터 이미 나뉘어 있어 2026년과 2027년 사이의 증감은

---

375)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同, 「통합재정사업 대면심사 최종의견서: 국제중소기업협력ODA」, 2026.; 同, 「서면평가 소명의견서」, 2026.3.19.

376)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2026.1.; 同, 「대면평가 소명의견」, 2026.;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 2026., 단위별 평가요약표 '최종 평가결과'(PDF 46·52·58·63·70·77·84·91·99·104·111쪽, 원문 쪽번호 1666쪽 부근부터);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각 사업 13). 최종 판정은 최종 의견서 평가요약표의 O 표시 위치로 판독함(국가원조 4개·협력사업지원·민관협력 '사업개선', 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신성장파트너십·인도적지원 '감액')이며 사업설명자료 기재와 일치함. 판정 출처는 최종 의견서를 우선하고 서면·대면 판정은 중간 단계로 봄(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규칙). 단위 대응액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설명자료 프로그램 내역으로 다시 계산한 추정치.

37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다자협력(ODA)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3)·신규1; 同, 「ODA 사업 세부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同, 「ODA 사업평가 관련 2차 자료 요청 답변」(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1) 해양수산 다자협력 증액 산출 근거.

378) 해양수산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과목 재편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부처 합계에서 감액 효과가 상쇄된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면평가 '폐지'에서 최종 '사업개선'으로 판정이 완화된 국제중소기업협력 ODA의 순증액(1,637백만원)은 2026년 신규 2건의 증액(4,710백만원)이 다른 내역의 감액을 웃돈 결과이다. 베트남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는 600백만원에서 3,120백만원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타운은 707백만원에서 2,897백만원으로 늘었으나, 베트남 사업은 운영기관 협약(2026.7.)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착수보고(2026.8.18.) 단계로 7월 말 실집행이 0원이고, 몽골 사업도 인테리어 설계 용역 선정평가(2026.8.20.) 단계로 실집행은 76백만원이다.[379]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사업이 2026년에 시작한 신규 사업이어서 협력국과의 협의·기획에 시간이 걸렸고, 9월 말 기준 베트남 사업 실집행은 402백만원(67%), 몽골 사업은 103백만원이며 몽골 사업 집행률은 10월 10일 기준 31.1%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 의견서의 지적은 ODA를 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관한 것이고, 기획예산처 협의 때 감액은 없었으며 4개 사업 모두 연도별 규모가 정해진 3~4년 계속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380]

최종 의견서는 "'27년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 적정"이라고 적었으나 감액률은 명시하지 않았고, 같은 의견서는 2026년에 시작된 베트남·몽골 사업도 2027년에 계속 운영할 사업에 포함하였다. 최종 판정이 '사업개선'이어서 15% 감액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의견서가 보조사업 예산 감축을 적정하다고 본 만큼 신규 2건의 2027년 증액분 합계(4,710백만원)는 집행 실적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381]

---

379)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산출근거·13)성과평가 결과·다.실집행내역·참고3·참고4;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재정사업 대면심사 최종의견서: 국제중소기업협력ODA」, 2026.; 중소벤처기업부, 「서면평가 소명의견서」, 2026.3.19. 15% 기준 금액, 정부안과의 차이, 신규 2건 증액분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80) 중소벤처기업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9월 말 실집행액과 집행률은 부처 제출 수치이다.

381)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산출근거·13)성과평가 결과·다.실집행내역·참고3·참고4;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재정사업 대면심사 최종의견서: 국제중소기업협력ODA」, 2026.; 중소벤처기업부, 「서면평가 소명의견서」, 2026.3.19. 신규 2건 증액분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또한 기획예산처의 범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ODA 예산 감축 과정에서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일부 단위에서 성과평가 판정과 무관한 하향식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성과 기반 예산 배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외교부·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사업개선·정상추진 29개 단위(재정경제부는 제출자료 기재 판정) 중 11개가 2027년 정부안에서 15% 이상 줄었고, 이 가운데 과목 재편이나 사업 내역 변경의 영향이 없는 단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도자 벤치마킹(△29.0%), 조달청 전자조달 네트워크(△20.2%),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17.0%), 산업통상부 개도국표준체계보급(△16.1%), 외교부 아프리카 국가원조(△19.4%),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기획(△21.9%)·개발협력증진(△19.1%)의 7개이다.

둘째, 각 부처가 감액 사유를 '지출구조조정'으로 적고 있어(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 △47.3%,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 △26.5%, '사업개선' 단위인 교육부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내 교원해외진출 △49.4%) 성과평가 판정에 따른 감액과 범정부 지출한도 축소에 따른 일괄 감액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협력국 정부와 협의의사록·차관계약(L/A)으로 다년도 연차별 투입을 약정한 계속사업까지 국내 재정 여건에 따라 감축되면 현지 공정 지연과 공여국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382)383)384)]

셋째, 지출구조조정 부담이 당장 집행 경직성이 낮은 신규사업 발굴·사전타당성 조사(KOICA 사업관리지원 내 형성기획 △70.0%)로 전가되면 중기 사업 파이프라인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세부사업 예산 증감만으로는 판정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5% 이상 줄어든 11개 단위 중 나머지 4개는 평가단위와 2027년 세부사업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 내역이 바뀐 경우여서 감소 폭을 지출구조조정의 결과

382)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ODA,정보화)(2038-501)」(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가·3)·13); 同, 「(최종 평가의견서)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ODA,정보화)」, 2026.

383)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13); 同, 「통합재정 대면 소명자료」 및 「통합_부처소명의견서_연안국과의 협력」, 2026.; 同, 「통합재정평가 감액에 대한 의견」, 2026.6.8.

384) 교육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보고서: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2026., pp.1501~1505;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로만 보기 어렵다. 정상추진(제출자료: 증액권고)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은 3개 세부사업으로 나뉘면서 그 가운데 농업개발협력이 29.2% 줄었고,[385]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개발협력(△16.3%)은 유네스코 분담금이 분리되었으며, 교육부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24.8%)은 2025년 과목 기준으로 평가된 단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사업개선)은 사업대상국을 줄이고 "외교부 심의결과에 따라 '27년 사업 미요구"한 협력채널 내역이 없어지면서 92.7% 감액되었다.[386]

판정 반영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을 잇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정은 평가단위별로만 공개되고 어느 세부사업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예산안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 의견서의 판정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국제중소기업협력ODA의 '사업개선'·'감액' 병기). 기획예산처는 2026년부터 평가보고서 원문(6월)과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조조정 실적(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을 열린재정에 공개하고,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업은 부처가 미반영 사유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387] 기획예산처는 성과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환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변동은 평가가 아닌 편성의 영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산요구 기준 부처별 환류계획과 미반영 사유서는 2026년 8월 10일 열린재정에 공개되었고, 정부안 기준 환류계획과 판정·예산 편성을 사업별로 대조한 표는 2026년 11월 2일 열린재정에 공개되었다.[388] 다만 미반영 사유서는 부처가 각자 공개하는 방식이어서 30개 부처·청에 흩어진 ODA 세부사업의 반영 사유를 한데 모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① 과목 재편으로 평가단위가 다른 세부사업에 통합된 경우 판정-편성 대응표에 평가단위 기준 편성액과 미반영 사유(공약·법정의무·단위재편 등)를 함께 적고, ② 과목 구조를 개편할 때 평가단위와 새 세부사업·내역사업의 대응 관계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 환류계획처럼

385)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평가의견서」, 2026.; 同, 「2027년 ODA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6) 11)·13) 및 각 사업 〈변경/이관 내역〉.

3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387)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보도자료), 2026.5.18., 참고 2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

388) 기획예산처,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정부안 기준 환류계획·대조표의 열린재정 공개일(2026.11.2.)은 기획예산처 확인.

평가단위별 편성 결과를 이미 제시한 경우에도, 통합 세부사업의 내역이 프로그램 단위로 재분류되면 그 금액을 예산안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는 ③ 제출자료에 최종 의견서의 판정과 감액률을 그대로 옮겨 적고, ④ 감액 판정 사업은 줄었으나 같은 부처의 평가 비대상 사업이 늘어 부처 합계가 늘어난 경우(해양수산부)에는 미반영 사유와 신규 편성·과목 재편 등 부처 ODA 합계의 증감 사유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2) 판정 변경 사유 공개 필요

서면평가와 최종 판정이 모두 확인되는 25개 평가단위 중 18개는 판정이 완화되었으나 14개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사실 오류를 바로잡은 완화도 있는 만큼 문제는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므로, 기획예산처는 평가단이 판정 변경 사유를 최종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는 권고와 상충하는 편성 사유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밝힐 필요가 있다.

서면평가 판정과 최종 판정이 모두 확인되는 25개 단위 중 18개는 최종 판정이 서면평가보다 완화되었고, 더 엄격해진 사례는 없다. 조달청은 서면평가가 해당 사업에 없는 예산항목(초청연수 12.3억원, IT 컨설팅 18억원)을 근거로 삭감을 제시하였으나 부처 소명으로 철회된, 사실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이다.[389] 관광지도자 벤치마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감축량 직접 정량화 요구 문구 조정),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예산 안정화)은 소명을 받아들이거나 변경 사유를 적은 사례이다. 타 부처의 나머지 8건(맞춤형 새마을운동, 문화유산 개발협력, 기상청 개도국 지원, 국제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개도국표준체계보급)은 변경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외교부 6개 단위도 마찬가지이다.[390][391][392]

---

389) 조달청,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서면평가 소명자료」, 2026.; 同,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공개보고서(최종 평가의견서)」, 2026.; 同, 「ODA사업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90)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의견서)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同, 「(대면평가 소명자료)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8)·참고1.

391) 기상청, 「(대면평가 소명의견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및 「(최종

특히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은 서면·대면 평가와 부처 소명 양식의 '평가결과 정리'까지 '감액'이었고, 부처는 정상회담 후속조치(AI ODA) 이행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종 의견서에는 '사업개선'으로 표시되었고 2027년 정부안은 19.6% 늘었다.[393]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도 서면평가에서 '감액'이었고 대면평가 결과는 '미정'이었으며, 부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ODA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 지시를 들어 감액 의견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최종 의견서는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재설계하라고 권고하면서 '사업개선'으로 판정하였으나 변경 사유는 적지 않았고, 2027년 정부안은 13.7% 늘었다.[394]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의 증액 내역을 보면, 평가위원은 신규 AI 디지털 전파관리 내역이 기존 기술정책협력 사업의 정책자문과 차별화되어야 하고,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사업목표로 명시한 것은 OECD DAC 비구속성 원조 원칙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395] 이 내역은 300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으로 늘었다. 부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개도국 전파관리 역량 강화이고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부수적 기대효과라고 설명하였다. 신규 기술혁신실증랩(이집트, 690백만원)은 협의의사록·협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로 부처는 사업요청서(PCP)와 협력국 기관 요청 공문으로 사업 수요를

의견서)」, 2026.; 국가유산청, 「통합재정사업평가 대면평가 소명자료: 유산기반국제협력(ODA)」·「최종 평가의견서」·「ODA사업 세부사업별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평가_소명의견서) 개발도상국관광지도자벤치마킹연수사업(ODA)」 및 「최종평가서」, 2026.

392)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同, 「통합재정사업 대면심사 최종의견서: 국제중소기업협력ODA」, 2026.; 同, 「서면평가 소명의견서」, 2026.3.19.

3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면평가 소명의견 양식_ODA 사업」(xlsx) ODA 시트 No.5·76·115;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정보화1분과, 「평가요약표·평가 의견서」(개도국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대면 단계의 '평가결과 정리'는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이 '감액'이나 최종 의견서는 '사업개선'에 표시되어 있고, 변경 사유는 제출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394) 산업통상부, 「(서면평가) 소명의견서」·「(대면평가) 소명의견서」(xlsx)·「(최종평가의견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최종결과: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3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면평가 소명의견 양식_ODA 사업」(xlsx) ODA 시트 No.5·76·115;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정보화1분과, 「평가요약표·평가 의견서」(개도국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제출자료 산출근거(K-Lab 2,000백만원, 방송환경 개선 700백만원)는 같은 자료에 붙은 2027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요구액 기준) 표의 국가별 금액 합계(K-Lab 11.5억원, 방송환경 31억원)와 다르다. 부처는 K-Lab은 시행계획상 사업비도 2,000백만원이고, 방송환경 개선은 31억원 가운데 △△△△ 사업(24억원)이 현지 사정으로 2028년 재개로 바뀌어 피지 사업(7억원)만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396] 한편 2026년 7월 말 시행기관 실집행률은 36.6%이다.[397]

'사업개선' 권고와 2027년 산출근거가 상충하는 사례도 있다.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은 "몽골 … '26년 완공분까지만 기존 계획대로 집행하되, 차기 신규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선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타지키스탄 국립어린이도서관 신축 1차년도 1,913백만원(2027~2029년 총 11,36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자는 '공모 예정', 수행자는 '미정'이다.[398] 문화체육관광부는 몽골 사업이 2026년에 끝났고, 타지키스탄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무조정실·외교부로부터 2027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상 타당성 승인을 받았으며, 부지를 확보(2026.8.3.)하고 '사업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계획을 환류계획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399] 최종평가서는 실집행률이 일정 기준(예: 50%)에 못 미치면 다음 연도 예산을 자동으로 감액하는 장치도 권고하였다.[400]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는 "사업의 양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고를 받았으나 정부초청장학(GKS)이 6,183백만원 늘었고, 교원해외진출은 2,199백만원(△49.4%) 줄었다.[401] 다만 교육부는 이 권고가 질적 관리에 집중하라는 취지이고, 증

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3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1)·3)·다. 결산표·붙임 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ODA) 평가요약표·평가 의견서」, 1-2·2-1.
39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3)·참고2; 同, 「해외공공도서관 조성 최종평가서」, 2026.
399) 문화체육관광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3133-302) 가.·3)·7)·11)·다.1)·참고2; 문화체육관광부, 「해외공공도서관 조성_최종평가서」, 2026.; 문화체육관광부, 「추가질의 및 요구자료_해외공공도서관 조성」, 2026.3.17. 2025년 기능별 집행 대비 실집행 비율(41.8%)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01) 교육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보고서: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2026., pp.1501~1505;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액은 2024년 이후 선발되어 재학 중인 장학생의 장학금 소요 증가(산출근거상 기존 재학생 5,300명→5,665명)에 따른 것이며 2027년 신규 선발 목표는 1,900명으로 2026년(1,904명)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맞춤형 새마을운동("보수적이고 단계적인 사업 운영" 권고에도 정부안 +6.4%, 중기재정계획상 2029년 11,686백만원까지 확대 계획, 2027년 르완다 신규 내역의 협의의사록·협약 체결 여부 미기재),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수혜자 기반 산출 부재 지적에도 사업단 단가 374→406.7백만원), 감액 판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국가별 일괄 인상 지적에도 존속 2개국 단가 350→445백만원)은 부분적으로 상충한다.[402)][403)][404)][405)]

교육부는 사업단별 예산 규모가 달라 평균 단가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나, 산출근거는 2026년 예산 삭감 때 낮춘 단가를 패키지형 지원 내실화를 위해 다시 올렸다고 적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국가별 단가가 1년차 정책컨설팅과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설명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새마을운동 증액이 '혁신적 농촌공동체' 다부처 패키지의 2년차 연차계획에 따른 것이며 르완다 신규 내역의 협의의사록·협약은 2027년 예산 확정 뒤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406)]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지표를 금액 기준으로 변경)과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만족도 지표 보완)는 권고를 후속조치로 반영하였고,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부처 안에서 총괄과 구축을 나누고 시스템 개발은 전문 용역사가 맡고 있다는 소명이 평가 과정

---

402)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의견서)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同, 「(대면평가 소명자료)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8)·참고1.

403)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 2026.9.22., 가.·3)·8)·다.1)·참고3 및 「(기초조사보고서)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Ⅱ·Ⅳ;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ODA)」 가.·다.; 기상청, 「사업설명자료_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3)·다.1) 및 「(기초조사보고서)」 Ⅳ; 관세청,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ODA 사업 발췌」 다. 및 「최종평가의견서」 3-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2026.9.28.,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 가.·다.(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404) 교육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보고서: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2026., pp.1497~1500;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4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문화예술교육(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가·3)·13); 同, 「문화예술교육ODA 최종평가서」, 2026.

406)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각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에서 받아들여졌다.[407][408] 한편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105개 사업 중 76개(4,420억원, 금액의 52.9%), 외교부 본부 국제기구 분담금 10개,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연 등 14개(재정경제부분 3,863억원)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다.[409]

이 밖에도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는 서면평가에서 최종 판정으로 바뀐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없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부처 사업 금액의 52.9%를 다루지 않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ODA 평가와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획예산처는 서면·대면평가는 효력이 있는 판정이 아니고 최종 판정은 부처의 추가 소명과 자료 제출에 따라 외부 평가단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여서 중간 판정의 변경 사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개선' 판정은 예산의 증감을 규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410]

그러나 판정이 완화된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획예산처는 ① 서면·대면평가에서 최종 판정으로 바뀐 경우 평가단이 변경 사유(사실 정정, 소명 수용 등)를 최종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② 판정이 완화된 뒤 증액된 사업(개도국정보통신방송개발협력지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과 '사업개선' 권고와 상충하는 신규 편성(해외 공공도서관 신축)은 소관 부처가 판정 변경 경위와 착수 준비 상황을 예산안 설명자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소관 부처는 '사업개선' 권고의 이행계획을 다음 연도 산출근거에 명시하고, 국무조정실은 ODA 평가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

---

407)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13); 관세청,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ODA 사업 발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및 「최종평가의견서」, 2026.

408) 조달청,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서면평가 소명자료」, 2026.; 同,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공개보고서(최종 평가의견서)」, 2026.; 同, 「ODA사업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409)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성과평가 비대상 사업의 수·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2026.1.; 同, 「대면평가 소명의견」, 2026.;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 2026., 단위별 평가요약표 '최종 평가결과'(PDF 46·52·58·63·70·77·84·91·99·104·111쪽, 원문 쪽번호 1666쪽 부근부터);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각 사업 13). 최종 판정은 최종 의견서 평가요약표의 O 표시 위치로 판독함(국가원조 4개·협력사업지원·민관협력 '사업개선', 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신성장파트너십·인도적지원 '감액')이며 사업설명자료 기재와 일치함. 판정 출처는 최종 의견서를 우선하고 서면·대면 판정은 중간 단계로 봄(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규칙). 단위 대응액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설명자료 프로그램 내역으로 다시 계산한 추정치.

410) 기획예산처,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가 결과를 사업 단위로 대조하여 종합시행계획 심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성과지표 ODA 정합화 필요

부처·국내기관이 시행하는 직접·출연·보조 80개 사업 중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둔 사업은 7개(8.8%)이고, 국내 지표를 빌려 쓴 사업이 8개, 지표가 없는 사업이 13개였다. 따라서 소관 부처는 국내지표 차용 사업부터 2028년 성과계획서에 협력국 결과지표를 두고, 국무조정실은 국개위 논의를 거쳐 통합성과지표를 계속사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는 사업설명자료에 적힌 대표 성과지표를 협력국 기관·주민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사업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세는 산출지표, 과정·투입 지표, 사업과 관계없는 국내 정책·기관 지표를 빌려 쓴 국내지표 차용, 국내 기업의 수출·조업쿼터를 측정하는 국내 수혜 지표, 지표 없음으로 나누었다. 국제기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분담금 등 72개와 융자 5개, 기금 운영비 2개를 뺀 직접 수행·출연·보조 80개 사업이 분석 대상이다.[411]

이 결과는 일부 사업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결과지표를 둔 사업은 8.8%에 그치고 국내지표를 차용한 사업도 8건(분담금 등을 포함하면 14건)에 이른다. 과정·투입 지표(36개)와 지표 없음(13개)을 더하면 80개 중 49개(61.3%)는 사업의 산출이나 결과를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고 볼 만한 사례(국제중소기업협력 3년 연속 182~433%, 개도국표준체계보급 2025년 3개 지표 167~333%)도 있고,[412] 같은 사업의 지표가 자료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413] 지표가 사업관리에

411) 외교부·재정경제부와 각 부처·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4) 성과지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지표 유형 분류는 국회예산정책처.

412)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중소기업협력ODA」, 4)① 성과지표 표('수출지원기업 수출액 증가율', 달성도 2023년 191%, 2024년 433%, 2025년 182%);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4)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4); 농촌진흥청, 「ODA 사업설명자료」 (1) 4);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4)①(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의 2025년 인력양성·네트워크·제도도입 실적은 사업설명자료에 21건·10건·10건(달성도 210%·333%·167%), 같은 부처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표4-1〉에 11건·6건·8건(110%·200%·133%)으로 서로 다르며, 본문은 사업설명자료 기준임.

413) 국가유산청, 「ODA사업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 4) 및 「기초조사보고서_유산기반국제협력(OD

실제로 쓰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ODA 세부사업의 대표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지표 유형	직접·출연·보조	비중	분담금 등	주요 사례
결과(협력국 변화)	7	8.8	1	KOPIA 시범사업 생산액 증가율, 농산물 생산량 증가율(농업개발협력), 보건 ODA사업 이용증가율(KOFIH)
산출	12	15.0	12	장학생 초청·파견 실적(GKS), 취약계층 생활수준 개선 인원(인도적지원), 인력양성 건수(표준체계)
과정(만족도 포함)	28	35.0	9	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KOICA 출연 17개 공통), 국제개발사업 심의회 상정 안건 수(경제협력기획), 현지 수혜자 만족도(문화예술교육)
투입	8	10.0	0	EDCF 차관 승인액 규모(EDCF 부대사업 5개·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건립 공정률(해외 공공도서관)
국내지표 차용	8	10.0	6	임금체불 피해해결률(고용노동부), 시설물 안전 조치율(국토교통부), 재난안전 기술수준, 통계의 유용성, ICT 국제협력 활동 수혜자 만족도, 우편사업 경영수지
국내 수혜(수출·쿼터)	4	5.0	1	수출지원기업 수출액 증가율, 지원액 대비 수출·수주 실적, 조업쿼터확보량
없음	13	16.3	43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ODA 선진화(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계	80	100.0	72	-

주: 1) 사업설명자료의 '4) 성과지표' 기재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함.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에만 지표가 있는 경우(관세청·기상청)는 '없음'으로 분류함

2) '분담금 등'은 국제기구에 분담금·기여금·신탁기금 등으로 납부하고 기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다자성양자 포함)임. 수혜자 만족도는 과정으로, 현업적용도·액션플랜 적용도·주민참여율은 결과로, 교육 이수율은 과정으로 분류함. KOICA 출연 17개는 공통 지표('개도국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목표 달성도', 수혜자 수×만족도)로 과정에, EDCF 부대사업·이차보전의 'EDCF 차관 승인액 규모'는 투입에 분류함. 비중 합계는 반올림으로 100.0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표4-1〉; 조달청, 「ODA사업 사업설명자료」 4) 및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성과지표(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원인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첫째, ODA 사업이 소관 부처 국내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3개 사업이 같은 국내 근로감독 지표를 쓰는 것은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국내 프로그램의 지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결과이다.[414][41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의 '재난안전 기술수준'도 상위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지표를 옮겨 적은 것이다.

둘째, 일부 부처는 사업 목적을 국내 수혜에 둔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수출·수주"를 목표로 명시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ODA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익 실현, 즉 조업쿼터 확보"라고 소명하였다.[416][417] 다만 해양수산부는 이 표현이 과도하였고, 사업의 기본 목적은 연안 개발도상국의 수산·해양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며 조업 환경 개선은 우호 협력에 따른 부수적 성과라고 설명하였다.[418] 성과평가 평가위원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의 '지원액 100억원당 수출·수주 건수' 지표는 금액이 아닌 건수로 측정하여 1억원 수출과 100억원 수출이 같게 계산되고, 목표도 '매년 5% 상향'이라는 기계적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하였고, 산업통상부는 이에 따라 지표를 '지원액 100억원당 수출·수주 금액'으로 바꾸었다. 평가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강화사업에도 부처 전체의 해외진출 실적이 아닌 사업 고유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419]

---

414)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ILO 분담금·한-ILO 협력사업)(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각 4).

415)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각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16)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13); 同, 「통합재정 대면 소명자료」 및 「통합_부처소명의견서_연안국과의 협력」, 2026.; 同, 「통합재정평가 감액에 대한 의견」, 2026.6.8.

417)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각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4); 해양수산부, 「통합_부처소명의견서_연안국과의 협력」, 2026.; 산업통상부, 「수출·수주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 방안」, 2026.3.

418) 해양수산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19) 산업통상부, 「(서면평가) 소명의견서」·「(대면평가) 소명의견서」(xlsx)·「(최종평가의견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최종결과: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ODA 사업 평가 관련 자료」 및 (별첨2) 「통합재정성과평가 관련자료」(국제협력강화사업·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의 기초조사보고서·서면·대면 소명의견서·최종 평가의견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셋째, 2027년부터 도입되는 통합성과지표는 신규사업에만 적용되어 계속사업 중심인 부처 사업에는 당분간 영향이 작다. 분담금 등 72개 사업은 구조상 결과지표를 두기 어려우므로 국제기구의 성과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① 국내지표를 차용한 8개 사업과 지표가 없는 13개 사업의 소관 부처는 협력국 기관·주민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2028년 성과계획서부터 1개 이상 두고, ② 최근 3년 달성도가 150%를 넘는 지표는 실적 추세를 반영해 목표를 다시 정하며, ③ 제출자료와 성과계획서·성과평가 자료의 지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④ 분담금 등 사업은 기구의 연차 성과보고 결과를 제출자료에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개위 논의를 거쳐 2027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는 통합성과지표를 계속사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맞춤형 새마을운동)·산업통상부·관세청·경찰청의 지표 개선 사례는 성과평가가 지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부처 간 유사사업 정비 필요

같은 분야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지거나(분절) 기능 이관으로 같은 이름의 사업이 두 부처에 나뉘었으나(분할), 부처 간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교부는 유사 유형의 부처 사업에 대한 중복방지 검토를 강화하여 부처별 역할을 정리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내역을 종합시행계획에 담으며, 같은 이름으로 나뉜 사업의 두 소관 부처는 역할 구분이 내역사업 단위에서 지켜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모를 보면, 159개 사업의 중앙값은 41.9억원이고 100억원 미만이 101개(63.5%)이며, 그중 85개가 외교부·재정경제부 외 28개 부처·청의 사업이어서 소규모 사업이 이들 부처에 몰려 있다(국회예산정책처 계산).[420] 이 평가는 동일 협력국·분야·수단, 사업기간 중첩, 평가위원 지적,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의 유무를 기준으로 유사·중복 여부를 판정하였고, 그 결과는 두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 같은 분야의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진 '분절' 유형이다. 조기경보 3개 사업(행정안전부

420)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2027년 예산안이 0원인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ODA)을 제외한 159개 사업의 규모 구간별 분포·비중·중앙값(80번째 값 4,188백만원)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 기상청 개도국 기상·기후 지원)은 분야·수단과 사업기간이 겹치나 협력국이 달라 '중복'보다는 같은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진 '분절'에 해당하고, 기상청 평가위원도 KOICA 등과의 중첩 가능성과 중복 회피 구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421] 다만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기상위성을 활용한 기상 관측·예측 역량 강화에,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정책·법제도 확산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하천 수위 기반 홍수 경보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어 기능이 다르고, KOICA 사업과의 중첩은 외교부의 무상원조 시행계획 심의에서 검토된다고 설명하였다.[422]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기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4개 세부사업·내역사업(2027년 합계 4,677백만원)으로 나뉘어 있다.[423] 세 부처는 단일 재원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소관 업무에 따라 WPRO와 협력 분야를 따로 정해 기여하며(보건복지부는 보편적 건강보장·디지털헬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팬데믹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기여금 배분 전 사전 회의 등으로 내용을 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424] 부처 간 역할분담을 정한 문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27년 정부안에 국제기구부담금(다자성양자) 방식의 동남아시아 초국가 조직범죄 대응 지역협력 프로젝트(1,000백만원)를 신규 편성하였고, 서면평가 소명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수요를 고려하라는 평가위원 지적에 대해 기존 KOICA 협력사업 7개에 더해 신규 KOICA 협력사업 7개(공공협력·공모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경찰청은 협력국 치안기관과의 협력망을 만드는 데에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더 효과적이어서 자체 사업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하였

421)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2731-311)」 2)·참고1 및 「같은 자료: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2932-300)」, 2026.9.22.; 기상청, 「사업설명자료_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3) 및 「(최종의견서)」(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422) 기상청·행정안전부, 각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23)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WHO 사업분담금 지원(ODA)」 3) 및 「같은 자료: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ODA)」 3); 질병관리청,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ODA)」 (1) 3)(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2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각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다. 이와 별도로 평가위원은 국제중소기업협력에 대해 여러 부처 ODA의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425] 초청연수형 사업은 KOICA 부처연수지원으로의 통합이 추진 중이다.[426]

둘째, 같은 명칭의 사업이 두 부처에 나뉜 '분할' 유형이다.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은 산업통상부(1,886백만원)와 기후에너지환경부(1,050백만원)에 나뉘어 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는 2026년 정부안에서 824백만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다고 적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목록의 2026년 예산(824백만원)도 이와 같다.[427][428] 두 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2025.10.)으로 에너지 관련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스리랑카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소 구축 지원과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디지털에너지시스템 전략 수립 지원 내역을 옮겨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산업분야 국제 탄소감축 준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국제협력을 맡는 역할 분할이어서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29] 두 부처는 협의를 거쳐 사업별 지원 분야를 명시하고 부처별 전문성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430]

반면 행정안전부·KOICA·농촌진흥청의 '혁신적 농촌공동체' 다부처 패키지(라오스: 43억원·276억원·37억원)는 부처별 역할과 금액이 표로 제시되어 '연계'로 분류되고,[431] 관세청 WCO 연수(317백만원)의 KOICA 이관,[432] 국가데이터처가 부

---

425) 경찰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치안활동강화(ODA)(3133-312)」(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同, 「(서면평가 소명자료) [국제치안협력국]」, 2026., 2-1③;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재정사업 대면심사 최종의견서: 국제중소기업협력ODA」, 2026.

42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부처연수지원); 외교부, 「대면평가 소명의견」, 2026., 글로벌연수(ODA).

427)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참고1·참고2; 同, 「수출·수주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 방안」, 2026.3., Ⅱ.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동명 사업 금액은 기획예산처 기준목록(2026.9.19.).

428)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ODA 사업 평가 관련 자료」 및 (별첨2) 「통합재정성과평가 관련자료」(국제협력강화사업·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의 기초조사보고서·서면·대면 소명의견서·최종 평가의견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429) 산업통상부, 「세부사업(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의 부처별 분할 사유와 통합 계획」(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정처 요구자료(ODA 관련) 제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 재원을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옮긴다고 적었다.

430)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각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31)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국회

처 안의 양자·다자 통계지원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친 것[433]처럼 조정이 작동한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의 베트남 사업도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검토를 거쳐 대상지역을 4개 성에서 1개 성으로, 총사업비를 200억원에서 69억원으로 줄이는 조건부 적정 결정을 받았다(2025.5.14.).[434]

한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재정경제부 EIPP의 총괄기관이면서 국토교통부 K-City Network의 수행기관이다. KIND는 K-City Network로 22개국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컨설팅 33건을, EIPP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계획 자문 22건 등을 지원하였다고 제출하였고, 홈페이지에서는 K-City Network를 2020~2026년 29개국 61개 사업으로 소개한다(집계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임).[435] 다만 K-City Network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일반예산(스마트도시 산업육성)으로 편성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이탈리아·영국 등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436] 이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ODA 사업이 아니고 사업 공고문에도 ODA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437]

따라서 이 평가는 K-City Network를 ODA 사업 간 유사·분절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두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다르고 K-City Network도 사업 선정 단계의 심의에서 국가·분야 중복을 검토한다고 설명하였으며, 2026년 성과평

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참고3.

432) 관세청,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ODA 사업 발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433) 국가데이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결과보고서: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2026.;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 통계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3); 同, 「(자료제출서) ODA 사업평가 관련」, 2026.9.23.

434) 행정안전부, 「2027년 개도국 재난관리 역량강화(ODA) 산출 근거」(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6. 2027년 예산안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근거해 2차년도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등에 22.18억원을 편성하였다.

43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별첨1. KIND 일반현황」(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KIND 홈페이지 'K-City Network' 및 'KCN 및 EIPP 사업' 프로젝트 현황(2026.10.1. 접속). K-City Network 실적은 기관자료(22개국 33건, 계획수립 컨설팅 기준)와 홈페이지(29개국 61개 사업)가 다르며, 집계 범위 차이로 보여 병기함.

4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 2026.9.18. 시행), 제30조.

437) 국토교통부,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同, 「2027년도 예정처 예산안 요구자료(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2027년 예산안의 국토교통부 ODA 세부사업은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기타국제기구분담금·UNESCAP 분담금·유엔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의 4개임).

가 의견서도 경제협력기획(ODA)이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복을 검토하므로 유사중복 우려가 낮다고 보았다.[438] 다만 같은 기관이 ODA 사업과 비ODA 사업에서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함께 자문하므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두 사업의 대상국과 과제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유형에 공통된 원인은 사업 단위의 조정 장치가 약하다는 점이다. 종합시행계획에 연계사업의 역할분담을 담고 주관기관이 무상원조 간 중복을 심사하고는 있으나[439], 국개위의 연계·중복 조정은 사후적 성격이 강하고, 부처 제출자료에는 다른 부처·KOICA 사업과의 관계를 적는 항목이 없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이 세부사업 분할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다부처 패키지, 관세청의 연수 이관,[440] 국가데이터처의 부처 내 세부사업 통합은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국개위 평가전문위원회가 2026년에 착수한 '다지역 유사 사업'(8개 기관, 10개 유형, 114개 사업, 535.19억원) 평가는 이를 제도화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441]

이러한 진단에 따라 외교부는 ① 조기경보·WHO 지역기구 기여·초청연수 등 유사 유형의 부처 사업에 대한 중복방지 검토를 강화하여 부처별 고유 기능과 협력국·수단을 함께 정리하고, 국무조정실은 ② 그 검토 내역을 종합시행계획에 포함하며, ③ 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결과를 2028년도 예산안 제출 시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④ 같은 명칭으로 분할된 세부사업(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에 대해 두 부처가 제시한 역할 구분이 내역사업 단위에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명을 역할에 맞게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부처 사업의 통합·이관 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무상 시행기관 정비 방향과 함께 예산안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

438) 재정경제부, 「(최종 평가의견) 경제협력기획(ODA) 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1-3·3-2·5.

439) 국무조정실은 연계사업과 전략패키지 사업의 기관 간 역할분담과 내용을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의결하고 있고, 무상원조 간 중복사업은 주관기관 사업심사 단계에서 조정하며(유상원조는 시행기관이 EDCF 하나여서 유상 간 중복은 생기지 않음), OECD 사업분류에 따른 유형·지역·형태·분야별 분류를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또한 조기경보·WHO 지역기구 기여·초청연수 사업은 주관기관의 유사·중복 검토를 거쳐 개별사업으로 승인되어 종합시행계획에 포함·의결되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에 수록된 무상 간 중복 방지 조정은 1건(1개 사업)이다.

440) 관세청,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ODA 사업 발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441)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국개위 제56-3호), 2026.2.26., 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5) 분담금 편성 현실화 필요

8개 부처 12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사업에서 편성환율 괴리, 과소 편성, 납부 시차로 미납이나 이·전용이 반복되고, 2027년 정부안에는 6개 사업의 미납 청산분 9,800백만원이 들어 있어, 미납 청산분이 정규 분담금 증액과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는 기구 청구액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적정 분담금을 편성하고, 소관 부처는 미납 청산분을 따로 표시하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달러 외 통화에도 예산 편성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무분담금은 국제기구가 분담률에 따라 회원국에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금액으로, 대부분 스위스프랑·유로·미화 등 외화로 청구된다. 원화 예산은 납부 전년도 예산 편성 때 정한 환율(편성환율)로 산정되므로, 납부 시점 환율이 편성환율보다 높거나 기구가 분담금을 늘리면 편성액이 모자라 미납이 생기고, 이 미납액은 대개 다음 연도 예산에 청산분으로 반영된다.[442]

분담률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분담금 16개(외교부 본부 3개 포함) 중 2027년에 증액된 10개 가운데 7개 세부사업이 전년도 미납 청산분을 포함한다. 사업별 청산분은 보건복지부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 2,619백만원·「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 167백만원, 고용노동부 「ILO분담금(ODA)」 4,262백만원, 기상청 「WMO의무분담금(ODA)」 1,213백만원,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약 591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해외활동(ODA)」 948백만원, 지식재산처 「WIPO 국제분담금(ODA)」 약 118백만원이다.[443]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외교역량강화(ODA)」(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와 외교부 「유엔 정규예산

442) 재정경제부,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26-39호, 2026.1.2. 시행), 제5조제1항; 기상청·지식재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각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사유 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443)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8);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참고3;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ILO 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4)·참고2; 기상청, 「사업설명자료_WMO 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2)②·3)·참고1;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8)·붙임1(원화 환산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396,504×1,49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우정사업해외활동(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참고1(미납분은 UPU 700백만원과 KPG 248백만원임); 지식재산처, 「ODA 사업설명자료: WIPO 국제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9)(원화액 약 118백만원은 지식재산처 답변자료, 2026.10. 기준).

분담금 납부(ODA)」·「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2026년에 미납이 새로 생긴 산업통상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까지 포함하면 총 8개 부처 12개 세부사업에서 미납 또는 환차손 전용이 발생하고 있다.

9월 사업설명자료에 미납 청산분이 원화로 제시된 6개 사업(미납 청산분이 스위스프랑으로만 제시된 WIPO 제외)의 2027년 미납 청산분 합계는 9,800백만원이다. 2026년 예산에도 미납 청산분이 들어 있던 사업(고용노동부 ILO 3,465백만원,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 약 166백만원)이 있으므로 증액분(8,780백만원)과 바로 비교하기보다 두 해의 청산분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두 해의 청산분이 모두 확인되는 3개 사업(ILO·아시아생산성기구·우정사업해외활동)의 증액분 4,089백만원 중 청산분 증가는 2,170백만원(53.1%), 정규 분담금 증가는 1,919백만원이다. 감액된 산업통상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2026년 미납 발생)·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분담금에는 미납 청산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기구부담금(정보화)의 증액(+35.2%)은 환율 상승과 UN ESCAP ICT 개발센터(APCICT) 지원금(971백만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에서 이 세부사업으로 옮겨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444]

[의무분담금 사업의 2027년 증액과 미납 청산분]

(단위: 백만원)

사업(부처)	예산		증감	미납 청산분	미납 원인 (제출자료에 근거한 추정)
	2026	2027안			
WHO 의무분담금(복지부)	23,872	26,735	2,863	2,619(CHF 1,411,353)	편성액 부족(중기계획 '26년 26,872 대비 3,000 적게 편성)
ILO분담금(고용부)	18,358	20,901	2,543	4,262(CHF 2,296,080)	편성환율(부처가 "적정 스위스프랑 편성환율" 건의)
WMO 의무분담금(기상청)	2,484	4,188	1,704	1,213(CHF 653,045)	납부시기(전년 미납을 이듬해 예산으로 납부)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산업부)	1,990	2,620	630	약 591 ($396,504)	환차손(기준환율과 납부 시점 환율 차이, 2022~2025년 누적 미납 $455,042 단계적 해소)

4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기구부담금(정보화, 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2)·3)·참고2; 同,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방송통신발전기금 내 기존 세부사업을 일반회계 국제기구부담금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사업(부처)	예산		증감	미납 청산분	미납 원인 (제출자료에 근거한 추정)
	2026	2027안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복지부)	1,570	1,694	124	167(€96,920)	편성액 부족·환차손(2019년 이후 예산 범위 내 납부 후 잔여분 이월)
WIPO 국제분담금 (지식재산처)	2,218	2,417	199	약 118(CHF 61,848)	환차손
우정사업해외활동 (과기정통부)	2,331	3,247	916	948(UPU 700·KPG 248)	편성환율(UPU)·편성액 부족(KPG 증액분 1년분만 반영)
국제기구부담금(정보화) (과기정통부)	5,286	7,145	1,859	없음	해당 없음(환율 상승, APCICT 지원 이관 편성)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산림청)	4,255	4,681	426	없음	해당 없음(2019년 이후 동결된 운영지원 정상화·업무 확대)
기타 의무분담금(외교부)	92,513	95,596	3,083	없음	해당 없음(미납 없이 납부, 환차손은 다른 분담금 집행잔액 이·전용으로 보전)
소계(9월 사업설명자료 기준 6개, WIPO·국제기구부담금(정보화)·아시아산림협력기구·외교부 기타 의무분담금 제외)	50,605	59,385	8,780	9,800	3개 사업(ILO·APO·우정) 증액 4,089 중 청산분 증가 2,170(53.1%)

주: 1) 의무분담금은 분담률에 따라 부과되는 분담금으로 분류함. 인구개발국제부담금·국제적십자위원회 분담금(자발적 성격)과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WPRO 자발적 기여, 동결)은 제외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AEA 기술협력부담금(자발적 특별기여금)·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한-UNDP 약정 기여)도 제외하고, 분담 단위·등급 선택제인 ITU·APT·UPU·APPU 분담금은 의무분담금으로 분류함. 우정사업해외활동에 포함된 카할라 우정그룹(KPG) 분담금은 우정사업본부가 회원으로 내는 우정사업자 협의체 분담금이나 같은 세부사업에서 납부되어 함께 집계함. 「관광외교역량강화(ODA)」는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과 OECD 관광위원회 기여금이 함께 편성된 세부사업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IFAD의무분담금(ODA)」은 3년 주기 기금조성 서약액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은 재원보충 공여액을 나누어 내는 구조여서 의무분담금 집계에서 제외함. 다만 「관광외교역량강화(ODA)」의 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은 본문의 8개 부처 12개 세부사업 미납 사례에 포함함. 외교부 「국제기구 일반분담금 납부(ODA)」는 의무분담과 재량 기여가 섞여 있어 제외하고, 외교부 본부 의무분담금 3개 중 2027년에 증액된 것은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뿐이어서 이 사업만 표에 적음

2) 미납 원인은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의 산출근거·중기재정계획·참고자료(납부내역 및 미납 안내문)를 종합하여 분류함. 아시아생산성기구 원화액은 $396,504×1,490원으로 계산함. 우정사업해외활동의 미납 원인은 부처 참고자료에 적힌 것임. 만국우편연합(UPU)과 카할라 우정그룹(KPG)은 이듬해 1분기 안의 납부를 유예기간 내 납부로 보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음. 국제암연구소의 미납 청산분은 9월 사업설명자료 산출근거(€96,920, 167백만원) 기준이며, 보건복지부는 10월 답변에서 2027년 예산에 €78,767(138백만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힘. WIPO 원화액은 지식재산처 답변자료(2026.10.)에 적힌 금액으로, 9월 사업설명자료 기준 소계에서는 제외함. 2026년 예산에도 미납 청산분이 포함된 사업(고용노동부 ILO 3,465백만원,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 약 166백만원)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상청·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림청, 각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와 지식재산처 답변자료(2026.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관 부처는 2026년 10월 추가 설명자료에서 미납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상청은 WMO 분담금(2026~2027년 연간 CHF 1,602,519)의 경우 정부안 편성 때 분담금과 전년도 미납액을 합한 납부금액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2024~2026년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2022년 CHF 70,810에서 2026년 CHF 653,045로 늘었다고 설명하였다. 지식재산처는 WIPO 분담금(연간 CHF 455,790)을 매년 상반기에 내지만 예산은 전년도 7~8월에 편성되어,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차이로 2024~2026년 매년 환차손(2026년 편성환율 1,673원, 집행환율 1,861.77원, 118백만원)이 생겼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왔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만국우편연합(UPU) 분담금의 기준환율과 실제 납부환율의 차이(2026년 CHF당 1,672원과 1,836원)로 CHF 377,392의 미납이 생겼고, 카할라 우정그룹(KPG) 분담금은 2025년 1월 증액분이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년분씩 이듬해에 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아시아생산성기구(APO) 분담금 예산이 기준환율로 산정되어 납부 시점의 환율 상승분을 메우지 못하였고,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은 분담국이 2023년 29개국에서 2026년 19개국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미국·방글라데시가 분담금 산정에서 빠져 분담금이 13.5% 늘면서 미납이 생겼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사업의 2027년 정부안은 66백만원으로 2026년(68백만원)보다 2.9% 줄었다.[445] 반면 외교부는 유엔 정규예산·PKO예산·기타 의무분담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편성환율(2026년 달러당 1,380원)로 환전하여 미납 없이 제때 전액 내고 있어 예비비나 이·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다만 현행 지침상 편성환율 적용은 미화에 한정되고 유로화·스위스프랑 등 달러 외 통화로 청구되는 분담금에는 지출 시점 매매기준율이 적용되므로, 기타 의무분담금 내 비달러화 분담금에서는 여전히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446]

기상청·지식재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미납액을 예비비나 이·전용으로 메우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 왔다. 기상청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445)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 예산안 총괄표. 감소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46) 기상청, 「27년 예산안 ODA 관련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자료」; 지식재산처, 「국회 예산정책처 요구자료 답변: ODA 관련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발생 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 우정사업해외활동(ODA) 미납금 발생 및 예비비 이전용 미시행 사유」;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미납 설명자료」·「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미납 설명자료」; 외교부, 「ODA 관련 답변자료: 국제기구 분담금」(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재원이어서 매년 생기는 분담금 부족액은 본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전용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PU와 KPG가 이듬해 납부 때까지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아 이·전용의 시급성이 낮다고 보았고, 지식재산처는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를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누적 미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증액을 매년 요청하여 2027년 APO 분담금 예산이 전년보다 약 30% 늘었고, 2026년에는 환차익으로 미납을 줄이기 위해 달러 약세 시기에 분담금을 냈다.[447]

국제기구의 입장은 기구마다 다르다. 우정사업본부는 만국우편연합(UPU)이 이듬해 1분기 안의 납부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유예기간 안에 모두 냈고, 카할라 우정그룹(KPG)도 증액분을 이듬해 내는 데 이견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따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WIPO는 매년 상반기 납부현황 보고서에 우리나라 미납액을 적고 ILO는 매년 분담금 부과 서한에 미납금 납부 독려 문구를 넣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6년 2분기 기준 193개 회원국 중 109개국이 미납이고 우리나라 몫은 전체 미납액의 0.9% 수준이나 2026년 6월 집행이사회에서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기상청은 2026년 미납분을 포함한 2027년 분담금을 2027년 초에 일찍 낼 계획이다. 세계관광기구(현 유엔관광기구, UN Tourism)는 체납액이 2개 회계연도분 이상이면 투표권을, 4개 회계연도분 이상이면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는 우리나라가 과거 미납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며 2026~2027년 미납액은 38,010달러라고 회신하였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는 미납에 대해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총회에서 국가별 납부액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겠다고 밝혀 제때 납부할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448]

---

447) 기상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각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사유 설명자료(예비비 및 이·전용을 시행하지 않는 사유 포함)(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4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해외활동(ODA) 분담금 요청자료」; 지식재산처, 「ODA 관련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에 대한 국제기구 입장」; 고용노동부, 「ILO 분담금 미납 사유 및 국제기구 입장」; 기상청, 「27년 예산안 국제기구 미납에 대한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 설명자료(유엔관광기구 분담금 납부)」; 산업통상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미납 설명자료」·「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미납 설명자료」(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

8개 부처의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미납·전용 발생 사유를 부처 제출자료와 결산 내역으로 검토하면 네 가지 구조적 원인으로 정리된다. 첫째, 스위스프랑(CHF)·유로(EUR) 등 달러 외 청구 통화의 예산 편성환율과 납부 시점 실세환율 간 차이이다(원화로 제시된 미납액의 50.6%인 4,962백만원: 고용노동부 「ILO분담금(ODA)」 4,262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해외활동(ODA)」 내 만국우편연합(UPU) 700백만원, 이 밖에 소계에서 제외한 지식재산처 「WIPO 국제분담금(ODA)」 CHF 61,848). 고용노동부는 ILO 분담금의 청구 통화인 스위스프랑화의 강세로 2025년 부과액 CHF 10,245,984 중 CHF 6,938,085만 납부하였다. 2026년 본예산에도 전년도 미납금 3,465백만원(CHF 2,087,590)이 포함되었으나 2026년 말 기준 미납금도 CHF 2,296,080(4,262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건의사항에 "적정 스위스프랑 환율을 편성환율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449]

정부의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은 외화로 지급되는 세출예산·기금 지출을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화로 환전하도록 하면서, 미화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에 적용한 환율을, 미화 이외의 통화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450] 따라서 스위스프랑·유로로 청구되는 분담금은 이 지침에 따라 환전하더라도 편성환율과 납부 시점 환율의 차이가 그대로 남는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달러와 유로·스위스프랑 등 기타 통화에 모두 예산편성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처마다 국제분담금 납부 시기가 달라 납부 시점의 환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451]

둘째, 중기재정계획이나 기구 확정 청구액보다 본예산을 적게 편성한 과소 편성이다. 보건복지부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는 중기재정계획(2025~2029)상 2026년 소요가 26,872백만원이었으나 본예산이 23,872백만원으로 3,000백만원 적게 편성되었고, 2026년 의무분담금 미납금 CHF 1,411,353(2,619백만원)이 2027년 예산안에 계상되었다.[452] 미화로 청구되는 산업통상부 「아시아생산성기구

449)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ILO 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4)·참고2.

450) 재정경제부,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고시 제2026-39호, 2026.1.2. 시행), 제1조·제3조·제5조제1항·제7조. 적용대상과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화예산의 규모·중요성과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의무지출성 사업비용을 운영경비 등보다 우선하여 고려한다(제3조).

451) 기획예산처, 「2027 예정처 ODA사업평가 부처별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52)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

분담금(ODA)」은 환율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원화 예산이 납부 시점의 환율 상승분을 메우지 못해 연간 약 132만~136만달러의 의무분담금을 다 내지 못하면서 2022~2025년 누적 $455,041.82의 미납이 쌓였고 2027년 예산안에 $396,504(약 591백만원)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같은 부처의 2026년 10월 설명자료는 2026년 납부 후 누적 미납을 $333,165.43으로 적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해외활동(ODA)」 내 카할라 우정그룹(KPG) 미납 248백만원($166,667)도 2025년 1월 증액된 분담금이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1년분씩 이듬해에 내는 데서 비롯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외교역량강화(ODA)」(세계관광기구 의무분담금) 역시 2024~2026년 누적 미납액(€63,363)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청구액(€267,872)에 미납액을 반영하여 €331,335(570백만원)를 편성하였다.[453]

셋째, 국제기구 총회의 분담률·예산 확정 시점과 우리 정부 예산 편성 주기의 시차 및 이듬해 납부 관행이다. 기상청 「WMO의무분담금(ODA)」은 분담률이 2.54%에서 2.31%로 낮아졌는데도 전년 미납금(CHF 653,045, 1,213백만원)을 이듬해 예산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이어져 2027년 증액(+68.6%)의 71.2%가 미납 청산분이다.[454] 넷째, 전년도 미납금 상환이 당해 연도 본예산을 잠식하여 연쇄적으로 미납이 이월되는 구조이다. 보건복지부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는 2019년(€19,874) 이후 매년 당해 분담금과 직전 누적 미지급금을 합산한 총소요(2026년 €1,027,114.42) 중 원화 예산(1,570백만원) 범위 내에서만 납부하고 잔여 미지급금(€96,920.44, 167백만원)을 2027년으로 다시 이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답변에서 2027년 예산에 이 가운데 €78,767(138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잔여 €18,153은 이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9월 사업설명자료 산출근거(€96,920 전액, 167백만원)와 차이가 있다.[455]

자료 제출), 2026.9., 3)·8).

4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현황(사업설명자료 포함): 관광외교역량강화(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8., 3)·참고1·참고2. 미납액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이며, 2027년 청구액과 미납액 합계를 더한 값(€331,235)은 사업설명자료의 편성 산출근거(€331,335)와 €100 차이가 있음.

454) 기상청, 「사업설명자료_WMO 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2)②·3)·참고1.

455) 보건복지부,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미납 발생 사유」(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19.;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

미납이 반복되면 예산 증감을 해석하기도 어려워진다. 미납 청산분이 세부사업 증액으로 표시되어 실질적인 국제기구 기여 확대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본부 소관 의무분담금 세부사업인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2027년 정부안 107,124백만원),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155,823백만원),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95,596백만원)에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분담금 미납액 방지"를 지적하였고, 2023년에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집행잔액(1,444백만원)을 기타 의무분담금의 환차손 보전 등에 돌려 쓰기도 하였다.[456] 이처럼 편성환율 괴리와 과소 편성의 문제는 미납이 없다고 답한 외교부를 포함하여 미납이나 이·전용이 확인된 8개 부처 전반에 걸쳐 있다. 의무분담금 집계에서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IFAD의무분담금(ODA)」(3년 주기 기금조성 서약액)도 2026년 예산에 2022~2023년 미납금(USD 1,216천)을 반영하여, 서약형 기여금에서도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457]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①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의무분담금 등 의무지출성 외화예산에는 통화와 관계없이 예산 편성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환전 손익을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소관 부처는 ② 중기재정계획이나 기구 청구액보다 적게 편성할 경우 예상 미납액을 사업설명자료에 함께 적고, ③ 미납 청산분을 별도 내역으로 편성하여 증액분과 구분하며, ④ WMO처럼 전년 미납을 이듬해 예산으로 납부해 온 사업은 미납이 다시 쌓이지 않도록 환율 변동을 고려한 편성 계획을 제시하고(기상청은 2027년 예산에 전년 미납분을 모두 반영하고 2027년 초에 일찍 납부할 계획), ⑤ 아시아생산성기구·카할라 우정그룹(KPG) 분담금처럼 미화로 청구되는 의무분담금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이 지침의 적용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기는 방식이 굳어지면 미납 청산분이 다시 이듬해 증액으로 표시되므로, 편성 단계에서 실제 청구액과 환율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456) 외교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9)·다.2).

457)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IFAD 의무분담금(ODA)(5031-531) 3) 산출근거.

(6) ODA 특수성 반영 평가기준 필요

2026년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내 사업과 동일한 단년도 집행률·단기 산출지표 중심으로 ODA 사업을 평가하고 감액 판정 시 일률적으로 15% 이상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ODA 사업은 협력국 정부와의 합의(협의의사록·차관계약)와 현지 여건의 영향이 크고 개발성과가 다년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은 ODA 사업의 평가지표와 예산 환류 기준을 다년도 약정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국제개발협력 평가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판정과 편성의 연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감액 원칙 자체를 ODA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 현행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ODA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세 가지 한계가 나타난다. 첫째, 집행 효율성 평가에서 국내 사업과 같은 단일 회계연도 집행률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협력국 정부와의 협의의사록 체결·면세 통관·부지 확보 지연이나 현지 정세 불안, N-2년 기획 구조에 따른 긴 착수 준비기간(KOICA 진행사업의 예비조사부터 수행자 선정까지 평균 824일)[458] 등 구조적·외부적 요인이 내부 요인과 구분되지 않은 채 사업 부실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서면·대면평가에서 외교부 국별협력 4개 단위와 재정경제부 사업진행컨설팅(EDCF),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등이 실집행 부진을 주요 사유로 감액 의견을 받았다.[459] 다만 감사원이 분석한 KOICA 종료사업의 지연 요인에도 내부 기획·심의 요인(24개 중 13개, 중복 집계)이 적지 않았으므로[460], 문제는 집행률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지연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는 데 있다.

둘째, 성과달성도 평가에서 단년도 정량 산출이나 국내 기업 수혜(수출·수주 건수 등) 위주로 평가하면 협력국의 제도 구축·인적 역량 강화·주민 삶의 질 개선처럼

---

458)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9](p.27). 세 단계 합계(824일)는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459)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2026.1.;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 2026.; 재정경제부,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관련 자료(대외기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 「평가요약표·평가 의견서: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평가_소명의견서)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서면평가 의견 포함,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460)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5](p.16), [별표 1](p.74). 유형별 사업 수는 중복 집계이다.

중장기에 걸쳐 발현되는 개발성과(Outcome·Impact)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의 서면평가처럼 인프라 구축 직후 온실가스 감축량의 직접 정량화를 요구하는 등 현지 여건과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개위가 OECD DAC 6대 평가기준(타당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으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평가 기준·일정·단위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시행기관의 이중 평가 부담과 판정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부 간 공식 합의(협의의사록·차관계약(L/A)·MOU)나 정상외교 공약으로 다년도 지원 총액과 연차별 분담이 약정된 계속사업에 단년도 평가 결과만으로 15% 이상 일률 감액 원칙을 적용하면, 협력국과의 외교적 약속 불이행이나 현지 공사·기자재 조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 부처는 대면평가 소명 과정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정부 간 약정 이행을 이유로 감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 서면평가 대비 최종 판정은 25개 단위 중 18개에서 완화되었다. 완화 사유가 대부분 기재되지 않아 이런 사정이 판정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우나, 부처 소명이 이런 사유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ODA의 외교적·다년도 약정 특수성을 평가 기준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국무조정실·외교부·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에 ODA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기준(착수연도 준비기간 및 협력국 귀책·정세 불안 등 외부 요인 구분, 다년도 결과지표 및 OECD DAC 평가기준 연계)을 마련하고, ② 정부 간 공식 약정(협의의사록·차관계약(L/A))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일률적인 감액 비율 적용 대신 사업 범위·연차별 집행계획 조정이나 신규 내역 선별 방식으로 환류하며, ③ 국개위의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7 법령 개정 분석

가. 현황

여기서는 2020년 이후 ODA 관련 법률의 개정 연혁과 제4차 기본계획·무상원조 통합 조치의 법적 근거를 조문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국개위의 통합·조정 기능과 예산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존중 의무(제14조제6항)를 마련하였고,[461] 2024·2025년 일부개정과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거쳤다.[462][463]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 10일 개정(2026.9.11. 시행)은 주관기관의 주기적 점검·국회 보고와 시정요청 권한(제22조제3항), 재외공관의 연 1회 이상 사업현황 파악과 국개위의 정기국회 전 상임위원회 보고(제23조제3항)를 신설하였고,[464] 외교부는 2026년 86개 공관 1,148건(무상 958건, 유상 190건)을 점검할 계획이다.[465] 「한국국제협력단법」 원문에는 2020년 이후의 개정 표기가 없다.[466]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함께 맡던 기능 가운데 유상협력 주관, 국개위 당연직 위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3항), EDCF 운용·관리와 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같은 법 제14조제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나뉘었으며,[467] 무상협력 주관과 KOICA 감독은 종전대로 외교부 소관이다. 기획예산처장관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심

461)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p.29;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1.20., p.3.
4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원문의 개정 연혁 표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63)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부칙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2조·제14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제10조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2. 시행본).
464)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22조·제2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6.
465) 외교부, 「2025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국개위 제58-4호), 2026.7.23., p.4.
466)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7161호, 2020.10.1. 시행)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44호, 2024.7.10. 시행)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67)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부칙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2조·제14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제10조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2. 시행본).

의·의결에 참여한다.[468] 기타 시행부처도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469]

[ODA 관련 4개 법률 개정 연혁(2020~2026년)]

법률	개정일(시행일)	구분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0.5.26. (2020.11.27.)	전부개정 (법률 제17302호)	국개위 통합·조정 기능 강화, 제14조⑥ 시행계획 존중, 사무기구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4.1.16.	일부개정	제8조 위원 해촉 사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5.4.8.	일부개정	제3조 기본정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의2 국제개발협력의 날, 제24조 위임·위탁, 제25조 포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5.10.1. (2026.1.2.)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제7조③, 제12조), 제14조⑥은 기획예산처장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26.3.10. (2026.9.11.)	일부개정 (법률 제21425호)	제22조 주관기관 점검·국회 보고, ③ 시정요청 신설; 제23조③ 재외공관 사업현황 파악·보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025.10.1. (2026.1.2.)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2020.3.31. (2020.10.1.)	일부개정 (법률 제17161호)	목적 전문개정, 제7조 사업 조정. 이후 개정 없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2024.1.9. (2024.7.10.)	일부개정 (법률 제19944호)	제2조 해외재난 정의, 제11조 긴급구호대 편성

주: 법률 원문의 개정 표기와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률 원문;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2025.12.) p.29; 외교부, 「2025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제58-4호, 2026.7.23.) p.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제2항은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기구는 이들

46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 영향이 없다는 판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문 검토 결과이다.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개위 위원이라는 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것으로, 법과 시행령은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사업평가 관련 국무조정실 검토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69) 관계부처 합동, 「'21~'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붙임1 기관별 총괄.

법률에 협력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나 외교부가 주관하는 그 밖의 기구에는 이와 같은 법률이 없으며, 외교부는 출연 대상 국제기구와 출연 기준·방식 등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법률(가칭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개발협력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70]

제4차 기본계획과 무상원조 통합 조치에 담긴 과제 가운데 시정요청 권한과 재외공관 사업현황 파악은 2026년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는 기존 조문(제5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그러나 개별 ODA 사업의 선정 기준, 평가 전문기관, 통합 플랫폼, 부처연수 이관, 시행기관 정비, 사업실명제, 의결사업 신설 금지·분기 보고는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이나 예산, 또는 간접적인 조항에 의존하고 있다.[471]

[제4차 기본계획·통합 조치의 법적 근거 점검]

정책·조치	현행 법률상 근거	판단
주관기관 시정조치 요청 권한	기본법 제22조③(2026.3.10. 신설)	충족
ODA 사업 선정기준· 심사결과 공개	제14조에 절차만 규정(개별 사업 선정기준 조문 없음)	법적 근거 없음(내부 지침 운영)
재외공관 사업현황 파악·국회 보고	기본법 제23조③(2026.3.10. 신설)	충족
평가 전문기관 운영	제16조에 전문기관 조항 없음(제10조 조사·연구 의뢰, 제24조② 위탁만 존재)	미충족(입법 추진 중)
KOICA 통합 플랫폼	KOICA법 제7조 10호 위탁사업·제22조의2 공모·협약; 기본법 제13조③ 전략회의	간접 근거만 존재
부처연수 KOICA 이관	KOICA법 제7조 3호 연수·10호 위탁	간접 근거
무상 시행기관 절반 이상 정비	시행기관 지정·제한 조항 없음(제2조8호 정의만)	법적 근거 없음
사업실명제·기록이력제	법률 근거 없음	지침 수준
ODA 통합정보포털·정보공개	기본법 제5조④, 제18조③④, 제21조	충족
의결사업 신설 원칙 금지·분기 보고	기본법 제14조⑦⑧(확정·수정)	지침으로 운영

주: '판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조문과 대조한 결과임

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국제협력단법」 원문(법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2026.7.2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70)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12조제2항;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다자간 개발협력" 중 그 밖의 기구와 협력」(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0.

471)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국제협력단법」 원문(법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22~26 및 붙임 p.3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검토.

나. 분석의견

(1) 사업 선정기준 법적근거 마련 필요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 절차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원칙만 규정할 뿐, 개별 ODA 사업의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유·무상 사업 선정이 내부 지침에만 맡겨져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선정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점검하기 어려우므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재정경제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에 ODA 사업 선정의 핵심 기준과 심사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규정을 보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는 시행기관이 주관기관에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주관기관이 이를 심사·조정하여 국개위가 심의·의결하도록 절차만 정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8조도 사업 유형과 차관 공여 시 고려사항(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경제교류 증진 등)을 추상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다.[472] 실제 사업 선정 기준은 외교부의 연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과 「무상원조 사업 정비계획 및 추진방향」(효과성·효율성·정책정합성·성과관리·지속가능성 등 ODA 적정성 심사), KOICA의 「국별협력사업 규정」·PCP 검토 기준, 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한국수출입은행 업무세칙 등 행정규칙이나 기관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EDCF 협력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2조제1호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제1호에 따라 OECD DAC가 정한 개발도상국 등 가운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고, 사업은 같은 법 제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의 실시 가능성·타당성·지원규모·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고 설명하였다.[473]

---

472)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11조·제14조·제15조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8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73)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수원국 및 ODA 사업 선정 기준 관련 답변자

국무조정실도 사업 선정 기준을 묻는 요청에 종합기본계획의 4대 전략목표와 주관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립하는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였다.[474]

선정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내부 지침에만 맡겨져 있으면 연도별 작성 지침에 따라 심사 기준이 바뀌어도 국회의 입법적 점검이 어렵고, 주관기관 단계에서 후보사업이 선정·탈락하는 기준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이 약화되며(2022~2024년 KOICA 신규사업 183건 중 외교부 단계 탈락 12건의 사유 비공개 등),[475] 사전타당성·착수준비도(협의의사록 체결 가능성 등)나 협력국 결과지표가 미비한 사업이 ODA 예산 사업으로 편입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한편 일반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의 사업추진절차를 ODA 사업 선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같은 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제2항제4호)과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제2항제9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력국 정부와 맺은 협의의사록·약정에 따라 추진하는 무상원조 사업과 협력국 정부에 빌려주는 EDCF 차관은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0조의 총사업비 관리도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절차여서 개별 사업의 선정 기준을 정하지는 않는다. 제4장의2의 재정사업 성과관리(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ODA에도 적용되지만 세부사업 단위로 계획·집행·결과를 평가하는 장치여서, 협력국별 개별 사업을 사전에 선정·심사하는 절차를 대신하지 못한다.[476] 결국 ODA 사업의 선정 심사는 「국가재정법」의 일반 절차로 갈음하기 어렵고, 협력국 개발수요, 국가 간 합의, 채무지속가능성 등 ODA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료」, 2026.10.15.; 同, 「요구자료(예산정책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및 EDCF 심사보고서 관련 답변자료」, 2026.10.27.

474)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10.15., 2번(ODA 사업 선정 기준 및 관련 지침).

475)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0](p.29).

476) 「국가재정법」(법률 제21419호, 2026.9.11. 시행) 제3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제85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재정경제부는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또는 별도 조문 신설)에 ODA 신규사업 선정의 핵심 기준(협력국 개발수요 및 CPS 부합성, 사전타당성 및 착수준비도, 유·무상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여부, 협력국 결과 중심 성과지표 설정, 차관 사업의 채무지속가능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심사 절차·배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② 주관기관의 적격 심사 결과(선정 결과와 탈락 사유 유형)를 종합시행계획 부속서류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개위 조정권한 조문 정비 필요

2026년 3월 개정으로 주관기관의 점검·시정요청 권한과 재외공관 사업현황 보고가 법제화되었으나, 연계사업 이행점검, 의결사업 신설 금지와 분기 보고, 평가전문기관은 여전히 지침이나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지침」(2025.12.)에 따른 의결사업 변경 절차와 연계사업 이행점검의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 전문기관 법제화 시 독립성과 국회 보고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 단계의 존중 의무(제14조제6항)는 작동하고 있고,[477] 2026년 개정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관기관 시정조치 요청 권한' 과제를 입법으로 이행하여 집행 단계 점검을 보강하였다.[478][479] 그러나 국개위가 계획 단계에서 조정한 내용이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장치는 법률이 아닌 지침에만 있다. 예컨대 시행계획에서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지정한 연계사업은 감사원이 점검한 29개 중 19개(65.5%)가 실제로 연계되지 않았고, 외교부의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에는 연계하지 못한 사유를 보고하는 양식도 감사 당시에는 없었다.[480] 그런데도 연계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률에 없다. 의결사업 신설 금지와 분기 보고도 2025년 12월 지침으로 운영되

477)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0](p.29).
478)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22조·제2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6.
479)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2, pp.24~26 및 붙임 p.33.
480)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별표 3](p.80) 및 본문 pp.43~46.

고,[481] 법률은 시행계획의 확정·수정(제14조제7항·제8항)만 규정한다. 지침 운영은 유연하나 구속력과 지속성이 약하고 국회의 점검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평가 전문기관도 제4차 기본계획이 2026년 상반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과제로, 2027년 종합시행계획이 "평가전문기관 법제화 추진"으로 제시하였으나,[482][483] 현행 제16조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484] 독일은 독립평가기관(DEval)의 평가를 의회 경제협력위원회(AWZ)가, 영국은 원조영향독립위원회(ICAI)의 평가를 하원 국제개발위원회(IDC)가 점검하고, 일본은 2006년 참의원에 ODA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485] 이는 평가 전문기관을 만들 때 시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의회 보고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① 의결사업 변경·신설 원칙과 분기 보고 절차를 제14조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② 연계사업 이행점검과 미이행 사유 보고를 제22조의 점검 대상에 명시하며, ③ 평가 전문기관 법제화 시 독립성, 평가 대상 선정 권한, 평가결과 국회 보고(제16조제5항)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정요청 권한의 행사 실적도 국회 보고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3) 통합 플랫폼 근거규정 마련 필요

KOICA 통합 플랫폼, 부처연수 이관, 시행기관 정비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공협력 예산 90.3% 증액, 부처연수지원 3,000백만원에서 14,351백만원으로의 증액 등 예산으로 먼저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 조항 없이 위탁사업 조항 등 간접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은 통합 플랫폼의 운영 원칙, 제안부처와 KOICA 간 역할 분담과 성과책임, 시행기관 정비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무상원조 시행기관(41개)의 절반 이상 정비와 KOICA 공공

481) 관계부처 합동, 「'25년도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제56-4호), 2026.2.26., 향후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5.
482)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2, pp.24~26 및 붙임 p.33.
48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484)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국제협력단법」 원문(법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22~26 및 붙임 p.3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검토.
485)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18호, 2025.10.22., pp.3~4.

협력사업 중심의 통합 플랫폼 강화를 제시하였고,[486] 2026년 1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 수요를 KOICA 사업으로 전환하는 「무상원조 통합·혁신 방안」을 의결하였다.[487] 이에 따라 외교부 주관 ODA(무상원조와 UN기구 공여)의 시행기관은 37개에서 33개로, 사업은 1,555개에서 1,041개(무상원조 991개, UN기구 50개)로 정비되었다.[488] 그러나 부처가 제안한 사업을 KOICA가 수행하는 것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0호(위탁사업)·제22조의2(공모·협약)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3항(전략회의)에, 부처연수 이관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3호·제10호에 간접적으로 기대고 있다.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만 될 뿐 지정·제한 조항이 없다.[489]

통합 플랫폼은 제3차 기본계획부터 이어진 과제이다.[490] 법적 근거 없이 계획과 예산으로만 추진되면 정책 방향이 바뀔 때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공공협력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491] 부처와 KOICA 간 역할 분담과 성과책임이 불분명하고, 시행기관 정비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되기 어렵다. 일본은 2008년 유·무상 시행기관을 JICA로 통합하였는데,[492] 우리나라의 통합은 유·무상 이원 구조를 유지한 채 무상 부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현행 간접 근거로도 추진 자체는 가능하고 세부 운영을 법률로 고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는 원칙과 책임 구조를 두고 세부 운영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은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부처 제안사업의 KOICA 통합 수행 원칙과 역할 분담·성과책임을 규정하고, ②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지정·정비 기준을 법령에 두며, ③ 통합 플랫폼을 통한 사업 전환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86)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22, pp.24~26 및 붙임 p.33.
487) 외교부, 보도자료 [26-031] 「무상원조 통합 체계 구축」, 2026.1.21.
48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p.4. 같은 문서의 다른 부분(Ⅲ.2)에는 사업 감소 규모가 541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1,555개에서 1,041개로의 감소는 산술상 514개이다.
489) 「국제개발협력기본법」·「한국국제협력단법」 원문(법제처);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22~26 및 붙임 p.33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검토.
490)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1.20., p.23.
491) 한국국제협력단, 「국회 요구자료 제출(예산정책처)」, 2026.9.8., 5번;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공공협력·글로벌연수 세부사업 산출근거.
492)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18호, 2025.10.22., pp.3~4.

(4) EIPP 운영근거 정비 필요

EIPP는 3~5년 단위의 정부 간 협력사업이나 운영 근거가 2027년 1월 31일 효력이 끝나는 훈령에 있어 다년도 사업의 지속성이 부처 내부 규칙에 의존하고, ODA 적격국이 아닌 형가리 과제가 사업목록의 20.4%를 차지한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존속기한 전에 운영 근거를 법령 수준으로 정비하고, 형가리 등 비ODA 과제는 「경제협력기획(ODA)」에서 제외하며 그 집행 과목·금액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EIPP는 ODA 관련 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사업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직제」 제24조제3항제10호는 개발금융국장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 · 입안 · 운용 및 사후 관리"를 분장하도록 하고,[493]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은 개발정책협력과장이 EIPP의 기획·운영·관리와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시행을 분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494] 이는 조직 내부의 업무분장 규정이다. 사업의 기간·수행체계·절차는 재정경제부훈령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제65호)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제64호, 이상 2026.1.2.)이 정한다.[495][496] 운영지침은 2022년 2월 기획재정부훈령 제592호로 제정될 때 부칙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존속기한을 두었고, 2025년 1월 기획재정부훈령 제762호로 존속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497] 운영규정은 2021년 6월 제정 시 부칙에 2024년 6월 15일을 재검토기한으로 두었으나 현행본에는 이를 갱신한 부칙이 없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KSP·EIPP에 관한 규정이 없고,[498] 예산도 EDCF가 아닌 일반회계 세부사업 「경제협력기획(ODA)」에 편

49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제36631호, 2026.8.28. 시행), 제24조제3항제10호.

49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8호, 2026.8.28. 시행), 제21조제7항.

49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5호, 2026.1.2. 시행), 제4조·제5조·제19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553호, 2021.6.16. 제정).

49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64호, 2026.1.2. 시행),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762호, 2025.1.14.).

49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592호, 2022.2.7. 제정), 부칙 제2조.

49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2026.1.2.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2026.1.2. 시행). KSP·EIPP·경제발전경험·정책자문 관련 규정이 없음은 국회예산정책처 확인(2026.10.1. 조회).

성되며 2026년 예산부터 KSP와 EIPP가 이 세부사업으로 통합되었다.[499]

EIPP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재정경제부의 '양자무상'·'개발컨설팅' 사업으로 수록되어 있다(2026년 확정액 6개국, 2027년 요구액 4개국 프로그램).[5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양자간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정하나(제12조제1항) 시행기관은 제한하지 않으며(제2조제8호),[50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EIPP 과제가 외교부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선정된다고 제출하였다.[502] 수행은 재정경제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총괄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운영규정 제5조제2항), 총괄기관이 필요시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제4조제2항) 2단계 위탁 구조이며,[503] 2026·2027년 총괄기관은 KIND,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DI, 한국수출입은행의 4개 기관이다.[504] 대상국은 ODA 대상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본법은 개발도상국을 OECD DAC가 정한 ODA 대상국으로 정의한다(제2조제2호). 재정경제부 제출 사업목록(2020~2026 사업연도, 98건)에서 헝가리 과제는 2022~2026년 20건(20.4%)으로 인도네시아(22건) 다음으로 많으나, 2026년·2027년 종합시행계획의 EIPP 목록에는 헝가리가 없다.[505]

첫째, 사업 기간과 근거 규범의 존속 기간이 맞지 않는다. 운영지침 제3조는 EIPP를 5년 이내의 다년도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 제고나 협력국 요청이 있으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데,[506] 그 세부 절차를 정한 운

499) 재정경제부,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사업코드 정보·나.2)①·나.4)②·다.2).

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6., 사업목록 266~271번; 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사업목록 35~38번.

5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2조제2호·제4호·제8호, 제12조제1항.

50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청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6., 1-①·②·③, 4-①·②.

5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5호, 2026.1.2. 시행), 제4조·제5조·제19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553호, 2021.6.16. 제정).

50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청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6., 3-③·④; 同, 「국회예산정책처 답변자료」, 2026.9.14., 2-①.

505) 재정경제부, 「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사업목록' 시트(국가·사업연도별 건수와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2020년 9건, 2021년 15건, 2022년 17건, 2023년 16건, 2024년 15건, 2025년 15건, 2026년 11건, 합계 98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제58-1호 종합시행계획 EIPP 사업목록; 재정경제부,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 2026.9., 나.4)②.

영지침은 2022년 제정 시 약 3년, 2025년 개정 시 약 2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연장되어 왔다.[507] 사업목록상 EIPP는 2020년 이후 매년 9~17건의 과제가 이어져 왔고,[508] 2027년 요구액 기준 종합시행계획에도 4개국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다.[509] 훈령은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개정·연장할 수 있는 행정규칙이어서 존속기한 연장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나, 협력국에 다년도로 약속하는 사업의 지속성과 수행기관 위탁의 근거가 부처 내부 규칙의 연장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은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정할 뿐 사업의 목적, 대상국 요건, 위탁·재위탁의 범위와 책임을 정하지 않는다.[510][511] 다만 EIPP는 종합시행계획에 수록되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과제 선정 시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어,[5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조정 체계 밖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ODA 적격국이 아닌 헝가리 과제가 ODA 세부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령상 ODA 정의 및 예산 과목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는 개발도상국을 OECD DAC가 정한 ODA 대상국으로 정의하는데,[513] EIPP는 대상을 ODA 대상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514] 헝가리는 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고소득국으로 OECD DAC의 ODA 적격국이 아닌데도, 재정경제부 제출 EIPP 사업목록(2020~2026년 98건)에서 헝가리 과제가 2022~2026년 20건(20.4%)에 이르고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기획(ODA)」 사업설명자료의 2025년 실적에도 비ODA 국가와의 협력과 헝가리 수요응답형 교통(DRT) 제안사업을 함께

50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64호, 2026.1.2. 시행),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762호, 2025.1.14.).
5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592호, 2022.2.7. 제정), 부칙 제2조.
508) 재정경제부, 「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사업목록' 시트.
509)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8-1호) '2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2026.7.23., 사업목록 35~38번.
5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제36631호, 2026.8.28. 시행), 제24조제3항제10호.
5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8호, 2026.8.28. 시행), 제21조제7항.
51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청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6., 1-①·②·③, 4-①·②.
5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2조제2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1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청자료」(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6., 1-①·②·③, 4-①·②.

적었다.[515]

2026·2027년 종합시행계획의 EIPP 목록에는 헝가리가 빠져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ODA 전용 세부사업인 「경제협력기획(ODA)」에서 비ODA 국가인 헝가리 과제를 수행·관리하는 것은 법령상 ODA 정의와 예산 과목 구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위탁 구조의 책임 범위와 비용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운영규정은 총괄기관의 재위탁을 허용하고 운영지침은 총괄기관에 수행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나,[516][517] 4개 총괄기관이 위탁사업비 중 관리비로 쓰는 비율과 수행기관 재위탁 계약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 불용 사유에 재위탁사업 경비 정산이 포함된 점도 재위탁 단계의 집행관리를 함께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518] 반면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견서는 KDI, 한국수출입은행 등 전문기관 위탁수행 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519] 문제는 위탁 구조 자체보다 단계별 비용과 책임이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 아울러 운영지침 제1조의 위임 조문 인용("제20조")과 제출자료의 훈령 번호 표기가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EIPP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정부조직법」, 대외무역·산업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위탁·재위탁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규정의 기한은 2025년 훈령 개정 때 갱신이 누락된 것으로 연내 훈령 개정 때 운영지침 제1조의 인용 조문과 함께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ODA 국가와의 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운영지침 제30조에 따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있고, ODA 과제와 비ODA 과제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나누면 별도 계약 체결과 간접비 중복 등 비효율이 생기며, 총괄기관과의 계약에 재위탁사업 예산액과 일반관리비를 명시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한다고 밝혔다.[520] 그러나

---

515) 재정경제부, 「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사업목록' 시트.
5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5호, 2026.1.2. 시행), 제4조·제5조·제19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553호, 2021.6.16. 제정).
5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64호, 2026.1.2. 시행),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762호, 2025.1.14.).
518) 재정경제부,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사업코드 정보·나.2)①·나.4)②·다.2).
519) 재정경제부, 「(최종 평가의견) 경제협력기획(ODA) 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1-3·3-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정부조직법」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와 행정기관의 조직·위탁 일반을 정한 것이어서 EIPP의 목적, 대상국 요건, 재위탁의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고, 계약에 명시된 관리비와 재위탁 금액도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분리에 따른 비효율이 있더라도 ODA 전용 과목에서 비ODA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는 남으므로, 적어도 그 집행 과목과 금액은 구분해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① 2027년 1월 운영지침 존속기한 도래 전에 EIPP의 목적, 대상국 요건(ODA 적격국 원칙), 위탁·재위탁의 범위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② ODA 적격국이 아닌 헝가리 등 비ODA 대상국 과제는 「경제협력기획(ODA)」 세부사업에서 제외(필요시 비ODA 일반회계 사업으로 분리)하고 헝가리 과제의 집행 과목과 금액을 공개하며, ③ 총괄기관별 관리비율과 재위탁 계약 내역을 결산 때 공개하고, ④ 운영지침 제1조의 인용 조문과 제출자료의 근거 훈령 표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520) 재정경제부, 「ODA 사업평가 관련 사실확인 및 부처(기관) 의견」(국회예산정책처 제출), 2026.11.

Ⅳ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평가 결과

가. 추진체계의 책임성·투명성과 국제환경 대응력(SQ1)

국개위가 의결한 사업은 대부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존중 의무는 작동하고 있으나, 국개위 단계의 조정은 거의 없어 사업은 그 이전의 KOICA 심사와 주관기관(외교부) 단계에서 걸러지는데 그 기준과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시행계획에서 지정한 연계사업도 상당수가 실제로 연계되지 않았다.[521] 추진체계의 대응력과 투명성에도 보완할 점이 있다. 무상원조는 사업 발굴에서 집행까지 2년의 시차가 있으나, 지침은 비상사태·내전·정권교체 등을 시행기관의 변경 검토 요청 사유로 둘 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해당국 진행 사업을 점검하는 계기는 없어 의결된 사업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부는 정보공개 계획을 잇달아 수립하였으나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개하는 체계는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외교부·재정경제부는 여행경보 상향처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변경 검토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되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은 따로 판단하는 기준을 주관기관 검토 절차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지침 개정을 국개위에 요청하며,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2026년 12월부터 공개하기로 한 국개위 회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외교부는 주관기관 단계의 신규사업 선정 기준과 탈락 사유 유형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1)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2025.12., [표 10] p.29, [별표 3] p.80 및 본문 pp.43~46.

나. 프로그램화·대형화의 설계 정합성(SQ2)

KOICA 사업 1건당 평균 규모는 2027년 요구액 기준으로 연수 통합과 소규모 사업 정비로 사업 수가 줄면서 두 배 넘게 커졌고 KOICA가 제시한 국별협력 신규 사업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1.3배 커졌으나, 사업관리지원 안의 형성기획 예산은 70.0% 줄어들었고,[522] 신규사업의 2년차 예산은 착수 준비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크게 늘고 있다. 첫해 소액 편성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야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수행자를 선정하는 현행 절차를 반영한 측면이 있으나, 2년차 증액분이 협의의사록 체결과 수행자 선정 일정에 맞는지는 예산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국별협력사업을 4대 프로그램으로 재편하면서 기존 성과지표는 삭제되었으나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표(플래그십)사업도 분야별 추진전략과 2027년도 예산안의 전략형 프로젝트 등으로 나뉘어 제시될 뿐 대표사업으로 볼 공통 기준이 없고 시행계획과 예산안 설명자료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있다. 대형화와 대표사업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외교부와 KOICA는 신규·2년차 사업의 착수 준비 일정을 예산안에 함께 제시하고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프로그램별 결과지표를 확정하며, 국무조정실은 분야별 요건은 유지하되 대표사업과 성과 목표를 시행계획과 예산안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 추진 지연과 개선조치의 예산 반영(SQ3)

2025년 KOICA 국별협력사업은 결산 집행률이 모두 100.0%였으나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대비 93.0~98.3%, 추경예산 대비 79.8~90.1%여서,[523] 외교부가 KOICA에 교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결산 집행률만으로는 실제 집행 수준이 드러나지 않으며, 같은 문제는 다른 부처의 출연·보조 사업에서도 나타났다.[524][525][526] 신규사업의 착수 지연은 국회와 감사원이 2022년부터 거듭 지적해 왔

522)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사업관리지원 산출근거. 합계와 증감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523)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각 세부사업 다.결산내역.
524)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가. 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내역, 다. 결산표·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주요 결

으나 감사원 통보사항의 이행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유상원조(EDCF)도 승인에서 본구매 계약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승인 후 5년 누적 집행률이 23.4%에 그치나, 승인취소의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527][528] 따라서 외교부와 KOICA는 실집행률과 과부족 조정 내역, 월별 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소관 부처는 사업설명자료에 실집행률 산정 기준을 함께 밝히며, KOICA는 조건부 협의의사록 체결 실적과 신규사업별 수행자 선정 일정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승인취소에 협력국의 요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일률적인 기간 기준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기간·진척률과 외교관계·채무재조정 협상 등 예외 사유를 담은 승인취소 기준과 확보 재원의 재배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EDCF 미수납 원리금과 재정건전성(SQ4)

EDCF 미수납 원리금은 일부 채무위기국에 집중되어 있고,[529] 결산상 미수납액은 공개되나 채무재조정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따로 드러나지 않으며, 과거 채무 면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아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재조정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결산에 반영한다고 설명하나, 재조정은 원금을 깎지 않더라도 상환을 늦추고 금리를 낮춰 회수액의 현재가치를 줄이고 연체 통계에서도 빠지게 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수입 대비 공자기금 차입이자 비율이 2024년 77.4%에서 2027년

산사항.

525)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9) 외부지적사항, 다.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526) 기상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다. 결산표·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기상청,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2026., Ⅳ②; 同,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평가의견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2026., 3-1.

527) 기획재정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4.2.7., p.5·p.9; 한국수출입은행, 「EDCF 설명자료」, 2026.8.

528)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 2026.4.13., Ⅲ.4 (1).

529)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ODA 관련 답변자료」, 2026.10.8., 3번 (2021~2025년 연도 말 EDCF 미수납 원리금 현황). 국가별 누계와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정부안 127.3%로 높아졌으나,[530] 정부가 밝힌 금리체계 개편의 인상 폭과 기금수지 영향은 제시되지 않았다.[531]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수납 원리금을 연체분과 재조정 유예분으로 나누어 국가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로 충당금 반영액과 함께 공개하고, 재조정 채권의 현재가치 변동과 수납 실적을 합계 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정경제부는 채무재조정·연체에 따른 연도별 회수계획 변경분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시하고 금리체계 개편의 내용·적용 대상과 기금수지 영향 추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마. 비구속화와 민간재원 유치의 정합성(SQ5)

정부는 원조 비구속화와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를 함께 정책목표로 두고 있고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전략형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내세웠으나, 본구매가 있는 비구속 유상사업의 국내 수주 비중은 승인액 기준 18.0%에 그쳐, 실제 구매계약이 있는 사업에서는 두 목표가 부딪칠 수 있다.[532] 지금은 비구속 승인액의 대부분이 본구매가 없는 프로그램차관 등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구속성 원조 제한국이 늘면 영향이 커질 수 있는데, 비구속 비율과 수주 실적은 자료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이행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533] 민간재원 유치 실적도 기관마다 단위와 집계 범위가 달라 합산하거나 비교하기 어렵고, KOIC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업 관점의 지표와 위험 관리 미흡으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비구속 비율의 세부 산출 기준을 실적과 함께 밝히고 OECD DAC의 측정 방식을 참고한 시행기관 공통 산정기준을 마련해 민간재원 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계약금액 기준 수주 국적 통계를 공개하며 비구속 경쟁입찰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수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KOICA는 4대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협력국의 개발 성과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530) 한국수출입은행, 「의정지원 요구자료(예산정책처) — ODA 사업 추진 현황(2021~2026)」, 2026.8.28., 3·4번 표. 비율은 공자기금 이자상환÷기타민간이자수입(재산이자 포함 시 ÷(기타민간이자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531)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Ⅲ.4 (2)·(3).

532) 한국수출입은행, 「[별첨] 비구속성 현황」(2026.9.23. 제출) '비구속성현황' 시트. 국내 수주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533) 재정경제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6.4.13., Ⅰ.2 (1). 이 문서의 EDCF 참여 우리 기업 해외계약 규모는 구속·비구속 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이다.

바. ODA 사업 성과관리와 국제기구 분담금 편성(SQ6)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폐지·통합 판정을 받은 12개 평가단위는 모두 2027년 예산이 15% 이상 줄거나 통합되었으나 통합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늘어 예산안 자료로 반영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위(외교부 국제기구협력)가 있고,[534] 서면평가보다 최종 판정이 완화된 경우의 상당수는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판정과 예산 편성의 연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535] 또한 범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하향식 감축과 국내 사업 위주의 단년도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상추진·사업개선 사업까지 감액되거나 정부 간 다년도 약정 사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났다. 직접·출연·보조 80개 사업 중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둔 사업은 7개(8.8%)에 그쳐 ODA 사업의 성과를 협력국 기준으로 확인하기 어렵다.[536] 같은 분야의 사업이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고,[537] 8개 부처 소관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에서는 편성환율 괴

534)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기초조사보고서」, 2026.1.; 기획예산처(열린재정), 「외교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의견서」, 2026.; 외교부·KOICA, 「2027년 ODA 사업별 예산안 설명자료」, 2026.8.28., 다자협력(ODA)(2432-310).

535)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의견서)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同, 「(대면평가 소명자료) 맞춤형새마을운동지원사업(ODA)」, 2026.; 同,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22., 8)·참고1; 기상청, 「(대면평가 소명의견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및 「(최종의견서)」, 2026.; 국가유산청, 「통합재정사업평가 대면평가 소명자료: 유산기반국제협력(ODA)」·「최종 평가의견서」·「ODA사업 세부사업별 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문화체육관광부, 「(통합평가_소명의견서) 개발도상국관광지도자벤치마킹연수사업(ODA)」 및 「최종평가서」, 2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면평가 소명의견 양식_ODA 사업」(xlsx) ODA 시트 No.5·76·115; 기획예산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정보화1분과, 「평가요약표·평가 의견서」(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대면 단계의 '평가결과 정리'는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이 '감액'이나 최종 의견서는 '사업개선'에 표시되어 있고, 변경 사유는 제출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산업통상부, 「(서면평가) 소명의견서」·「(대면평가) 소명의견서」(xlsx)·「(최종평가의견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최종결과: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536) 각 부처·청,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4) 성과지표(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지표 분류는 국회예산정책처.

537) 행정안전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2731-311)」 2)·참고1 및 「같은 자료: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2932-300)」, 2026.9.22.; 기상청, 「사업설명자료_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3) 및 「(최종의견서)」(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WHO 사업분담금 지원(ODA)」 3) 및 「같은 자료: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ODA)」 3); 질병관리청,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3); 식품의약품안전처,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ODA)」 (1) 3)(이상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리와 과소 편성 등으로 미납이나 이·전용이 반복되어 2027년 정부안에 전년도 미납 청산분 98.0억원(6개 사업)이 들어 있다.[538]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과목 재편으로 통합된 평가단위의 편성액을 판정-편성 대응표에 함께 제시하고 평가단이 판정 변경 사유를 최종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ODA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관 부처는 국내지표를 빌려 쓴 사업부터 협력국 결과지표로 바꾸고, 외교부는 유사 유형 부처 사업의 중복방지 검토를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내역을 종합시행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처는 기구 청구액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분담금을 편성하고 소관 부처는 미납 청산분을 따로 표시하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달러 외 통화에도 예산 편성환율을 적용하는 방안(「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 관련 법률의 정합성(SQ7)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유상원조 주관(재정경제부)·예산 편성(기획예산처) 기능 분리는 관련 법률에 반영되었고 2026년 3월 개정으로 주관기관의 점검·시정요청 권한과 재외공관 보고가 법제화되었으나,[539] 개별 ODA 사업의 선정 기준과 심사 결과 공개는 법률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에만 맡겨져 있다. 또한 의결사업 변경 절차는 2025년 12월 개정된 변경·신설 지침으로, 연계사업 이행점검은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법률 근거가 없고, 평가 전문기관·통합 플랫폼·부처연수원 이관은 직접적인 법률 근거 없이 계획과 예산으로 먼저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EIPP는 다년도 정부 간 협력사업인데도 근거가 존속기한이 2027년 1월 31일인 훈령에 있고,[540][541] ODA 대상국이 아닌 고소득국 헝가리 과제가 사업목록의

538)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8);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ILO 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3)·14)·참고2; 기상청, 「사업설명자료_WMO 분담금(ODA)」(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 2)②·3)·참고1.

539)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21425호, 2026.9.11. 시행) 제7조·제12조·제14조·제22조·제23조;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17161호, 2020.10.1. 시행) 제7조;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제56-1호), 2026.2.26., pp.22~26 및 붙임 p.33.

5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제36631호, 2026.8.28. 시행), 제24조제3항제10호.

5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64호,

20.4%를 차지하고 있다.[542]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ODA 사업 선정 기준과 심사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사업 변경 절차와 연계사업 이행점검의 근거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두는 방안과 평가 전문기관 법제화 시 독립성·국회 보고 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은 통합 플랫폼의 운영 원칙과 역할 분담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정경제부는 존속기한 도래 전에 EIPP의 운영 근거를 법령 수준으로 정비하면서 헝가리 등 비ODA 대상국 과제를 「경제협력기획(ODA)」에서 제외하고 그 집행 과목·금액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26.1.2. 시행),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및 부칙(기획재정부훈령 제762호, 2025.1.14.).

542) 재정경제부, 「21년 이후 EIPP 사업목록」(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 '사업목록' 시트(국가·사업연도별 건수와 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2020년 9건, 2021년 15건, 2022년 17건, 2023년 16건, 2024년 15건, 2025년 15건, 2026년 11건, 합계 98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56-2호·제58-1호 종합시행계획 EIPP 사업목록; 재정경제부, 「(기초자료) 경제협력기획(ODA)」, 2026.9., 나.4)②.

2 종합 판정

평가질문(EQ)에 대한 종합 판정은 "부분 적정, 개선 필요"이다. 법정·계획상 형식 요건과 감액 판정의 예산 반영은 적정하나, 이행·집행과 재정 위험을 확인할 정보와 성과관리 장치는 개선이 필요하고, 2027년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은 착수 일정·실집행률·채무재조정 유예분이 함께 제시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정·계획상 요건에서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예산 단계의 존중 의무, 대면 심의 전환과 법 개정 등 형식 요건을 대체로 갖추었다. 그러나 연계사업 이행, 정세 변화의 사전 조정, 정보공개 이행, 통합 조치의 법적 근거와 EIPP의 운영 근거는 미흡하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감액·폐지·통합 판정은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최종 의견서 기준 12개 단위 모두, 국제기구협력은 외교부 환류계획 기준), 판정 변경 사유의 미기재와 부처 간 분절이 남아 있다.

집행가능성에서는 KOICA와 다른 부처의 출연·보조 사업 모두 교부 기준 집행률만으로는 실제 집행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착수 준비 상황과 편성액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EDCF 집행률도 낮아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에서는 연도별 미수납(연체·채무재조정 상환유예 포함) 발생액이 늘었으나(2021년 23.3억원에서 2025년 393.4억원으로) 결산상 미수납액과 채무재조정 상환유예분이 구분 공시되지 않아 위험의 크기는 판정하기 어렵고, 대출이자 대비 차입이자 부담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의무분담금 정부안에는 미납 청산분이 들어 있고, 두 해의 청산분이 확인되는 3개 사업에서는 증액분의 절반 이상(53.1%)이 청산분 증가였다. 효과성에서는 KOICA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공백, 직접·출연·보조 사업의 결과지표 부족(8.8%), 기업 관점의 민관협력 지표가 확인되었고, 비구속 비율·수주 실적은 집계 기준이 달라 이행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재원 유치 실적은 기관 간 비교가 어렵다.

요컨대 계획 수립과 법 개정 등 제도의 틀은 대체로 갖추었으나, 그 이행과 집행, 재정 위험을 외부에서 확인할 정보가 함께 갖추어지지 않았다. 대형화·통합에서는 착수 준비 일정과 프로그램 성과지표가, EDCF에서는 채무재조정 유예분과 이자수지 전망이, 성과관리에서는 판정과 편성의 대응 관계가 그러하다. 따라서 형식 요건은 대체로 충족하였더라도 '개선 필요'로 판정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은 총량이 조정되었으나,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개선·정상추진 판정 단위 29개 중 11개(과목 재편이나 사업 내역 변경의 영향이 없는 단위는 7개)가 15% 이상 줄어 감축이 성과평가 판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사업 대형화를 추진하면서도 형성기획 예산은 70.0% 감액되었다. 또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판정이 완화된 뒤 증액된 사업, 착수 준비 상황이 예산안에 드러나지 않은 신규·2년차 증액 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편성이 적정한지는 통합된 평가단위까지 포함한 판정-편성 결과, 신규사업의 협의의사록 체결·수행자 선정 일정, 실집행률이 함께 제시되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와 집행 정보를 예산안과 함께 공개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EDCF는 채무재조정 유예분을 포함한 미수납 정보(합계 기준)와 이자수지 전망을 공개하고, 법령 측면에서는 통합 플랫폼·평가 전문기관·의결사업 변경 절차와 EIPP 운영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쟁점별 종합 판정]

쟁점	판정	근거수준	핵심 개선방안
Ⅲ.1 추진체계 책임성 · 투명성	조정기능 실질성 판정 유보 연계 이행·정세 사전조정 개선 필요 정보공개 판정 유보	중(국개위 회의 결과 2026.12. 공개 예정·계획별 이행실적 미공개)	국개위 회의 결과 정례 공개·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공개 확대, 주관기관 검토 절차에 정세 변화 시 점검 계기 반영, 정보공개 이행 점검 결과·신규사업 선정기준·탈락사유 유형 공개
Ⅲ.2 프로그램화 · 대형화	형성 기능 총량 판정 유보 성과지표·대표사업 요건 개선 필요 착수준비도 정합성 판정 유보	중(사업별 착수 일정 미공개)	협의의사록 체결·수행자 선정 일정의 예산안 병기, 프로그램별 결과지표 확정, 대표사업 구분 표시 공통 기준
Ⅲ.3 사업 추진 지연	집행관리(KOICA·타 부처 출연·보조) 개선 필요 7월 계절성 판정 불가 감사 이행 판정 유보 EDCF 장기지연 개선 필요	중상(감사원 원문, 중기운용방향 원문, 부처 제출자료)	실집행률·과부족 구분 공시, 실집행률 산정 기준 명시, 월별 실적 공개, 승인취소 기준(협력국 협의·예외사유 포함)·실적 공개
Ⅲ.4 EDCF	발생액 증가 확인(잔액 추세 판정 유보)	중(수은 제출 연도별 발생액 기준, 결산상	연체·재조정 유예 구분 합계 시계열·충당금

쟁점	판정	근거수준	핵심 개선방안
미수납 · 재정	집중도 확인 공시·차입이자 부담 관리 개선 필요	미수납액 외 유예분 구분 미공시)	반영액 공시, 금리 개편·상생기여금 기금수지 추계
Ⅲ.5 비구속화 · 민간재원	국내참여 감소 확인(범위 제한적) EDCF 예산 감소와의 관련성 낮음 통계·산정기준·성과지표 개선 필요	중(계약금액 기준 통계 미공개)	구속·비구속별 수주 국적 통계, 비구속 입찰 수주역량 강화, 비구속 비율 산출기준 명시, DAC 기준 민간재원 실적 공통 관리, 개발성과 지표
Ⅲ.6 ODA 사업 성과관리 · 분담금 편성	감액·폐지·통합 판정 반영 확인(최종 의견서 기준 12개 모두, 국제기구협력은 외교부 환류계획 기준) 판정 변경 사유 기재·ODA 특수성 반영 개선 필요 성과지표 결과지표 전환 개선 필요 유사사업 정비·분담금 편성 개선 필요	중(159개 사업 모두 사업설명자료 확인; 자기 보고 자료, 반영 원칙은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기준)	통합 평가단위 편성액 제시·판정 변경 사유 기재, ODA 특수성 반영 평가기준 마련, 결과지표 전환, 유사 유형 부처 사업의 중복방지 검토 강화·시행계획 기재, 8개 부처 미납 청산분 구분 편성·편성환율 현실화
Ⅲ.7 법령	명칭·기능 분리 반영 적정, 사업 선정기준·변경 절차·EIPP 근거 법제화 미흡	중(개정이유·EIPP 과제별 재원 미공개)	ODA 사업 선정기준·심사결과 공개 법제화, 통합 플랫폼·평가 전문기관·의결사업 변경 절차 법제화, EIPP 근거의 법령화와 헝가리 등 비ODA 과제의 경제협력기획(ODA) 제외·집행 과목 공개

주: '판정 유보'는 공개 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 불가'는 비교군이 없어 판단할 수 없는 경우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 록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증감률
외교부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14,086	107,124	△6.1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	177,706	155,823	△12.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ODA)	92,513	95,596	3.3
	국제기구 일반분담금 납부(ODA)	9,679	11,057	14.2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ODA)	88,477	81,858	△7.5
	주한국제기구 지원(ODA)	23,434	22,782	△2.8
	유엔자원봉사단(ODA)	5,165	5,566	7.8
	글로벌 보건기여(ODA)	55,200	89,400	62.0
	국제기구 신탁기금 납부(ODA)	73,569	74,365	1.1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58,526	110,515	88.8
	ODA 선진화(ODA)	1,066	1,200	12.6
	인도적지원(ODA)	318,943	270,299	△15.3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7,218	17,298	0.5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11,630	747	△93.6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ODA)	200,492	186,135	△7.2
	아프리카지역 국별협력사업(ODA)	154,513	124,480	△19.4
	중남미지역 국별협력사업(ODA)	50,498	47,586	△5.8
	중동중앙아지역 국별협력사업(ODA)	55,537	100,222	80.5
	공공협력사업(ODA)	33,778	64,280	90.3
	소규모 무상원조(ODA)	16,206	12,965	△20.0
	다자협력(ODA)	223,825	235,079	5.0
	해외봉사단 운영(ODA)	78,602	66,595	△15.3
	개발협력 인재양성(ODA)	48,643	41,359	△15.0
	글로벌 연수(ODA)	51,507	39,583	△23.2
	미래인재 양성(ODA)	22,133	23,009	4.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50,576	41,283	△18.4
	기관운영지원(ODA)	47,252	45,134	△4.5
	사업관리지원(ODA)	40,225	29,613	△26.4
	전략적협력강화(ODA)	5,500	4,000	△27.3
	우수파트너 육성(ODA)	6,499	5,526	△15.0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증감률
	시민사회협력사업(ODA)	53,118	53,710	1.1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200,855	222,360	10.7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1,023	1,158	13.2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21,417	21,849	2.0
	경제협력기획(ODA)	34,222	26,717	△21.9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ODA)	13,800	9,933	△28.0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ODA)	828	806	△2.7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877	861	△1.8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35,293	35,293	0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14,143	50,660	258.2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ODA)	8,396	9,155	9.0
	인건비(ODA)	22,871	24,258	6.1
	기금관리비(ODA)	5,198	5,149	△0.9
	아시아차관(융자)(ODA)	823,517	615,965	△25.2
	아프리카차관(융자)(ODA)	622,965	692,741	11.2
	중동-CIS차관(융자)(ODA)	163,411	242,066	48.1
	중남미차관(융자)(ODA)	17,641	18,620	5.5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273,066	235,301	△13.8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6,026	8,236	36.7
	사업진행컨설팅(ODA)	31,454	15,475	△50.8
	사업심사평가연구(ODA)	2,105	1,915	△9.0
	개발협력증진(ODA)	2,947	2,384	△19.1
	협조융자사업관리(ODA)	1,895	1,488	△21.5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ODA)	1,917	1,433	△25.2
농림축산식품부	IFAD 의무 분담금(ODA)	8,164	7,004	△14.2
	농업개발협력(ODA)	41,440	29,338	△29.2
	국제기구 농업협력 사업 분담금(ODA)	9,369	3,998	△57.3
	국제식량원조(ODA)	63,342	68,153	7.6
	FAO 재량 분담금(ODA)	1,110	1,180	6.3
	FAO 일반 분담금(ODA)	21,053	16,958	△19.5
교육부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14,644	11,013	△24.8
	글로벌 교육지원 다자협력(ODA)	1,725	706	△59.1
	UNESCO UNITWIN 지원(ODA)	2,517	1,900	△24.5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증감률
	UNESCO 브릿지 지원(ODA)	2,070	2,869	38.6
	세계시민교육(GCED)역량강화(ODA)	2,055	2,055	0
	UNESCO 교육개발협력기금(ODA)	4,282	3,129	△26.9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139,241	143,225	2.9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2,697	1,128	△58.2
산업통상부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ODA)	68	66	△2.9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ODA)	690	765	10.9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31,207	35,469	13.7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1,990	2,620	31.7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2,020	1,695	△16.1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1,735	1,886	8.7
보건복지부	WHO 의무분담금 납부(ODA)	23,872	26,735	12.0
	WHO 사업분담금 지원(ODA)	5,000	6,102	22.0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38,678	34,760	△10.1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ODA)	10,562	10,762	1.9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159	155	△2.5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	1,570	1,694	7.9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ODA)	318	310	△2.5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ODA,R&D)	10,000	10,000	0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	681	663	△2.6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23,443	17,228	△26.5
	해양수산 다자협력(ODA)	14,567	24,693	69.5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22,416	22,384	△0.1
	해외농식품기술협력지원(R&D, ODA)	12,055	6,937	△42.5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44,223	48,001	8.5
국토교통부	기타국제기구분담금(ODA)	100	97	△3.0
	UN ESCAP 분담금(ODA)	1,763	1,554	△11.9
	국토교통국제개발협력사업(ODA)	32,956	27,992	△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화,ODA)	1,322	96	△92.7
	국제기구부담금(정보화, ODA)	5,286	7,145	35.2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지원(ODA)	3,214	2,080	△35.3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ODA,R&D)	430	377	△12.3
	IAEA 기술협력부담금(ODA,R&D)	1,800	1,530	△15.0
	우정사업해외활동(ODA)	2,331	3,247	39.3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ODA)	4,172	4,990	19.6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증감률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ODA)	4,255	4,681	10.0
	국제산림개발협력(ODA)	7,601	6,420	△15.5
	국제산림다자협력(ODA)	10,006	6,536	△34.7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ODA)	5,950	5,950	0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	2,045	2,045	0
	국제백신연구소지원(ODA,R&D)	11,779	11,779	0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대응(ODA)	3,070	2,140	△30.3
고용노동부	ILO분담금(ODA)	18,358	20,901	13.9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	2,320	4,221	81.9
	한-ILO 협력사업(ODA)	6,279	5,040	△19.7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1,828	2,845	55.6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824	1,050	27.4
	지구환경금융부담금(ODA)	2,553	2,486	△2.6
	국제기구·협약 의무분담금(ODA)	1,693	1,662	△1.8
	국제환경협력기구 재량분담금(ODA)	2,669	3,414	27.9
	국제환경협력사업	2,199	3,260	48.2
	기후에너지산업 국제개발협력(ODA)	1,040	1,506	44.8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21,526	17,873	△17.0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28,179	33,976	20.6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4,729	5,030	6.4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369	369	0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756	2,802	1.7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1,382	1,014	△26.6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4,980	2,623	△47.3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215	2,218	931.6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1,385	1,204	△13.1
관세청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7,334	7,109	△3.1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2,250	2,250	0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개발협력(ODA)	10,858	9,087	△16.3
	유네스코 분담금(ODA)	246	240	△2.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인사연 국제개발협력(R&D, ODA)	1,420	840	△40.8
	국제학생 학위과정 장학지원(R&D,ODA)	1,379	1,379	0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2,649	2,560	△3.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ODA)	3,918	3,698	△5.6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협력(ODA)	123	483	292.7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증감률
	관광외교역량강화(ODA)	443	613	38.4
	WIPO신탁기금 지원(ODA)	1,558	1,512	△3.0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1,556	1,648	5.9
	문화예술교육(ODA)	1,050	890	△15.2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1,263	1,913	51.5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1,200	1,470	22.5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080	767	△29.0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486	2,035	318.7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ODA)	1,100	1,100	0
중소벤처기업부	국제 중소기업 협력ODA(ODA)	10,289	11,926	15.9
성평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4,745	3,713	△21.7
	국제개발협력(ODA)	600	744	24.0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지원(ODA)	3,200	3,116	△2.6
기상청	WMO의무분담금(ODA)	2,484	4,188	68.6
	WMO신탁기금(ODA)	707	618	△12.6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3,178	3,110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지원(ODA)	801	721	△10.0
	국제개발협력(ODA)	3,208	2,544	△20.7
국가데이터처	개도국 통계지원(ODA)	6,300	5,274	△16.3
지식재산처	WIPO 국제분담금(ODA)	2,218	2,417	9.0
	국제지식재산나눔(ODA)	836	459	△45.1
법무부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216	214	△0.9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128	2,100	△1.3
경찰청	국제치안활동강화(ODA)	4,339	3,688	△15.0
조달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4,534	3,616	△20.2
공정거래위원회	개도국기술 지원(ODA)	56	46	△17.9
합계(30개 부처·청, 159개)		5,344,062	5,243,834	△1.9

주: 1) 기획예산처 제출 원문의 부처·세부사업 순서와 금액을 그대로 옮겼으며('국제환경협력사업' 등 과목명도 원문 표기 그대로 수록),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 계산임
2)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은 원문과 같이 별도 행으로 적었고, 기획예산처 원문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WPRO 전략사업 추진(ODA)(2026년 1,780백만원, 2027년 '-')은 WHO 사업분담금 지원의 내역으로 통합되어 2027년 예산안이 없으므로 표와 합계에서 제외함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ODA 세부사업 목록(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 제출, 2026.9.19.)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발간일 2026년 11월 1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279-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7-002333-0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